입법평가 연구 11-17-④

호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과 가이드라인 분석

-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

장 민 선·김 현 수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호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과 가이드라인 분석

-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Cost Model and Its Guidelines in Australia

- Focused on the State of Victoria -

연구자 : 장민선(부연구위원)

Jang, Min-Sun

김현수(초청연구원)

Kim, Hyun-Soo

2011. 6. 3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Ⅰ. 배경 및 목적

□ 표준비용모델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의 행정부담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규제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법론임

○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표준비용모델은 유럽 각국에 도입되어 행정비용 감축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개혁 내지 행정 간소화의 방안으로 표준비용모델 도입을 둘러싸고 표준비용모형 매뉴얼이 작성되는 등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

□ 호주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조로 한 규제 개혁을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 중에서도 빅토리아 주는 규제영향보고, 기업영향평가, 행정부담의 측정 등 규제 심사 제도를 도입, 운용하여 호주내에서 규제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빅토리아 주에서는 규제부담경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규제의 행정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였으나 2010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으로 이를 대체함

- 이는 표준비용모델의 한계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부담 측정 방법론을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게 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호주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행정부담 측정 툴로서 도입된 표준비용모델의 내용 및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수정한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행정부담 측정 방법론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음

Ⅱ. 주요 내용

□ 호주에서는 규제완화를 기조로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실시한 바 있음

○ 연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국가경쟁정책에 따라 호주 정부간협의회(COAG)를 중심으로 연방과 주가 경쟁력 강화에 협력함

○ 호주의 규제개혁은 연방의 규제심사국(이후에는 최선규제국)이 중심이 되어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다양한 주정부의 규제 체계를 COAG와 같은 기구가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빅토리아 주도 국가경쟁정책을 수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다양한 규제 개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 대표적인 것이 규제영향보고제도, 기업영향평가제도, 행정부담 측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빅토리아 주정부는 2004년에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조사, 규제심사, 경쟁중립성 기구 운영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음

- 특히, 위원회는 규제영향보고서, 기업영향평가서, 행정부담 측정보고서의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규제심사제도를 보완하는 독립적 자문기구임

□ 2006년 빅토리아 주정부는 규제부담경감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행정부담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유럽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함

○ 기업 등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합산하여 규제의 행정비용을 계산함

○ 그러나, 표준비용모델은 정보제공의무를 요구하는 규제에 대해서 그 행정비용만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규제로 인해 기업 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빅토리아 주는 표준비용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음

○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규제로 인해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준수 비용 외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비용까지 측정하도록 함

- 따라서, 규제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를 도식화하고, 각 의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격 및 수량 요소로 나누어 계산하고 이러한 비용의 총합으로 산정하는 것임

○ 표준비용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측정 범위가 행정비용에서 행정비용, 실질준수비용, 지연비용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고, 규제변화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측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측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구도 규제변화의 정도에 따라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또한 표준비용모델은 일반적으로 규제 대상인 기업 등이 규제를 완전 준수할 것을 가정하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완전 준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준수율을 측정에 반영하는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이 보다 실질적, 합리적인 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규제의 행정부담 감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독자적 방법론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측정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임

○ 2006년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이 추진되었고, 외국의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국내에 실제 적용하는 연구도 수행된 바 있음

- 2007년 한국행정연구원이 표준비용모형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이를 적용하여 행정부담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표준비용 측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을 수정한 독자적 모델을 구축한 빅토리아 주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와 같이 기존 규제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문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 행정부담 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예 : 규제부담변경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측정 실시)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세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함

-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한 국가들이 채용한 '완전 준수' 가정의 타당성을 재고하여 실제 준수율을 반영하여 비용을 측정해야 함

-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측정 과정에서 해당 부처 전문가나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고, 측정 결과에 대해 독립적 기구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Ⅲ. 기대효과

□ 규제의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독자적인 방법론 개발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표준비용모델에 대해서 빅토리아 주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한 것은 우리나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을 위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 국내에 많이 소개된 적이 없는 호주 규제 개혁의 동향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함

주제어 : 빅토리아 주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 규제영향보고, 기업영향평가, 표준비용모델, 행정부담 감축, 규제변화측정, 규제비용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A Standard Cost Model is a scientific approach contributing to the better regulation through calculat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across the European countries.

○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SCM approach as a simplifying administration measure has been discussed, which is not achieved more than expected.

□ Australia has been evaluated to accomplish a great deal through a wide range of regulatory reform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businesses.

○ The Victorian government plays an initiating role in Australian regulatory reform with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Regulatory Impact Statement, Business Impact Assessment and Calculat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 After an announcement of 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initiative, the Victorian government adopted Standard Cost Model in 2006, which was replaced by Regulatory Change Measurement approach developed autonomously in 2010.

□ This report aims to seeking for the adequate methodology to our country through analysing and examining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Victorian Standard Cost Model and its alternative Regulatory Change Measurement.

Ⅱ. Main Contents

□ The Progres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ustralian regulatory reforms

- According to the National Competition Policy, the Commonwealth and States cooperated with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COAG) in reinforcing the competitiveness of businesses.
- Reinforcing the competitiveness and reducing the regulations has been promoted by the Office of Regulatory Review as a Commonwealth agency. On the other hand, COAG has accommodated the regulatory diversities of the Commonwealth, the States and Territories.

□ The Progres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Victorian regulatory reforms

- Victorian government adopted three kinds of regulatory review system, such as RIS, BIA and Calculat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 The core of the Victorian regulatory reforms has been 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 established in 2004, whose functions are public inquiries, regulatory reviews and competitive neutrality unit operations.

- In 2006, the Victorian government laid out the goal of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 with the announcement of 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initiative and adopted the Standard Cost Model as a calculating tool.
  - This approach for calculating the administrative cost of the regulation requiring Information Obligations, has some limitations in calculating the costs incurred by the regulations.
- For this reason, the department of Treasury & Finance developed the Regulatory Change Measurement manual in 2009 for overcoming the SCM limitations.
  - The RCM approach has a merit of measuring the substantial administrative burden by including the compliance cost and delay cost into the range of measurement.
  - The differences of RCM in comparison with SCM are as follows : expanding the range of calculation to the substantial compliance cost and delay cost other than administrative cost, establishing the threshold of performing the measurement, classifying the evaluation organization into VCEC and Better Regulation Unit, replacing the full compliance assumption by the substantial compliance rate.
- Lessons from Victoria's Experience of Calculat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 Establishing the independent advisory organization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review systems like VCEC.

- Developing the precise manual for measur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including the materiality thresholds to limit the need to conduct the calculation for smaller changes.
- Reflecting the substantial compliance rate to the measurement after examining the adequacy of the full compliance assumption.
- Improving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through preparing the consultation of the specialist or the advisory organization and review system of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in the process.

Ⅲ. Expected Effects

☐ Being a useful article developing the independent methodology for calculat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the regulation.

☐ Providing the recent articles regarding the trend of regulatory reform in Australia which is not much dealt with.

Key Words : 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 Regulation Impact Statement, Business Impact Assessment, Standard Cost Model, 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Regulatory Change Measurement, Regulatory Cost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9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7

제 2 장 호주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 ····· 19

제 1 절 호주 규제개혁의 동향 ····· 19

1. 호주의 규제개혁 추진경과 ····· 19

2. 호주의 규제개혁 담당기관 ····· 22

제 2 절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 제도 ····· 28

1. 개 관 ····· 28

2. 빅토리아 주의 규제심사 제도 ····· 29

3.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 기구 ····· 42

제 3 절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의 특징 ····· 46

제 3 장 표준비용모델의 도입과 발전 ····· 49

제 1 절 표준비용모델의 도입 배경 ····· 49

제 2 절 표준비용모델의 내용 ····· 51

1. 표준비용모델의 개관 ····· 51

2. 측정의 대상 및 범위 ····· 52
3. 측정의 절차 ····· 55

제 3 절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한계 ····· 61

제 4 장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등장 및 내용 ····· 63
제 1 절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등장 ····· 63
제 2 절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내용 ····· 64
1. 측정의 대상 및 범위 ····· 64
2. 측정의 방법 및 원칙 ····· 68
3. 측정의 절차 ····· 72

제 3 절 표준비용모델과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비교 ····· 81

제 5 장 결 론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83
제 1 절 우리나라 표준비용모델 운용 현황 ····· 83
제 2 절 호주 표준비용모델의 특징 및 시사점 ····· 84

참 고 문 헌 ····· 89

【부 록】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 97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 툴킷 1 도식화 소개 ····· 139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 툴킷 2 비용평가 및 계산 ··· 15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정함으로써 국가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의 주요국, 유럽연합, OECD 등에서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 SCM)[1]이 활용되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일반적으로 시민이나 기업이 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으로서, 규제의 행정비용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규제의 개선에 기여한다. 유럽의 주요국들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이 행정비용의 감축과 관련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개혁 내지 행정 간소화의 방안으로서 표준비용모델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2] 그런데, 표준비용모델을 채택함에 있어서 네덜란드 모델의 원형을 그대로 도입, 적용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수용한 국가가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들의

1) 표준비용모델은 기업이 규제에 따른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격×수량으로 표준화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개별 규제를 정보의무, 자료요구, 행정활동으로 분류한 후 각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하고 여기에 모집단 수와 빈도수를 곱하여 전체 행정부담을 측정한다. - 이병기,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기업의 행정부담 감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09-02, 2009, 24면.

2) 우리나라에서 표준비용모델에 대한 연구는 200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신(2005), “행정부담의 측정모형 및 적용 : 표준비용모형을 중심으로”, 이종한 외(2006), 「행정부담의 측정 및 국가간 비교분석」, 안혁근(2007), “기업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행정간소화 전략”, 국무조정실(2007), 「선진국의 행정부담 감축사례 연구」, 국무조정실·중소기업연구원(2007), 「기업의 행정부담비용시범측정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국무조정실의 발주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표준비용모형 매뉴얼”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밖에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에서는 2009년 주요국가의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시리즈로 출간한 바 있다.

운용현황 및 적용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비용모델의 도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 정부는 1990년대부터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 연방주의 국가인 호주에서는 주별로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주에서 1980년대부터 선진입법 내지 선진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영향보고서 작성(Regulatory Impact Statement)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빅토리아(Victoria) 주가 호주의 규제개혁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3)]

빅토리아 주에서는 2004년 국영 기업령(State Owned Enterprises Order)에 따라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 : VCEC)가 설치되어 기업영향평가서 및 규제영향보고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빅토리아 주 규제 지침서(Victorian Guide to Regulation)에 따라 각종 평가 및 측정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빅토리아 주에서는 규제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2006년부터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을 도입하여 적용해왔으나, 규제의 행정비용만을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론에 대해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측정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서 2010년부터는 호주에서 최초로 규제변화측정[4)] 매뉴얼(Victorian Regulatory Change Measurement

3) 호주 경영자총협의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는 2007년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순위표에서 빅토리아 주를 규제 개혁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주로 선정한 바 있다. -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A Scorecard of State Red Tape Reform*, 2007, p. 12.

4)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기업, 비영리법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부과된 규제의 행정비용, 실질적 준수 비용, 지연 비용과 사인에 의해 발생한 비용의 감소분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동 방법론에 따라 위원회는 규제 부담의 변화가 연간 1천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규제영향평가나 기업영향평가와 함께 규제변화 측정이 보고되는 경우

Manual : RCM)을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다.[5)]

따라서, 동 연구는 호주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빅토리아 주 규제 지침서에 제시된 표준비용모델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 내용 및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시된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행정부담의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호주 빅토리아 주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표준비용모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빅토리아 주의 독립적 자문기구인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를 중심으로 빅토리아 주의 규제 개혁에 대해 개관할 필요가 있다. 규제의 행정부담 감축을 목표로 행정부담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표준비용모델이므로 규제 개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호주의 규제 제도에 대해 소개한 국내 문헌이 거의 없는 관계로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 및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각종 현황, 지침서, 매뉴얼 등 문헌 연구의 방법을 통해서 빅토리아 주의 규제 제도에 접근하고자 한다. 본문은 각종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주요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규제변화측정 매뉴얼과 툴킷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이상의 방법을 통해서 제2장에서는 호주 빅토리아 주 규제 개혁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호주 정부의 규제 개

에 그 규제안을 심사할 책무를 진다.

5) 2009. 9. 빅토리아 정부는 규제부담의 경감 목표치를 2011년 7월까지 연간 2억 5천 6백만 달러에서 2012년 7월까지 연간 5억 달러로 확대하면서, 이러한 비용 경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행정비용의 측정에 초점을 맞추었던 표준비용모델을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으로 대체하였다.

혁의 경과 및 규제심사기구를 개관하고, 빅토리아 주의 규제 개혁의 동향에 대해서 빅토리아 주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동 위원회의 연차보고서 및 각종 현황 자료 등을 통해 빅토리아 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 심사 제도인 기업영향평가, 규제영향보고 제도, 행정부담 측정 방법론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다음 제3장에서는 규제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된 표준비용모델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빅토리아 주 규제 지침서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분석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채택된 표준비용모델의 내용과 비교하여 그 특징과 한계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안으로 제시된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을 소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도입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표준비용모델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표준비용모델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규제의 행정비용 측정을 위한 보다 나은 방법론을 조망해볼 것이다.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이제 시행 1년째를 맞고 있어 그 효과성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 방법론의 효과에 대해 전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호주 빅토리아 주의 규제 개혁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특히 규제의 행정부담 측정과 관련해 도입, 운용 중에 있는 표준비용모델 및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규제 부담 측정 방법론 도입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2 장 호주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

제 1 절 호주 규제개혁의 동향

1. 호주의 규제개혁 추진경과

호주는 그 지리적 경계에도 불구하고 점차 시장이 통합, 단일화되어 감에 따라 기업간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연방예산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기업과 주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시장의 확립이 곧 호주 정부에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연방과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혁이 논의되었다. 우선 국가경쟁정책에 대하여 Hilmer 교수를 필두로 하는 독자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1993년 8월 보고서(Hilmer Report)[6]가 발표되었다. 동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정부가 국가경쟁정책(National Competition Policy, 이하 NCP)[7]을 발표함으로써 정치, 행정,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 이데올로기'를 호주 개혁의 기조로 삼게 되었다.[8]

---

6) 동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국가경쟁정책의 주안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 무역관행법의 적용범위 확대
- 국가적으로 중요한 하부 구조에 대한 제3자의 접근 장치 도입
- 공기업들이 불공정한 이득을 향유하지 않도록 경쟁 중립성 원칙 도입
-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독점 기업의 재구조화
-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의 심사 및 다른 개혁이 부적합한 경우를 처리할 수 있는 주 및 지방정부 기업에 대한 가격 제한 확대

자세한 내용은 http://ncp.ncc.gov.au/pages/about 참조.

7) 국가경쟁정책은 호주의 대표적인 경제 개혁 프로그램으로서 동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은 "경쟁력 있는 시장이 소비자 및 국가 전체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간 위원회는 국가경쟁정책에 관한 독립 위원회에 의한 보고서에 따라 국가경쟁정책을 수립, 이행하였다. 1995-2005년 지난 10년 동안 국가경쟁정책은 호주의 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고 있다. 정부의 이행상황은 국가경쟁력 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uncil)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위원회는 1997년, 1999년에 개혁 상황을 평가하였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이를 평가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http://ncp.ncc.gov.au/ 참조.

8) 김정해 외, 「주요 선진국의 규제 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493면 참조.

1994년 호주 정부간 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 COAG)가 국가경쟁정책이 제시한 개혁에 동의함으로써 전국적인 차원에서 개혁이 추진되었고, 1995년에는 연방과 주정부가 국가경쟁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행동규칙협약(Conduct Code Agreement), 경쟁원칙협약(Competition Principles Agreements), 국가경쟁정책 및 관련 개혁 집행협약(Agreement to Implement the National Competition Policy and Related Reforms)을 체결하였다.[9] 이에 따라 산업 경제 분야에서 경쟁정책을 촉진할 핵심기관으로서 공정경쟁위원회를 설립하여 전력, 가스, 대중교통 등 독점적 특성을 띠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독점을 차단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국가경쟁정책 입법심사 프로그램(NCP Legislative Review Programme)을 마련하여 연방 및 주로 하여금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입법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규제 개혁의 하나로서 평가받고 있고, OECD 국가들에 의해서도 모범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10] 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각 주정부의 경쟁에 제한을 가져올만한 총 1800여개의 법률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후 COAG의 국가개혁 아젠다에 있어서도 기초 자료가 되었다.

호주 정부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같은 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쟁에 대한 법적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부문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주는 다음의 세단계를 거쳐서 개혁을 단행하였다.[11] 첫째,

---

9) 행동규칙협약은 1974년에 제정된 교역법의 경쟁관련 조항을 강화하여 국가경쟁정책의 원칙을 모든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경쟁원칙협약은 반경쟁적 행위들에 대해 제3자 개입, 가격 감시, 구조 개혁, 경쟁중립성 정책, 사법심사 원칙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국가경쟁정책 및 관련 개정안 집행협약은 국가경쟁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일정을 제기하며 수자원, 폐기물, 전기 등 특정산업에 관련된 COAG의 합의사항을 나타낸다.
- 자세한 내용은 http://ncp.ncc.gov.au/pages/about#agreements 참조.

10) OECD, Australia:Toward a Seamless National Economy,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2010, p.7.

11) 김정해 외, 앞의 글, 495-496면.

상업화(commercialisation)의 단계로서 정부조직에 사기업과 유사한 상업적 원칙과 구조를 도입하여 기업화를 유도하고, 둘째, 기업화(corporatisation)의 단계로서 공공부문에 기업 거버넌스 구조를 도입하여 사기업과 동일한 경쟁환경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민영화(privatisation)의 단계에서는 공기업의 매각을 통해 민간조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호주의 규제개혁은 시장의 경쟁을 창출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서 시도된 것이다. 1995년에는 기존의 규제관행과 실태에 관한 총체적인 검토를 수행하였고, 1997년부터 신설 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였으며, 1998년에는 규제기관들의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매년 규제개혁에 관련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12)]

최근의 개혁 동향은 체계적인 수준의 규제관리 조치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초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13)] 효과적인 규제 개혁 수단으로 입증되어 온 국가경쟁정책과 같은 대규모의 개혁 전략과 규제의 집적 및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정기적 심사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현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문화의 확립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호주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성공적인 규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오랜 규제영향분석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1985년부터 규제영향보고제도를 공식화했으며 1997년부터는 호주 정부간 위원회에 의해 추진되는 모든 규제안에 대해서 규제영향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

12) 최유성, 「규제개혁과 정부개혁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2, 64-65면.

13) OECD, Australia : Toward a Seamless National Economy,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2010, p.98.

한 경험이 다른 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규제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무리없이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2. 호주의 규제개혁 담당기관

호주는 영미의 자유주의 전통과 연방주의 체제로 인해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일관성 및 강력한 집행력을 확보하기 힘들다. 따라서, 규제개혁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주 및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였다. 중앙 정부 내의 규제총괄부서인 규제심사국(Office of Regulation Review)은 규제영향보고서의 검토 권한을 통해 다양한 부처 및 기관에 있어서 규제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호주 정부간 협의회(COAG) 및 부처간협의회는 연방과 주, 지방정부간에 규제정책을 조율하고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공정경쟁위원회가 전력, 가스,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에 대해 단일한 규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일관된 규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호주의 규제체계가 분권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조정 매커니즘을 통해 연방과 주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1) 연방의 규제 개혁 담당 기관

1) 규제심사국(Office of Regulation Review)

규제심사국은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내부 조직으로서 규제영향보고(RIS) 제도를 관장함으로써 호주 정부의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와 같이 다양한 정부 체제 하에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규제 개혁을 실현하기 위

해서는 정부 전체 수준에서 규제영향보고 제도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담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규제심사국이 바로 규제영향보고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통해서 규제 개혁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규제영향보고 제도가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식되지 못하다가 1996년 신정부의 등장에 따라 규제영향보고서의 강화가 규제 개혁의 핵심사항으로 부각되면서 규제심사국의 위상도 높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14)]

규제심사국의 주요 업무는 규제영향보고 제도를 전 부처와 전 규제에 적용하고, 정부 기관들이 규제영향보고서의 내용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 제정과 규제 심사를 위한 규제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조언과 지도, 연방 정부기관이 준비하고 있는 규제영향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조언, 연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지도, 연방정부기관이 규제영향보고서의 요구에 따르는지 여부를 연례적으로 보고할 의무, 부처간협의회와 국가표준결정기구들의 규제 제정시 조언, 규제 이슈에 대한 홍보 및 보고서 배포,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의 규제개혁 모니터링을 담당하였다.[15)] 또한 규제심사국은 정책이 만들어질 때, 내각과 같은 정책 집행기관에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 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및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해 보고하고, 다른 규제기관과 규제개혁 관련 기관들 간의 권한 및 의견 충돌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14) 규제영향보고 제도는 1986년에 연방정부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규제영향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으므로 각 부처 장관들과 규제기관들의 무관심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 김정해 외, 앞의 글, 503-504면 참조.

15) 김정해 외, 앞의 글, 506-507면.

2) 최선규제국(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규제심사국의 기능은 최선규제국(The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 OBPR)으로 이관되었다. 최선규제국은 연방의 재정 및 규제철폐부(Department of Finance & Deregulation) 소속으로서 정부 규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증진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16] 규제는 사회와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정부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 즉,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경제에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제 - 를 마련해야 한다. 다수의 규제가 필요하고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고, 보다 나은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끊임 없이 규제 개선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최선규제국은 정부 기관들에게 규제영향보고가 요구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규제안을 개발하거나 현존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해 적절한 규제의 품질 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정부의 규제영향보고서를 검토하여 정책 결정자들에게 해당 규제가 요구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관해 조언하고 필요한 경우에 비용편익 분석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7] 뿐만 아니라, 규제의 정당성을

16)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Best Practice Regulation Handbook*, 2010, p.8. http://www.finance.gov.au/obpr/proposal/handbook/docs/Best-Practice-Regulation-Handbook.pdf.

17) 최선규제국의 역할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 기관들에게 규제영향보고의 여부를 포함하여 규제안의 개발 및 현존 규제의 심사에 관해 적절한 품질 통제 메커니즘에 관한 자문 제공
- 규제영향보고를 검토하고 정책 결정자에게 정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 제공, 비용 편익 및 위험 분석과 같은 적정 수준의 분석을 제공
- 기관에게 기업의 준수비용 평가에 대해 자문 제공, 규제비용측정 툴로서 기업비용 측정기 유지
- 시행 후 심사 및 연간 규제 계획과 같은 기타 규제 메커니즘의 관리
- 전체 정부의 자문 원칙의 증진 및 정책 개발 절차의 일부로서 수행되어야 할 이해관계인들과의 최선의 자문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
- 규제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평가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 및 지도
- 비용편익 분석 및 자문 절차에 대해 공무원에게 기술적 원조 제공
- 정부의 규제영향보고, 자문 요건의 준수 및 규제 개혁 발전에 대한 연간 보고

입증하기 위한 평가 요건들에 관해 관계 공무원에게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하고, 부처간 협의회 및 국가 기준 설정 기구들이 규제를 제정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호주 정부간 협의회의 지침서에 관해 자문을 담당한다. 따라서, 정책 담당자는 정책 개발 단계의 초기에 그들이 호주 정부 또는 COAG의 최선 규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보장하기 위해 OBPR에 접촉해야 한다.

3)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생산성 위원회는 국민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관한 독립적 연구 및 자문 기구이다. 위원회는 좀 더 생산적인 경제를 달성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궁극적으로는 호주 사회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호주 재무성(The Treasury)의 계획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호주의 경제 운영 및 사회 복지에 관련된 핵심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공적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연차 보고를 하고, 정부간 서비스 제공 심사에 있어서 사무국으로 기능하면서 호주 정부간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공기업 활동의 경쟁 중립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쟁 중립성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생산성위원회 내에는 호주 정부의 경쟁 중립성 관련 이의제기 시스템으로서 작동하는 호주 정부 경쟁중립성 고충처리국(Australian Government Competitive Neutrality Complaints Office)이 존재한다.[18] 고충처리국은 고충을 접수, 평가하며 조사를 요구하는 고충을 처리하고, 각 문제에 대해

- 모든 규제영향보고서에 대한 온라인 등록 시스템 관리
- 부처간 위원회 및 국가 기준 설정 기구들이 규제를 제정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호주 정부간 협의회의 지침에 관한 자문
- 주와 다른 국가들에서 호주에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규제 개혁 발전 상황을 감독

18) http://www.pc.gov.au/__data/assets/pdf_file/0005/64679/quick-guide-2009.pdf 참조.

재무부에 독립적 자문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자문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대부분의 조사는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고충을 접수한 지 90일 이내에 재무부로 이송되고, 정부는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복잡한 고충에 대해서는 공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쟁 중립성 적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정부 기구나 개인, 단체는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2) 주의 규제 개혁 담당 기관

호주의 6개의 주 중에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19] 규제 개혁의 핵심 제도인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총괄하는 것은 대부분 정부 부처이며, 독립적인 총괄 기구를 둔 것은 빅토리아 주가 유일하다.

빅토리아 주는 2004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VCEC)를 설치하여 규제나 법안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기업영향평가 및 규제영향보고 제도의 적절성을 평가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독립적인 자문기구로서 주 정부가 정책 및 입법을 마련할 때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돕는다.

(3) 연방과 주정부간 조정 기구

연방과 주정부간 규제의 통일성 및 합리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중복과 낭비가 발생할 것이므로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확립하

19)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는 수상과 내각부 규정에 따라 2003년부터 지역사회에 효력을 미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community impact assessment)를 두고 있고, 퀸즈랜드 주 역시 1992년 법령에 관한 법률(the Statutory Instruments Act 1992)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 주는 재무부에서 규제영향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타스매니아 주는 규제심사과(Regulatory Review Unit)에서 규제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영향분석 및 지역사회 영향분석 제도를 두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김정해 외, 앞의 글, 514-516면 참조.

기 위해서는 연방-주정부간 긴밀한 조정이 요구된다.

1) 호주 정부간 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 COAG)

COAG는 국익을 위한 정부간 협력을 증진하고 통합적, 효율적인 국가 경제의 구축 및 단일 시장의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협의체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 개혁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는 연방 총리, 주정부 지사, 주의 장관들, 지방정부 연합의장이 참여한다.

COAG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연방과 주정부간 협력을 요구하는 분야, 예컨대 보건, 교육, 토착지역 개발, 주택, 경제 개혁, 기후 변화 등에 있어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을 입안, 발전, 감독한다. COAG가 개혁 아젠다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COAG 내에는 개혁 위원회(COAG Reform Council)가 설립되었다.[20]

2) 부처간 협의회(Ministerial Councils)

이것은 특정 규제와 정책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책평가에 있어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연방과 주 및 지방정부 장관들의 공식적 협의체이다. 협의회는 특정 영역에서의 정책 개혁안을 제시, 발전시키고 이를 감독하며 정부간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협력한다. 특히 협의회는 COAG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개혁을 발전시키며 그 이행을 감독한다.[21]

3) 규제개혁위원회(Committee of Regulatory Reform : CRR)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규제 개혁 이슈에 관하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수석관료들의 포럼으로써 1998년부터 국가적 차원의 법률을

20) 자세한 내용은 COAG 개혁 위원회 웹사이트(http://www.coagreformcouncil.gov.au) 참조.
21) http://www.coag.gov.au/ministerial_councils/index.cfm

검토하고, 국가경쟁체제의 개혁과정에서 정부 기관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 2 절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 제도

1. 개 관

2006-07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빅토리아 주 정부는 규제부담경감 계획(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Initiative)을 공포하여 기업 및 비영리 법인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이 불필요한 규제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 접근 방법을 채택하였다.[22] 첫째, 규제에 의한 행정 부담을 3년 동안 15% 경감하고 다음 5년 동안 25% 경감하도록 한다. 둘째, 새로운 규제의 행정부담은 동일한 또는 관련된 영역에서 규제의 간소화에 의해서 상쇄시키도록 한다. 셋째, 규제의 준수 부담을 경감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사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동 계획은 국제적으로 채택된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하여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빅토리아 주의 행정부담의 기준을 완전하게 측정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므로, 빅토리아 정부는 기준을 측정하는 대신 부담의 경감을 달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23] 즉,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하여 2006년 7월 1일 현재 행정부담의 실질적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빅토리아 주의 행정부담의 기준(baseline)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부담의 감축 목표의 가치는 행정부담은 GDP의 1%

22) Department of Treasury & Finance, *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2006-07 Progress Report*, 2007, p.4.

23) Department of Treasury & Finance(DTF), *Estimate of Victoria's Administrative Burden*, A DTF internal working paper, 2007, p.2.

에 해당하고, 국가 전체의 행정부담을 연방과 주정부의 규제가 분담한다는 가정을 뒷받침하기에 가장 유용한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했다. 재무재정부의 사전 추산 작업은 2006년 중반부터 시행되었고,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 측정 사례가 행정부담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가장 주요한 정보가 되었다.[24] 행정부담 측정에 관한 국내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비용모델을 채택, 적용한 몇 개 국가 중에서 호주와 가장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영국의 자료를 참고하여 행정부담의 기준을 제시하였다.[25]

이러한 규제부담경감 계획은 빅토리아 주의 규제 개혁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빅토리아 경제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회를 확인하고 상당한 행정 부담을 부과하는 모든 영역의 규제를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인센티브 펀드를 통해서 각 부처의 규제부담 노력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였다.

2. 빅토리아 주의 규제심사 제도

(1) 기업영향평가(Business Impact Assessment : BIA)

1) 목 적

빅토리아 주에서 기업의 생산성, 경쟁력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의 심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주정부는 법률의 제·개

24) 이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 행정부담은 네덜란드 정부의 표준비용모델 측정 방법론에 근거하여 3조 3천억 달러에 달하고, 행정부담에 대한 연방과 주정부의 분담율은 60대 40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후 DTF는 2006년 겨울에 이루어진 영국의 측정 방법론을 참고하여 빅토리아 주의 행정부담을 측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호주의 행정부담은 GDP의 1%에 해당하고, 행정부담에 있어서 연방 정부 대 주정부 규제의 분담률은 56 대 44이므로 2006년 7월 1일 기준으로 빅토리아 주 규제에 의한 행정부담은 1조 3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았다. - Department of Treasury & Finance, *Estimate of Victoria's Administrative Burden*, A DTF internal working paper, 2007, pp.1-2.

25) *Id.* pp.2-3.

정안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기업이나 경쟁에 '상당한 효과(significant effects)'를 가져오는 법률에 대해서는 기업영향평가(이하 BIA)가 실시된다. 동 평가제도는 제안된 법률이 기업이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다.

2) 적용대상

관계 부처 장관이 기본 법률(primary legislation)이 기업이나 경쟁에 '상당한 효과(significant effects)'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 BIA 절차가 개시된다. 여기에서 '상당한 효과'란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서는 현실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뜻하며, 어떠한 법률안이 기업의 활동 방식이나 수행 주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26] 빅토리아 주의 규제지침서에 따르면 어떠한 법률안이 사업 및 경쟁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즉, 상당수의 기업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단체나 지역, 기업에 집중적 효과를 가져오거나, 빅토리아 주 경제에 거대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 투자자의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사업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빅토리아의 기업들을 경쟁적으로 다른 주나 외국의 기업보다 불리한 위치에 두거나, 시장 진입에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27]

3) 절 차

내각이나 관련 내각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영향평가 보고서의 제출이 요구되며, 이러한 평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VCEC의 심사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BIA는 각 부처에 협조

26) Government of Victoria, *Victorian Guide to Regulation*,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Melbourne, 2007, p.4-7. (이하에서는 Government of Victoria, *VGR*, 2007, p.~로 표기함.)

27) *Id.* p.4-8.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법안이 배포될 때 함께 첨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리가 자문을 위해 법률 초안의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BIA는 다음과 같은 2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 1단계 : BIA 초안은 VCEC의 평가를 거쳐, 배포용 법안이 송부되기 전에 초기 승인단계에서 관련 내각위원회 또는 내각에 제출된다. BIA는 규제 조치 뿐만 아니라 비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 2단계 : 협의 절차 이후에 BIA는 법률안의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입증 자료를 포함하여 수정된다. 수정된 BIA는 다시 VCEC에 의해 심사를 받고 내각이나 내각위원회에 재제출시 첨부된다.

한편, BIA 시행이 면제(exemption)되는 경우도 존재한다.[28] 최근에 호주 정부간 협의회(COAG)에 의해 규제영향보고(RIS)가 이루어져 연방 정부의 규제개선과(Better Regulation Unit)에 의해서 적절성이 검토되었다면 BIA는 면제될 수 있다. 또한 법률안이 기업이나 경쟁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지라도 긴급한 입법의 필요성 등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BIA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관계 부처 장관이 총리로부터 면제 승인을 얻어야 하고, 내각 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이 제출되어야 한다.

4) VCEC의 적절성 심사

VCEC는 내각위원회 또는 내각이 관련된 입법을 검토하기 전에 모든 BIA의 적절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한다. 위원회는 BIA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원래의 정부부처나 기관에게 평가의 수정 및 재제출 등 추가 작업을 권고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나 기관들이 BIA를 준비할 때 VCEC의 심사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자문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VCEC와 협의할

28) *Id.* p.4-9.

필요가 있다.

관계 장관은 VCEC가 BIA의 적절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에도 관련 내각위원회 또는 내각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VCEC의 평가내용을 법률안 제출시 첨부해야 하며, 내각이나 내각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규제영향보고(Regulatory Impact Statement : RIS)[29]

1) 목 적

규제영향보고(이하 RIS) 절차를 도입한 것은 규제가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집행되고, 규제 수단의 발전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공적 자문이 필요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규제영향보고서 작성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ⅰ) 어떤 특정 상황에서 정부 규제 조치의 적합성
ⅱ) 정부의 개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장 효과적인 형태일 것
ⅲ) 규제의 혜택 및 비용의 크기
ⅳ) 사회 내에서 규제로 인해 혜택을 입는 자와 규제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의 확인

RIS를 통해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 규제안이 제안된 조치가 부과하는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가져올

29) 규제 영향보고란 하위 법규인 규제안이 새로이 제·개정되었거나, 일몰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규제안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규제 지침서에 제시된 매뉴얼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영향평가가 각료나 내각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반면, 규제영향평가는 주요 이해관계인과 일반 대중에게 의사결정절차를 이해하고 제공된 분석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가능성이 있을 때, 다른 가능한 대안들보다도 큰 순익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한다.

2) 적용대상

1994년 하위입법에 관한 법률(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에 따르면, 어떠한 법규(statutory rules)의 제·개정안이 '현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appreciable economic or sociable burden)'을 야기하는 경우에 규제영향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개념과 '현저한 부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법규의 개념은 1994년 하위입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정의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법규'는 정부 위원회에 의해 제정되는 규제 또는 위원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어 제정되는 규제, 또는 위원회가 어떤 지역에 한정된 관할권을 가진 지방기관, 사람 또는 기구에 의해 제정된 규제 외에는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규제를 말한다. 그밖에도 재판관련 절차 규칙, 동조 제4조 제1항(a)에 의해 법규라고 규정된 일련의 규범을 의미한다.[30]

다음으로, '현저한 부담'에 관해서는 동법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 제26조를 유추하여 빅토리아 주 규제지침서는 판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된 법규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중립적인 영향을 가져올지라도, 그로 인해 공공의 어느 한 분야가 '현저한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면 RIS 절차가 준비되어야 한다. 즉, 부담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법규가 공공부문에 필수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인지, 그것이 공공 부문에 현저한 비용이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때 '부담'은 이

30) Government of Victoria, *Victorian Guide to Regulation*,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Melbourne, 2007, p.4-16.

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특정한 법규가 현저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ⅰ)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상당한 제재가 부과되는지, (ⅱ)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지, (ⅲ) 기업, 공동체, 또는 개인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 시간을 들여야 하거나 현재의 관행을 변경하거나 외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인지 등의 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31] 이러한 요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서 부담의 규모가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법규에 의해서 수수료 또는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요금 수준과 그것이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그 비용의 수준과 관련하여 특정 예산의 전체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수수료 또는 요금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의미 내에서 '현저한 부담'을 부과하므로 문제된 법규는 RIS의 대상이 된다. 물론 수수료의 액수가 적거나, 일부 사람들만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3) 절 차

가. 예외 및 면제사유의 확인

1994년 하위입법에 관한 법률 제8조는 RIS의 예외(exception)를 규정하고 있다. 관계 장관이 어떤 규제가 주의 예산에서 재무장관이 승인하는 연간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재판절차와 관련된 경우, 법규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선언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일몰 법규의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에 이를 서면으로 증명하면 RIS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32]

한편 동법 제9조는 관계 장관이 제안된 법규가 공공부문에 현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부과하지 않거나, 전국적 통일 입법 계획 하에

31) *Id.* p.4-17.
32) *Id.*

서 마련된 법규인 경우, 또는 근본적으로 선언적이거나 기계적인 성질의 법규인 경우 등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RIS 준비로부터 면제(exemption)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3]

나. 법규의 종류에 따른 RIS 절차 개시

위에서 언급한 RIS의 예외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다음에 해당하는 법규에 대해서 RIS 절차가 준비되어야 한다.[34]

- 새로운 규제의 제정
- 일몰규제의 교체
- 기존 규제에 대한 개정
- 부과된 수수료 및 요금 규제

① 새로운 규제를 제정하는 경우

이전에는 규제되지 않았던 영역의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RIS는 '초기 문제(threshold question)'들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즉, 법규가 적용되는 문제의 본질 및 정보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공공 정책 개입을 요구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나아가 다른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RIS에서 수행되는 비용편익 분석은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② 일몰 규제들을 교체하는 경우

일몰 규제들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의해 부과되는 각각의 제한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몰 규제를 교체하

33) *Id.* p.4-18.
34) *Id.* p.4-21.

고자 할 때, 그것이 유사한 형태이든 아니면 개정된 형태이든 불문하고, RIS 절차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문제의 범위와 본질이 여전히 규제대응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의 입증
- 기존 규제제도의 실제효과 평가
- 특정 규제대안이 최고의 해결책임을 입증
-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비용편익분석 실시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정책 개발 절차가 비용 편익, 그리고 규제안 및 다른 대안을 통해서 사회에 미치는 전체적 영향을 고려할 것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RIS가 기존의 규제들을 뒷받침하는 문제들을 재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발전들, 예컨대 시장 구조에 관한 기술발전과 지역사회의 기대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③ 기존 규제들을 개정하는 경우

RIS가 현존하는 규제들의 개정에 관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용편익 분석은 규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비용과 편익의 증가/감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④ 수수료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1994년 하위입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수수료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규를 '현저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할 때 새로운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예전에는 무료로 제공되었던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수수료를 도입하는 경우, 또는 관련 주 예산 재무에 의해 승인된 연간비율을 초과하여 기존 수수료가 증가되는 경우, 일몰로 인

한 규제의 재제정 등에 대해서 RIS가 요구된다.[35]

4) VCEC에 의한 적절성 평가

1994년 하위입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RIS의 적절성에 대하여 다음의 세단계에 따라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36] 제1단계는 위원회가 독립적인 평가를 하고, 제2단계에서는 위원회의 평가 및 기타 다른 자문에 근거하여 법규의 집행을 담당하는 책임 장관이 그 적절성을 평가하고,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규제가 제정된 이후 법률 및 규제 심의위원회가 규제 및 RIS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가. 독립적인 평가

법 제 10조 제3항에 따르면, 관계 장관은 RIS가 입법의 요구를 적절하게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므로, VCEC는 모든 규제영향보고서에 대해 독립적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VCEC가 RIS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관계 부처나 기관이 RIS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관계 장관은 공개적 자문을 위해 RIS 결과를 공표할 수도 있다.

나. 장관의 인증

관계 장관은 RIS의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으며, 동 기술서가 제안된 법규의 영향을 적절하게 평가했다는 점에 대해 인증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다. 법률 및 규제 심의위원회(Scrutiny of Acts and Regulations Committee : SARC)의 평가

규제가 제정된 후 규제영향보고서, 규제, 자문기간 동안 수집한 의견서의 사본과 공개 의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부처 및 기관

35) *Id.* p.4-23.
36) *Id.* pp.4-27 ~ 4-28.

의 답변 등을 법률 및 규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SARC는 규제를 수권하는 행정입법권의 적절성에 관한 기준(정의와 공평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법률에 규정된 규제제정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규제를 심사한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의견을 권고할 수 있고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수용을 제시할 수도 있다.

< BIA와 RIS의 비교 >[37]

	기업영향평가(BIAs)	규제영향기술(RISs)
법적 근거	없음	1994년 하위입법에관한법률(‘법’)
적용범위	기본 법안	법규(주로 ‘규제들’)
적용 요건	사업 그리고/또는 경쟁에 대한 잠재적인 ‘상당한 효과’	공공부문에서 ‘현저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담
BIA/RIS의 필요시기 결정권자	책임 장관	책임 장관(법 제 7조)
예외/면제	유일한 예외적인 상황은 총리가 책임 장관과 협의하여 동의한 경우	제한됨(법 제8조와 제9조)
준비	부처 / 컨설턴트	부처 / 컨설턴트
필요한 분석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평가를 포함한 RIS 분석과 유사	1994년 하위입법에 관한 법률의 제10조에 명시

37) *Id.* p.4-4, Table 4.1.

	기업영향평가(BIAs)	규제영향기술(RISs)
행정부담의 측정[38]	상세한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건별로 측정(일반적으로 입법제안은 측정처리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상세한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규제가 행정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측정(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명시하고 서명한다)
독립적인 평가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VCEC)	VCEC
인증	VCEC는 타당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	책임 장관은 법률과 함께 RIS준수 여부를 증명
공개자료	재무 및 책임 장관, 총리의 동의	법규가 만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출판될 것(법 제11항)
보고	VCEC는 매년 BIAs에 적용되는 정책의 준수 여부에 대해 보고	VCEC는 매년 RISs에 적용되는 정책의 준수 여부에 대해 보고
정밀조사	BIA는 정부의 의사결정을 통보하는 도구처럼 사용됨. BIA와 관련된 기본법안은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됨	법률 및 규제 심의 위원회에 RIS의 사본과 함께 법규, 공적 의견서 및 의견서에 제기된 부처의 답변이 제공됨

(3) 행정부담의 측정

2006-2007년 예산의 일부로 공표된 '규제부담 경감 계획(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Initiative)'에 따라, 정부는 규제의 현존하는 부담을 삭감하고 새로운 규제의 행정 부담을 '상쇄시키는 간소화(offsetting

38) 2011. 5. 개정된 빅토리아 주 규제지침서에는 행정부담의 측정 부분이 규제변화측정 매뉴얼에 의해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삭제되었다.

simplification)’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39]을 경주해왔다. 행정 부담을 간소화하고 감소하기 위한 노력은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을 사용하여 행정 부담에 있어서의 모든 실질적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40] 일정한 경우에는 기업영향평가 혹은 규제영향보고서 작성 과정의 일부로서 행정부담의 측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1) 측정 대상 및 범위

행정부담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업과 비영리부문에 부과되는 모든 요구사항(requirement)으로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를 강제할 수 있는 경우이다. 바꾸어 말하면, 형식에 관계없이 주 정부의 장관, 부처, 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의무(legally-enforceable obligations)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업은 직접 고객이나 다른 기업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단체이고, 비영리 조직은 영리 추구가 아닌 사회적 또는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사적 부문의 조직을 의미한다. 보통 ‘기업’이라는 용어에 비영리 조직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2) 행정부담의 정의

행정부담이란 종종 ‘관료주의(red tape)’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주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또는 주정부로 하여금 규제를 집행하도록 허

39) 규제부담경감 계획에서 빅토리아 주정부는 현존하는 규제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에도 새로운 규제로 인한 부담을 동일하거나 관련된 영역에서 요건의 단순화 또는 유연화를 통해 상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허가 요건을 유연화하는 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상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40) 빅토리아 주정부는 2006-07년 규제부담경감에서 경감의 목표로 2009년까지 15%, 2011년까지 25%를 정했으나, 2009년 9월에 2012년 7월까지 5억 달러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목표에는 규제의 행정부담 뿐만 아니라 실질적 준수비용 및 지연 비용의 경감까지 포함됨으로써 종래의 표준비용모델은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 Victorian Government, *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The Victorian Government's Initiative to Reduce Red Tape：2008-09 Progress Report*,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Melbourne, 2009, p. 1.

용함으로써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41] 여기에는 요구에 대한 순응 비용,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록 보관 비용, 규제의 조사 및 집행을 포함한 보고 비용이 포함된다.

빅토리아 주의 표준비용모델은 규제의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을 측정하는 방법론으로서, 실질적 준수 비용(Substantive Compliance costs), 재정 비용(Financial Costs) 또는 간접비 등(Indirect/Market Costs)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업이 주정부나 기관에 대하여 규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하며, 각각의 정보 제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많은 특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표준비용모델은 각 행정행위를 완성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3) 행정부담 측정의 원칙

규제부담 경감 계획의 바탕에는 어떠한 새로운 규제의 행정 부담이 동일한 체계내에 현존하는 규제의 행정부담을 동시에 감소시킴으로써 상쇄된다는 원칙적 목적이 존재한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규제안에서 언제나 상쇄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규제의 변화가 RIS 내에서의 부담의 상쇄가 아니라 정책적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규제가 없었던 분야(green field)에서의 규제는 충분한 상쇄가 어렵고, 규제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제정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 부담의 측정은 빅토리아 주의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동 매뉴얼에 적용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측정은 필요한 정보가 이용 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개발 또는 집행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측정은 관련 규제의 변화가 행정부담에 실질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일응의 입증(prima facie evidence)이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41) Government of Victoria, *Victorian Guide to Regulation*, Department of Treasury & Finance, 2007, p.4-33.

- 측정의 적절성은 VCEC에 의해 평가되어져야 한다.
- 측정 절차의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3.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 기구

(1)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

1) 설립 목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에서는 연방정부의 규제 개혁과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규제개혁 시스템과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빅토리아 주는 2004년에 개정 국영기업령(State Owned Enterprises Order 2004)[42]에 근거하여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를 설립하여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규제영향보고서 및 기업영향평가서[43]에 대한 타당성 심사와 규제법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통하여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ⅰ) 빅토리아 주정부가 회부한 문제들의 조사 수행
(ⅱ) 중요한 신규 입법과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규제의 행정적 부담에 대한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권고
(ⅲ) 빅토리아 주 경쟁중립기구의 운영

---

42) 명령은 2006년 10월에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위원회의 역할을 규제의 행정적 부담에 있어서 변화의 측정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43) 1994년 하위입법에 관한 법률(Subordinate Legislation Act of 1994)에 따라 규제영향보고서(Regulatory Impact Statements)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영향평가제도(Business Impact Assessments)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와 경쟁 환경의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규제의 영향을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법은 법안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안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위원회는 정부가 어떻게 규제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언함으로써 빅토리아 주의 건전한 재정관리에 기여한다. 즉, 위원회는 정책 결정자가 아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자문기관으로서 정부가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빅토리아 주의 경제에 있어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기능

가. 조사(Inquiries)

위원회가 담당하는 첫 번째 기능은 공적 조사권(Public Inquiries)을 통해서 빅토리아 주정부가 위원회에 회부한 빅토리아 경제 관련 정책 및 보고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조사는 위원장 1인과 일부 위원들에 의해서 수행되며, 조사 절차는 전형적으로 개인, 사업자, 이해관계인,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공적 설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2004년 7월 위원회 수립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위원회에게 12개의 공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44]

나. 규제 심사(Regulation Review)

다음으로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규제영향보고서 및 기업영향평가서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는 관계부처에서 규제나 입법을 새로 마련하거나 개정안을 준비할 때 이루어

44) 빅토리아 주정부의 재무담당자는 2개의 새로운 연구 과제를 위원회에 2009년에 위탁하였다 : ① 지방정부규제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8월), ② 금융서비스부분의 규제적 장벽에 관한 연구(9월)이다. 위원회는 2009-10 기간 동안 대량의 조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재무담당자에게 금융서비스부분장애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2010년 8월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환경규제연구(2009년 7월)와 시설공유연구(2009년 9월)를 관한 마쳤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이 두 연구에 관하여 세부적인 발표를 했다. 2010년 6월 재무담당자는 위원회에 빅토리아주의 규제 틀에 관한 연구를 지시했다. 위원회는 2011년 2월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재무담당자에게 2011년 6월에 제출 할 것이다. - VCEC, *Annual Report 2009-10,* 2010, p.35.

진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규제영향보고의 대상과 기업영향평가의 대상이 구별되어 있다. 전자는 어떠한 '규제'가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실시되고, 후자는 어떠한 '입법'이 기업이나 경쟁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된다. 위원회는 각 부처가 실시한 규제영향보고서 및 기업영향평가서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어떠한 규제 또는 입법이 빅토리아 주의 규제 지침서(Victorian Guide to Regulation)에 정의된 바와 같이 '좋은 규제'[45]가 되도록 촉진할 수 있다.

RIS와 BIA의 과정을 두는 것은 높은 질의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여 규제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BIA는 직접 장관과 내각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RIS는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들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의견을 분석,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규제 조치가 필요 최소한의 정도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위원회가 RIS 또는 BIA가 각각 하위 입법에 관한 법률과 빅토리아 주의 규제 지침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어떤 규제나 법률에 의해 다루어질 문제가 분명하게 특정되고 문제에 대한 적절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실현가능한 대안의 범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은 적절한 데이터에 근거하고 투명한 가정이나 판단을 포함하도록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46]

위원회는 RIS 또는 BIA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각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규제안 및 실행가능한 대안의 비용 편익의 심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분석에 관한 사항을 요약

45) 여기에서 좋은 규제 또는 입법이란 다루어질 문제들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가능하면 그 문제에 적합한 대안의 비용편익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Government of Victoria, *Victorian Guide to Regulation*, Department of Treasury & Finance, 2007, p.3-1 ~ 3-2.

46) VCEC, *Annual Report 2009-10*, p.58.

한 위원회의 평가서는 RIS에 첨부되어야 하고, 위원회의 평가서는 내각이 고려하는 모든 BIA에 첨부되어야 한다.

한편 2006년 10월에 국영 기업령 개정으로 위원회의 역할은 규제의 행정부담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까지 확대되었다.[47] 빅토리아 주 정부는 기업 규제에 대한 행정적 부담의 감소를 그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의 변화를 측정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종래 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표준비용모델 방법론이 사용되었으나, 정부가 규제부담 감소의 목표를 2011년 7월까지 연간 2억 5천 6백만 달러에서 2012년 7월까지 5억 달러로 확대하면서 행정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표준비용모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측정대상을 확대한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으로 대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빅토리아 주 규제지침서에 따르면, RIS 또는 BIA가 이루어지는 문제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가능한 대안들의 비용편익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이전의 표준비용모델 방법론은 행정적 규제부담의 변화를 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 반면에, 새로운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기업, 비영리법인, 정부 서비스 제공에 부과되는 규제의 행정비용, 실체적 준수 비용 및 지연 비용과 사인에 의해 발생하는 일부 비용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규제부담의 변화가 연간 1천만 달러를 넘는 경우 또는 규제변화측정 보고서가 BIA나 RIS와 함께 준비되는 경우에 그 규제 또는 법률안에 대해 평가할 책임이 있다. 새로운 절차의 도입으로 위원회는 연간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규제변화측정이 동 방법론을 준수하고 있고 엄격한 계산과 적절히 구성된 가정, 그리고 규제변화의 실제 비용을 나타내

47) Amendment to the State Owned Enterprises(State Body-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 Order 2003, Victoria Government Gazette No. G 42 Thursday 19 October, 2006, p. 2275. www.gazette.vic.gov.au

는 공공부문에 의해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예측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48]

위원회는 2009-10년 동안 규제영향보고서 작성(RISs) 29건과 기업영향평가(BIAs) 15건과 4개의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측정을 평가하였다.[49]

다. 경쟁중립성 기구(Victoria's Competitive Neutrality Unit) 운영

위원회의 세 번째 기능은 정부의 기관과 지방정부가 그들의 중요한 사업행위에 주정부의 경쟁 중립성 정책(National Competitive Neutrality Policy)의 적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순경쟁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규제개선과(Better Regulation Unit)[50]

규제개선과는 재무재정부의 경제금융정책국(Economic and Financial Policy Division) 소속으로서 빅토리아 주 정부의 규제 부담 경감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 규제개선과는 규제 변화 측정 행위에 대해 각 부처에 지침을 제공하고,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그 적합성을 평가한다.

제 3 절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빅토리아 주의 규제 개혁 역시 호주 정부의 '경쟁력 강화'라는 개혁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빅

48) VCEC, *Annual Report 2009-10*, p.56.

49) VCEC, *Annual Report 2009-10*, p. 55. 이에 관한 간략한 소개는 VCEC의 2009-10년 연간 보고서 62면 이하에 소개되어 있다.

50) BRU website : http://www.dtf.vic.gov.au/betterregulation

토리아 주는 연방의 국가경쟁정책 시행을 위한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확인, 개선하고자 규제영향보고, 기업영향평가, 행정부담의 측정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호주 규제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규제영향보고 제도는 부처에 의해서 작성되지만 독립적인 자문기구를 두어 그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게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를 중심으로 빅토리아 주의 규제 개혁 제도는 좀더 정교화되고 그 적절성을 검증받음으로써 호주 내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기업의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부담 감축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규제로 인한 기업 등의 행정부담 측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재무재정부를 중심으로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 활용되었던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부담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규제로 인한 부담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부담 감축을 위해서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로 인한 비용의 변화를 측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규제비용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빅토리아 주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것은 표준비용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 장 표준비용모델의 도입과 발전

제 1 절 표준비용모델의 도입 배경

빅토리아 주에서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게 된 것은 규제의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규제부담경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빅토리아 주의 규제가 유발하는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규제부담의 경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존하는 규제의 행정부담을 측정할 필요가 있었고, 유럽 국가들에서 채택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입증된 바 있는 표준비용모델을 측정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규제규제부담 경감 계획의 일부로서, 빅토리아 주 정부는 2006년부터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하여 규제의 행정부담을 측정하였다. 표준비용모델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과되는 행정비용을 산정하는데 통일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가 개발한 것으로 현재까지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20개국 이상에서 채택, 적용되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개별 법률당 발생하는 행정부담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감축계획을 수립하게 해줄 뿐 아니라, 제안된 법률이나 규제 대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효과를 측정하여 규제정책의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51] 빅토리아 주 재무재정부(Department of Treasury & Finance, 이하 DTF) 내의 규제개선과(Better Regulation Unit)는 2006년 빅토리아 주의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을 제정하였고,[52] 이것은 빅토리아 주 규제지침서 2007년 판 부록(Appendix F.)에 제시되어 있다.[53]

---

51) 김 신, “행정부담의 측정모형 및 적용 : 표준비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2권 제2호, 2005, 59면.

52) 빅토리아 주의 표준비용모델은 국제 표준 방법론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채택하였지만, 빅토리아 주의 환경에 맞도록 몇몇의 절차 요건들을 단순화하고 변화시켰다.

53) 그러나, 빅토리아 주에서 규제변화측정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규제 비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표준비용모델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

빅토리아 주의 표준비용모델은 모든 기업에 대한 규제의 행정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54]

빅토리아 정부는 규제절차의 개선에 새로 초점을 맞추고 관료주의의 상당한 경감이 정책 목표와 타협하지 않고도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무재정부가 빅토리아 주의 규제에 의해서 기업에 부과된 행정비용을 사전적으로 추산한 것은 3조 3천억 달러였고,[55] 이에 근거하여 이러한 부담의 15%의 감소는 약 5억 달러의 감축을 의미하고, 연간 8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정부는 표준비용모델에 의해서 특정 규제의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경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도록 하였다.

빅토리아 정부는 현존하는 규제 부담 경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새로운 부담을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다.[56] 새로운 행정 부담을 상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현존하는 규제부담만을 경감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의 행정부담의 증가에 의해서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3년 동안 규제부담의 15%의 감소를 달성하고, 그 다음 5년 동안 25%의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존하는 요건을 유연화하고 새로운 규제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규제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은 규제의 이익이 비용을 초과하고, 새로운 행정부담이 감축에 의해서 상

에 따라 2011년 5월 빅토리아 주 규제지침서 개정판에는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이 삭제되었다.

54) 빅토리아 주의 규제 지침서(2007년)에는 중소기업영향평가 매뉴얼도 포함되어 있다. (Appendix G. Small Business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Manual)

55) 이러한 추산은 표준비용모델에 근거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빅토리아 주의 행정부담은 GDP의 3.6%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부담에 대한 분담률은 연방 대 주가 60 대 40이라고 하였다. Department of Treasury & Finance, *Estimate of Victoria's Administrative Burden*, A DTF internal working paper, 2007, p.1.

56) *Id.* p.2.

쇄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부 규제에 문화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제 2 절 표준비용모델의 내용

1. 표준비용모델의 개관

표준비용모델은 어떠한 규제가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에 부과하는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측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1) 정보제공의무

표준비용모델이 측정하고자 하는 행정부담의 본질은 규제로 인해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이 정부 부처나 기관에게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이다. 여기에서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 : IO)란 정보를 생산, 준비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감사・방문・조사 등의 허용, 협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 관련 정보를 수집・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는 의무를 포함한다.[57] 정보제공의무는 몇 개의 자료요구(Data Requirement : DR)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자료요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행정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을 통해 행정부담을 측정한다는 것은 각 행정활동의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8] 각 행정활동은 내부비용, 외부비용 및 취득비로 이루어진다.

(2) 비용변수(Cost parameters)

규제의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 변수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준비용모델에서의 비용변수는 가격(P)과 수량(Q)으

57) 이병기, 앞의 글, 11면.
58) 이병기, 앞의 글, 11면.

로서, 가격은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산정하고, 수량은 모집단이 규제로 인해 해야 하는 행위의 빈도로써 산정된다. 여기에서 요금은 내부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에 대한 급여비용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시간은 요구되는 행정 활동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총 시간이다. 모집단은 규제의 영향을 받는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수이고, 빈도는 매년 완료해야 하는 행위의 회수이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은 기업이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급여비용임을 알 수 있다.

표준비용모델 공식

행정비용 = 가격 × 수량
= (요금 × 시간) × (모집단 × 빈도)

2. 측정의 대상 및 범위

표준비용모델을 통해서 규제의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부 규제에 해당하는지, 규제의 영향이 미치는 기업 및 비영리조직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행정비용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1) 측정의 대상

1) 정부 규제(government regulation)

규제부담 경감 계획(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Initiative)에 따르면 '규제'는 주 입법에 따라 기업과 비영리 부문에 부과되는 요구사항을 말한다.[59] 이것은 규제부담경감 계획이 1994년 하위입법에 관한 법률 하에서의 법규 및 규제적 성격을 가진 다른 하위 규범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1994년 법률에 의해 규제영향보고서

59) Government of Victoria, *VGR*, 2007, p.F-4.

작성의 준비가 면제된 법규, 동법에 의해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하위 규범들, 관계 장관에 의해서 기업과 비영리 조직에 행정 부담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이는 허가 조건과 같은 규제들에는 SCM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에 의해서 규제영향보고서 작성 준비의 예외로 인정된 법규, 근본적으로 선언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지는 하위 규범들, 2004년 공공행정법(Public Administration Act 2004)에 따라 부처간 또는 기관간 집행 또는 절차를 다루는 하위 규범들, 2005년 의회 행정에 관한 법률(Parliamentary Administration Act 2005)에 따라 부처간 또는 기관간 집행 또는 절차를 규정한 하위 규범들, 1989년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Local Government Act 1989)에서의 지방의 법률들에는 SCM이 적용되지 않는다.[60] 결론적으로, 어떤 규범이라도 그것이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기업이나 비영리부문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규제적 성격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차를 규정한 것이거나 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일 때, 또는 기관간 협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정의 대상으로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기업 및 비영리 조직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소비자 또는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는 단체로서,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공예산으로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나 국립 병원과 같은 정부기관은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기관이라도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한편, 비영리조직이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 또는 공동체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사적 영역의 기관을 의미한다. 비영리조직도 기업과 같은 이익 창출 행위를 하나, 소유주나

60) *Id.* p.F-5.

주주들에게 이러한 이윤을 배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비영리 조직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규제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규제의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영리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측정의 범위

표준비용모델을 통해 측정되는 행정비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제 비용(regulatory cost)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어떠한 규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준수비용(compliance cost)과 재정비용(financial cost), 간접비용(indirect cost)이 소요된다.[61] 여기에서 준수비용이란 재정비용을 제외하고 규제를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 전부를 말한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르면, 이는 '실질 준수비용'과 '행정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실질 준수비용은 규제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도출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보통 자본과 물품 구입비용을 말한다. 이것은 내용이 한정된 규제와 관련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보관하고, 정부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거된 행위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반면에, 행정비용이란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규제를 집행하도록 하게 위해서 기업에 부과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예컨대 행정 요건의 최적화 비용, 규제의 조사 및 집행을 포함한 기록들을 보관, 보고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표준비용모델을 통해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실질 준수비용이 아니라 행정비용이다.

그밖에도 재정비용은 정부나 관련 기관에 일정한 비용을 납부할 구체적, 직접적 의무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 수수료와 세금으로서,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수수료는 규제에 대한 재정비용이다. 간접/시장 비용은 규제가 시장 구조나 소비 패

61) *Id.* p.F-6.

턴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러한 비용은 특정 행위의 허가, 특정 직업이나 기업에 자격을 규정하거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경우에 수범자들은 제한된 서비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재정비용과 간접/시장 비용은 모두 표준비용모델의 측정 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결국, 측정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 비용에 한한다.

한편, 규제를 통해 기업 등에게 발생하는 비용에서 일반적인 기업의 운영비용(Business-As-Usual)은 제외된다. 일반적인 기업 운영비용은 규제가 없더라도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빅토리아 주는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면서 네덜란드가 아닌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였다. 네덜란드는 일반적인 기업 운영비용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였으나, 영국은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대상에서 이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62]

3. 측정의 절차

표준비용모델을 통해 기업 등의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63]

(1) 제1단계 - 예비적 분석(preparatory analysis)

예비적 분석은 현재의 행정부담과 부담에 대한 제안된 변화, 모두에 대한 비용변수를 확인하고 규제를 확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료를 수집하기 이전에 하는 예비적 분석은 표준비용분석을 수행하는 업무

62) DTF, *Estimate of Victoria's Administrative Burden*, A DTF internal working paper, 2007, p.4.

63) Government of Victoria, VGR, 2007, p.F-18. ~ F-25.

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1) 절차 1 : 규제의 도식화

절차 1의 목적은 규제를 정보제공의무와 자료 요구의 결과 및 행정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보제공의무란 나중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게 할 의도로 정보를 준비하거나 수집할 의무로서, 회계감사, 방문 조사를 허가함으로써 정보 준비나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업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범위의 정보와 자료로 구성된다. 한편, 자료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행정활동이 필요하다. 표준비용모델에서는 이러한 행정활동을 크게 5개의 범주(자료 요구의 이해, 정보 수집, 계산과 준비, 종료와 이송, 합의 도달)로 나누고 각각을 16개의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64]

64) Government of Victoria, VGR, 2007, p.F-11. 행정활동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 요구의 이해(Understanding the requirement)
①교육(Training) : 관련된 고용인은 수시로(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바뀌는 날짜에 정보제공의무를 맞추어야만 한다. ②정보제공의무 순응(Familiarisation with the information obligation) : 주어진 정보제공의무를 위해 규칙들에 스스로 정통하는 것과 관련한 기업의 자원 소비
2. 정보의 수집(Gathering the information)
③정보 검색(information retrieval) : 주어진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관련 수치들과 정보를 검색하기 ④평가(assessment) : 보고를 받기 위한 공공기관에 필요한 수치들과 정보 평가하기
3. 계산과 준비(Calculation and preparation)
⑤계산(Calculation). 보고를 받기 위해 정부나 그 기관에 필요한 관련 계산 수행하기 ⑥점검(Checking). 계산된 수치들을 점검하기 (예 : 다른 자료와 조정하기) ⑦수정(Correction). 만약 기업 자체의 점검으로 계산상 오류가 나타난다면, 이는 나중에 수정되어야 한다. ⑧내부 회의(internal meetings). 회의는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는데 관련되는 다양한 인사 그룹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진다. ⑨외부 회의(external meetings). 회의는 정보제공의무의 준수가 회계감사원, 변호사, 등등과의 회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정리하면, 절차 1에서 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수정된 규제에 의해 변화할 것인 실질적인 정보제공의무를 확인하기
- 현재의 정보제공의무에서 자료요구를 확정하고, 자료요구와 관련된 행정행위를 확인하기.
- 제안된 정보제공의무에서 자료요구를 확정하고, 행정행위를 확인하기
- 어떠한 표준행정행위도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된, 표준비용모델 스프레드시트를 준비하기
- 문제가 되는 규제의 증가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규제나 일반적인 업무요구를 확인하기

2) 절차 2 : 비용변수의 산정

절차 2의 목적은 비용변수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가격요소(Price components)와 수량요소(Quantity components)를 검토한다.

4. 종료와 이송(Finalisation and transmission)
⑩설명(Description). 보고 요구에 대한 설명 준비하기 예 : 연간보고 ⑪발표(presentation). 표나 기타에서 계산된 수치들을 발표하기 ⑫보고하기/정보제출하기(reporting/submitting information). 해당되는 경우에, 정보를 관련기관에 보내기 ⑬복사, 분류, 보관 등(copying, distribution, filing, etc.) 경우에 따라서, 보고서는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복사하고, 분류 및/또는 보관한다. 조사와 관련된 다음 제품을 위해 정보제공의무를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⑭지불/납입(Settelment/payment). 세금, 수수료 등등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한 행동들, 예컨대 수표를 인출하기 위해 내부 승인을 준비하는 것,
5. 합의 도달(Reaching agreement)
⑮공공기관에 의한 조사(inspections by public authorities). 외부조사관들이 기업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때, 외부조사관에게 협조하기 ⑯공공기관의 조사에서 나온 시정조치(correction resulting from inspection by public authorities). 만약 외부조사관들이 행정적인 책임/결함을 확인한다면, 이후에 시정한다.

우선, 가격을 측정하는 비용변수의 예비적 산정은 측정과정 2의 실제 자료 수집에 대한 준비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

- 현재의 시간당 급여, 시간, 외부 요금과 다른 중요한 비용에 대한 예비적 산정하기
- 제안된 시간, 외부 요금과 다른 중요한 비용에 대한 예비적 산정하기
- 예비적 가격 요소를 표준비용모델 시트에 입력하기

요금과 시간 요소는 실제 자료 수집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더라도, 인터뷰 과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예비적 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행정 부담에 있어서 제안된 변화가 행정비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표준비용모델 공식의 가격요소

가격 = 내부 가격(요금×시간)
+ 외부 요금
+ 다른 중요한 비용

* 요금은 간접비에 의해 증가되는 시간당 급여이다.

다음으로 수량을 측정하는 비용변수는 호주통계청과 같은 부서의 정보와 통계적 수치들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있다.

- 현재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모집단과 이행비용, 빈도 산정하기
- 규제의 개정안이 모집단과 이행비용 및/또는 빈도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여부 결정하기
- 각각의 제안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모집단과 이행비용, 빈도 산정하기
- 표준비용모델 스프레드시트에 수량요소 입력하기

(2) 제2단계 - 구체적 자료 수집(Empirical data collection)

제2단계에서 할 일은 기업 인터뷰를 통해 가격을 측정하는 비용변수의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실제 자료 수집의 초점은 행정행위를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 외부요금, 다른 주요한 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적절한 급여를 확인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1) 절차 3 : 실제 자료 수집에 대한 준비(Prepare for the empirical data collection)

절차 3은 적절한 실제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고, 적당한 인터뷰 대상자를 확인하여 잠재적 인터뷰 대상자와 연락하고 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65]을 결정하고, 질문지를 준비하며, 인터뷰할 기업/전문가를 선택[66] 해야 한다.

2) 절차 4 - 인터뷰하기(Conduct interviews)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가격을 평가하는 비용변수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행정행위, 외

65) 규제의 주된 내용이 변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은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일 것이다. 예컨대, 만약 새로운 규제 체계가 규제의 3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면(예 : 등록, 기록 보관, 사건보고), 자료 수집 방법은 규제의 각 부분에 대해 인터뷰할 3개의 기업그룹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인터뷰가 지나치게 길지 않고 기업에 비합리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66) 인터뷰할 기업의 선정은 행정부담에 대한 의무의 효과가 사업전반에 걸쳐 다른지에 대한(예 : 회사의 크기, 위치나 유형 때문에) 평가에 기초해야만 한다. '정상적인 효율 기업(normally efficient business)'의 행정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에는 일반 기업들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문의 대표로 선택된 기업과 5번의 인터뷰를 수행해야만 한다. 샘플 선정시 산업의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적 동질적인 산업에서 샘플들은 보다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산업이 보다 다양하고 소수의 산업들은 영향을 받는 경우, 만약 이러한 차이들이 실질적으로 차등적인 행정비용을 가져온다면 샘플의 크기는 더 커야할 필요가 있다.

부 요금 비용과 다른 중요한 비용 각각을 이행하는데 드는 시간 내에 모은 정보를 포함한다.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고용인의 시급에 관해 수집된 정보를 통해 적절한 급여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단 최초의 인터뷰가 수행되고 나면, 정상적 효율 기업[67]의 결과가 정해졌는지의 여부나 심도 있는 인터뷰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절차 4에서는 우선 면접대상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이유와 표준비용모델 측정 과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 3에서 만든 질문서를 사용하여 실제 인터뷰를 수행하고, 정상적 효율 기업의 결과가 확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답변들을 평가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인터뷰를 다시 수행해야 한다.

(3) 제3단계 - 산정, 자료 제출, 보고서(Calculation, data submission and reports)

제3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인터뷰로 수집된 자료들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효율 기업의 비용 요소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기업 모집단에 대한 행정 부담의 최종적인 변화를 계산하고, 표준비용모델 보고서를

67) 표준비용모델 분석의 대상은 '정상적 효율 기업(a normally efficient corporation)'이다. 이는 행정 업무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 보다 더 잘 다루지도 더 못 다루지도 않는 대상 모집단 내의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표준비용모델 측정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특별히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효율 기업은 대상 모집단 내의 일반적인 기업들(최소 5개로 예상된다)과 함께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발견되고, 이는 기업을 위해 외주작업을 수행하거나 산업을 대표하는 다른 전문가들과 인터뷰에서도 가능하다. 인터뷰가 이루어졌을 때, 기업들의 답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일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사후 검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만약 인터뷰 결과가 적절하지 않다면, 정상적인 효율 기업의 시간 소비에 대해 근거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보다 많은 기업 인터뷰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표준비용모델은 통계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낳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 Government of Victoria, VGR, 2007, p.F-16.

만들어서, 표준비용모델 스프레드시트를 완성하는 것이다.

1) 절차 5 : 비용변수를 표준화하고 기입하기(Standardise and complete the cost parameters)

절차 5에서는 비용변수와 정보제공의무 각각을 표준화한 수치를 표준비용모델 스프레드시트에 기입해야 한다. 이는 절차 6에서 표준비용모델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기초가 될 것이다.

절차 5에서는 각각의 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상적인 효율 기업에 대한 개개의 추산을 제공하는 실제 자료 결과를 산정하고, 각각의 정보 제공의무에 대한 기업 모집단 전부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표준비용모델 스프레드시트에 기입하도록 한다.

2) 절차 6 : 보고와 협의(reporting and consultation)

절차 6은 측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표준비용모델 보고서를 완성하고, 보고서와 측정에 사용된 스프레드시트를 VCEC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3 절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한계

표준비용모델의 측정 대상인 규제의 행정부담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규제로 인해 기업이 체감하는 행정부담을 모두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측정의 범위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예컨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기존의 표준비용모델에 따르면 측정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또한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 준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표준비용모델은 수범자가 규제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가정하고 행정비용을 측정하는 것이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표준비용모델을 도입,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이와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독일형 표준비용모델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6년에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수정한 “간이 표준비용모델(SKM-Kompakt)”[68] 개발한 바 있고, 최근에는 표준비용모델이 법령상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만을 측정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각종 행위의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규제비용모델(Regulierungskostenmodell)을 개발하였다.[69]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도 종래의 표준비용모델이 갖는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논의 끝에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빅토리아 규제 지침서에 포함된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을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장을 바꾸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68) 이것은 표준비용모델을 간소화한 것으로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법론이다. SKM-Kompakt는 정보제공비용 조사의 실시를 위한 단순화된 절차의 일종으로서, 잠재적으로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법규정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SKM 측정의 체계적 집중화를 가능하게 하고, 정보제공비용 조사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원칙적으로 실시하며, 종래 표준비용모델의 13개의 측정 절차를 5개로 축소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귀현, 「Brandenburg 주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표준비용모델 적용사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23-24면.

69) 윤석진,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 2010년 입법평가연구센터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세션 II 토론문, 101-102면.

제 4 장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등장 및 내용

제 1 절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등장

빅토리아 주정부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가 주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고 상당한 순이익을 사회에 공급하기 위한 규제 제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70] 이를 위해서 규제에 의해서 부과되는 비용을 감소하고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왔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규제부담경감 계획(Reducing Regulatory Burden Initiative)이라고 할 수 있다.

동 계획은 빅토리아 주의 규제의 행정부담을 2009년까지 15%, 2011년까지 25%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재무재정부 장관은 2012년 7월 1일까지 규제부담을 5억 달러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하였다.[71]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비영리 부문에 부과되는 규제의 행정비용, 실질적인 준수비용과 지연 비용, 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사인에 의해 초래되는 비용의 감축까지 필요하다고 하면서 측정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도입된 것이 규제변화측정 매뉴얼(Regulatory Change Measurement Manual)로서 종래 표준비용모델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은 규제의 행정비용일 뿐이므로 늘어난 경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 등이 규제를 준수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실질적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비용모델을 수정한 이 방법론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72]

---

70) Department of Treasury & Finance, *Regulatory Change Measurement Manual*, 2009, p.1.

71) 규제부담 경감(RRB) 계획에 관한 회계담당자의 2008-2009 진행보고서에서는 5억 달러를 경감목표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진행보고서는 www.dtf.vic.gov.au/betterregulation 에서 찾아볼 수 있다.

72) 이에 따라 빅토리아 주의 국영기업령은 2010년 10월 다시 수정되었다. 종래 규제

제 2 절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내용

이하에서는 규제변화측정 매뉴얼[73]을 토대로 하여 동 방법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측정의 대상 및 범위

규제변화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규제가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비용이다. 측정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해서 다음 세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규 제

우선,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주의 규제, 지방정부의 법률, 법원 규칙과 법원 소송절차에 부과되는 부담을 포함한 사법체계이다. 빅토리아 주정부 장관, 법원, 부처, 규제기관 및 지방정부가 부과한 합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모든 의무사항들은 규제부담경감 계획의 범위에 포함된다.

범위에 포함되는 주정부 규제는 다음과 같다.[74]

ⅰ) 의회법의 직접 적용 조항

ⅱ) 하위 법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제영향보고서의 작성이 면제된 법원 규칙과 법규를 포함하여 동법에 의거한 모든 법규. 단, 다음사항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의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 측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VCEC의 기능이 규제로 인한 '규제 부담(regulatory burden)' 측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73) 재무재정부의 경제재정정책국 산하에 설립된 규제개선과(Better Regulation Unit)가 빅토리아 주정부의 규제부담경감 계획을 관리한다. 규제개선과는 여러 부처에 규제변경 측정에 관하여 안내하고, 규제변화측정매뉴얼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평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dtf.vic.gov.au/betterregulation(규제개선과 웹사이트) 참조.

74) DTF, *RCM Manual*, 2009, pp.5-6.

- 하위 입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제영향보고서의 준비가 제외된 법규
- 공공행정법이나 의회행정법의 효력 내에서 기본적으로 선언적 또는 기계적 특성을 갖는 법규, 또는 부처(또는 지정된 당국) 내 및 부처(또는 지정된 당국)간 행정이나 절차를 다루는 법규

ⅲ) 하위 입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제가 아닌 것으로 지정된 하위 문건

- 장관이나 기관의 법률적 권한에 의해 제정된 규칙, 명령, 제도 등
- 주정부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면허와 허가
- 법적 강제력에 의한 실행규약 또는 행동규약
- 정부와의 협약에 의한 실행규칙, 지침, 자체규정, 산업조약과 같은 공동규제(예 : 승인된 실행규약)
- 법적 강제력을 갖는 지침
- 법안에 의해 위임된 정부 구매조건
- 필수 규약 및 지침
- 주무장관의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한 규제부담에서 금액의 증감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규제의 성격을 갖는 문건(예 : 면허 조건). 단, 기본적으로 선언적 또는 기계적 특성을 갖는 하위 문건과 공공행정법이나 의회행정법의 효력내에서 부처(또는 지정된 당국)내 및 부처(또는 지정된 당국)간 행정이나 절차를 다루는 하위 문건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방정부의 규제는 지방정부법 제5편의 효력내의 지방 법률이고, 위에 명시된 것 외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규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75]

- 주 규제나 법원 규칙을 통해 특별히 규제되지 않고 관습법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사항(예 :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

75) *Id.* p.6.

- 법안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정부가 지정한 계약 조건
- 연방 규제

(2) 공공부문

규제변화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규제가 공공부문에 일정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 비영리 조직 및 자원봉사자, 공립학교나 병원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76], 그리고 고용을 위한 면허와 교육 요건과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이다. 따라서 지게차, 트럭, 이사 서비스 차량의 면허 또는 특수 고용인 면허와 같은 면허와 인가 절차는 범위에 포함된다. 낚시 면허나 가정내 애완동물 면허와 같은 국민의 여가활동에 관한 규제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3) 규제비용

다음으로 규제변화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규제비용'이다. 이는 표준비용모델이 측정 대상으로 삼았던 행정비용 외에도 실질준수비용(Substantial Compliance Cost) 및 지연비용(Delay Cost)을 포함하는 개념이다.[77] 규제부담경감 계획에 의해 경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규제를 준수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행정부담이므로, 정보제공의무로부터 비롯되는 행정비용 외에도 변화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규제비용에 포함되는 각각의 비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비용'은 관료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이 규제를

76)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에 의한 서비스에 비견되는 정부의 직접 서비스는 범위에 포함된다. 예컨대, 공립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훈련 서비스, 공립병원을 통해 제공되는 보건서비스, 또는 공공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77) DTF, *RCM Manual*, 2009, p.8.

준수하거나 정부가 규제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78] '실질 준수비용'은 규제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직접 비용으로서 새로운 장비 구입, 장비 유지보수 또는 특정 훈련 이수와 같은 자본 및 생산 비용을 말한다.[79] 규제를 통해 어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러한 비용은 실질준수비용에 해당한다. 만일 정부가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규제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조금은 실질준수비용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변화측정의 범위에는 지연비용도 포함된다. 지연비용은 규제로 인해 규제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할 때, '신청 지연' 또는 '승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과 수입 손실을 의미한다.[80] 신청 지연은 규제대상자가 면허, 등록, 인증 또는 허가의 신청과 같은 행정 신청 요건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이로 인해 기업이 의도한 대로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시간을 말한다. 승인 지연은 규제 당국이 고지, 합의 또는 면허와 같은 행정신청에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으로 이로 인해 규제대상자가 의도한 대로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시간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승인 지연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규제요구사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자가 신청서를 재작성하는 시간도 승인지연의 일부로 계상되어야 한다.[81]

---

78) *Id.* p.19.
79) *Id.*
80) *Id.* pp.21-22.
81)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Victorian Regulatory Change Measurement Manual Toolkit 1 : Guide to Mapping*, Melbourne, 2009, p.7.

< 규제부담경감의 범위내의 규제비용 (굵은 선 내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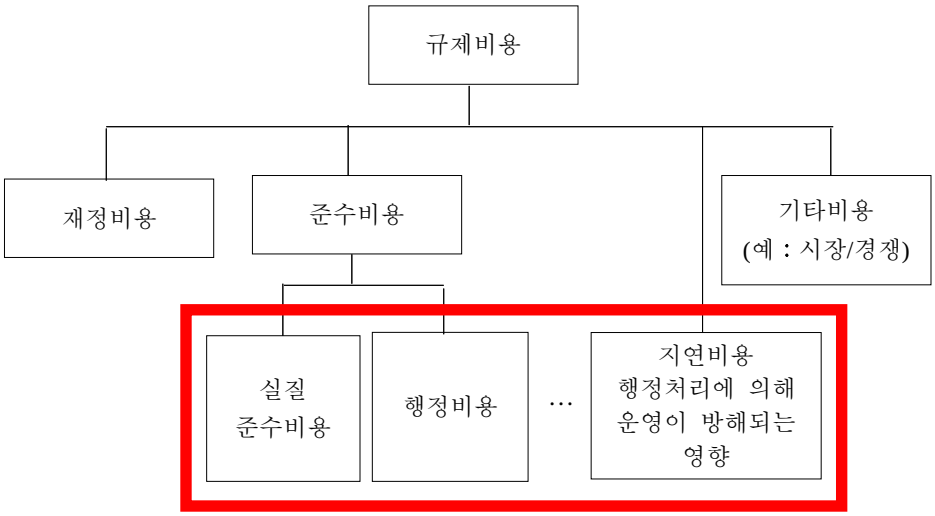

2. 측정의 방법 및 원칙

(1) 측정의 방법

규제변화측정의 기본 산식은 표준비용모델과 마찬가지로 가격(P)×수량(Q)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은 규제로 인한 준수 비용 및 지연 비용이므로 각 비용당 가격 및 수량 요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행정비용

행정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도 가격×수량 공식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가격은 내부 임금률(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의 임금)과 외부요율(행정활동을 외부에 위탁했을 경우의 비용) 및 행정활동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기타 비용[82]의 합으

82) 여기에서 기타 비용이란 특정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지불한 자본비용이 포함되고, 이것은 정책, 산업 전문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

로 구성된다.[83]

수량은 정보제공의무가 부과되는 규제대상 사업자의 수인 개체수에 연간 의무 이행 횟수인 빈도수를 곱한 금액에다 준수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표준비용모델에서 수량은 개체수(모집단)×빈도수의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하였으나,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기업 등의 완전 준수(Full compliance)를 가정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준수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제에 대한 기본 준수율은 100%여야 하지만, 지식의 부족이나 단속의 미흡 또는 기술적 변화가 규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영향을 받는 공공부문이 규제의 요구를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규제의 요구사항을 적게 준수한다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규제의 부담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준수율이 사용되어야 한다.[84]

행정비용
= 가격×수량
= (내부가격+외부요율+기타 주요비용)×(개체수×준수율×빈도수)

2) 실질준수비용

실질준수비용은 이전비용(Transition Cost)과 구조비용(Structural Cost)으로 나누어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전비용이란 새로운 규제 체계나 절차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일회성 조정비용 또는 투자비용을 말하고, 구조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지속적인 비용으로서, 예컨대 관련

문을 받아 결정된다. 만일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정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수년간 내구연한을 가질 것이므로, 전체 비용을 예상 내구연한으로 나눈 고정 연간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Victorian Regulatory Change Measurement Manual Toolkit 2：Assessing and Calculating the costs*, Melbourne, 2009, p.6.

83) *Id*.

84) *Id*. p.5.

자산의 연간 감가상각을 의미한다.[85] 여기에도 역시 가격×수량 공식이 적용된다.

가격요소에는 근로비용이나 자본비용 또는 이 두 비용의 총합이 포함된다. 근로비용은 행정비용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요율에 준수활동에 소비되는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자본비용은 물리적 자산의 일회성 구매비용 또는 투자비용으로 산정한다. 수량 요소도 행정비용에서와 같이 개체수×준수율×빈도수의 공식을 적용하면 된다.

실질준수비용
= 가격×수량
= (요율×시간)×(개체수×준수율×빈도수) 또는
= (물리적 자산의 일회성 가격×자산의 수)×(개체수×준수율×빈도수) 또는
= (연간 감가상각×자산의 수)×(개체수×준수율×빈도수)

3) 지연비용

지연비용은 규제에서 요구하는 신청의 지연 또는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규제대상 기업 등에 발생하는 지출과 수입 손실의 총합을 의미하므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비용 외에도 기회비용이 함께 산정되어야 한다. 기업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신청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자산을 임대할 수 있으므로 이 때 임대 수익은 지연 비용을 일정부분 상쇄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연비용
= 가격×수량
= (요율×시간)×(개체수) 또는
= {(발생비용+기회비용)×지연기간}×(개체수)

85) *Id.* p.7.

< 규제비용 범주에 대한 대표적인 가격 및 수량변수 >

비용범주	가격(P)		수량(Q)	
행정비용	근로요율 또는 외부요율	시간	개체수 준수율(사용률)	연간빈도
실질준수 비용	물리적 자산의 일회비용 연간 감가상각	물리적 자산의 수	개체수 준수율(사용률)	연간빈도
지연비용	이자비용	보유기간	수량	

(2) 측정의 원칙

규제로 인한 규제비용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86]

첫째, 노력의 비례성(Proportionality of efforts)으로서 분석의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규제비용의 변경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비용예측 절차의 값어치에 합당한 가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각기 다른 비용분석에서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업영향평가서, 규제영향보고서, 그리고 규제변화측정의 비용 분석, 특히 규제변화측정이 기업영향평가서와 규제영향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서로 비슷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가정사항의 투명성으로서 모든 관련된 가정 사항은 적절한 참고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규제변화측정 보고서를 읽는 독자가 비용이 예측된 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도식화 또는 비용 계산을 위한 다른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매뉴얼에 기술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식화나 비용 계산이 적합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적절한 문서에 근거한 가정 사항이나 근거가 있는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빅토리아 표준

86) DTF, *RCM Manual*, 2009, p.2.

비용모델(Victorian Standard Cost Model)이나 학계 연구소나 생산성위원회와 같은 조직에서 적용하는 규제비용 계산 방법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방법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방법론 적용의 적합성에 관해서는 재무재정부의 규제개선과(Better Regulation Unit)에 문의하여야 하며, 해당 방법론을 이용하여 예측치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규제개선과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동의를 함에 있어서, 규제개선과는 변경이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와 논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규제변화측정은 규제변화 정도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예측치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측정의 직접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측치의 범위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값을 선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측치의 중간값을 최적 예측치로 선택하여야 한다.

여섯째, 측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비용 예측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료에 불확실성의 정도에 관해서 확률로 표시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측치의 범위를 사용하는 것을 충분하다.

3. 측정의 절차

(1) 제1단계 : 사전 절차

1) 측정 수행 여부 판단

가. 규제 변경의 범위 확인

규제변화측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의 변경이 규제부담경감계획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측정의 대

상 및 범위에 속하는 규제인지,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상이 매뉴얼에 제시된 공공부문에 속하는지, 마지막으로 규제비용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변경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규제변화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측정에 이용가능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로소 측정이 수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변경의 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측정이 수행되지만,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상황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나. 규제 변경의 정도의 이해

규제 변경이 매뉴얼에 제시된 규제변화측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초기 예측치(initial estimate)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초기 예측치를 산정하는 것은 규제 변경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예측치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 규제가 정보나 준수의무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가?
- 보고주기나 준수의무에 중대한 증감이 있는가?
- 규제가 새로운 영역의 규제를 창출하는가?
- 규제가 많은 수의 기업이나 규제대상에 영향을 주는가?

다. 규제 변경의 중대성

다음으로는 규제부담의 변경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측정 자체가 많은 비용과 노력, 시간을 요구하므로 규제부담의 변경 정도가 일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규제변화측정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다음에 설명된 금액기준 내에 있는 규제변경에 대해서는 규제변화측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이 중대한 경우에만

규제변화측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 기업과 비영리 분야의 행정부담 변경에는 연간 25만 달러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규제부담경감 계획(예 : 실질준수 및 지연 포함)의 규제비용 총 합계에는 연간 50만 달러의 총액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규제개선과 또는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와의 협의

규제의 변경 정도가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해당 부처는 측정 계획 및 이후 단계에 관하여 규제개선과와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초기 측정치가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이라면 해당 부처는 규제개선과가 아닌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초기 측정치는 1천만 달러 미만이었으나 추후 1천만 달러는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면, 해당 부처는 위원회에 직접 연락하여야 한다. 규제 계획이 수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행되어 온 경우에는 계획이 완전히 시행된 후에 변경사항을 통합하여 규제변화측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제2단계 : 보고서 초안 작성

1) 도식화

도식화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하고 편성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비용을 산정할 때 규제변경의 기본요소와 추진요인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규제나 규제절차의 도식화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도식화는 표준비용모델에서의 도식화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내용을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 행정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제공의무 : 정보를 획득 또는 준비하고 공공당국에 제공하는 의무로서, 감사, 방문 또는 조사를 허락하거나 협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이 정보를 수집 또는 준비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의무도 포함된다.
- 자료요구 : 정보의무는 기업체가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일정 범위의 각기 다른 정보나 자료로 구성되는데 이것을 자료요구사항이라 한다.
- 행정활동 : 자료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의 상세한 것은 필요한 정보가 이 수준에서 수집될 수 있고 세분화 비용이 과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규제변화측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2) 규제비용에 대한 탁상 분석

규제변경의 도식화가 완료되면, 비용을 최하위 단위로 세분화하여 “위로(upward)” 합산한다. 예를 들어, 준수 행동이나 활동이 확인되었다면 이 활동의 비용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모두 계산되며, 비슷한 활동에 대해서 관련된 ‘의무’ 수준으로까지 위로 통합된다. 모든 규제의무의 합계는 규제변화의 총 비용으로 합산된다.

비용은 정상적 효율 기업(a normally efficient business)이 체감하는 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산정하기 위해 반드시 기업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변화측정 비용의 계산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P와 Q의 적절한 자료 출처는 툴킷 2에 있다. 일반적으로, 비용 계산은 기본식인 P × Q(가격 × 수량)를 근간으로 한다. 여기서 P는 특정 사업장이 규제의무를 준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고, Q는 영향을 받은 공공부문과 거래의 회수나 빈도를 의미한다.

3) 비용 및 가정 검증

사용된 자료와 가정 사항, 예측된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된 규제당국과 해당부처의 전문가에게 필수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예측치를 입증하기 위하여 영향 받는 부문의 자문을 받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연관된 비용의 특성과 수량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 할 때에는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초기 예측치나 추후 분석을 통해 규제변경이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경영에 대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4) 보고서 초안 작성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초안을 준비할 때, 각 부처들은 다음에 제시된 표준 양식을 따라야 한다. 관련된 가정, 계산 및 참고자료 등에 대해 아래의 확인서 양식에 기입하여 이를 규제개선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표준 양식 권고안 >

요 약

이 안은 규제변화의 간략한 요약과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규제변화측정이 변화의 직접적인 측정치를 도출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1. 규제변화

상세한 규제변화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상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규제나 규제절차의 이름이나 설명(그리고 법안, 규칙, 장관지시 등과 같은 유형)
- 규제의 주요 조항번호 또는 측정되는 관련 절차의 상세 사항
- 규제변화가 발생한 날짜
- 규제기간(기본 기간은 10년임)

2. 규제변화의 도식화

보고서의 이 부분에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의무에 대한 핵심 변경사항을 도식화한다. 다이어그램의 준비가 어렵다면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3. 자료수집 전략 및 자료 출처

다음의 정보가 일부 또는 전부 타당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타당한 참고문헌을 포함, 탁상분석과 자료수집 전략 또는 최소한 핵심 자료출처
- 예측된 비용이 어떻게 보통기업에 적용되는지 평가한 방식
- 정상영업 비용을 결정한 방식
- 영향받는 부문에 대한 적절한 자문, 수행한 인터뷰의 수(인터뷰 수행시), 그리고 자문을 받은 전문가의 범위를 포함하여 자료 입증에 사용한 방식. 인터뷰한 사람들이 자신에 관한 상세한 내용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시업이나 전문가의 신원에 대한 것은 필요하지 않다.

4. 결 과

핵심적인 정량적 결과를 다음에 제시된 표를 이용하여 확인서 형태로 제시한다.

< 표 1 > 규제변화측정 확인서

부문/비용 범주	기업	비영리	정부 서비스	개인의 경제활동	비용범주별 합계
행정비용	±$	±$	±$	±$	±$
실질준수비용	±$	±$	±$	±$	±$
지연비용	±$	±$	±$	±$	±$
부문별 합계	±$	±$	±$	±$	±$C

첨 부

보고서의 첨부에는 예측범위와 같은 주요 기본 표를 포함하여, 회계정산표와 계산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2는 자료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표의 예시이다. 관련된 가정 사항은 첨부에 명확하게 문서로 제시되어야 한다.

<표 2> 데이터 범위를 포함한 표 예시

부문/비용 범주	기업			비영리			정부서비스		
	낮음	중간	높음	낮음	중간	높음	낮음	중간	높음
행정비용	±$	±$	±$	±$	±$	±$	±$	±$	±$
실질준수비용	±$	±$	±$	±$	±$	±$	±$	±$	±$
지연비용	±$	±$	±$	±$	±$	±$	±$	±$	±$
부문별 합계	±$	±$	±$	±$	±$	±$	±$	±$	±$

5) 보고서 작성의 적절성 검토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초안이 완성되면, 해당부처는 다음 기준에 따라 보고서의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한다.[87]

첫째, 규제변화측정이 규제변화측정 매뉴얼에서 제시된 방법론 및 작성 양식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일 다른 방법론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규제개선과와 합의한 평가 기준을 준수했는지 검토한다.

둘째, 규제변화측정 보고서는 평이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셋째, 측정의 가정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하고, 자료의 출처 역시 인용되어야 한다.

넷째, 비용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예측치는 영향을 받는 공공부문에 의해 규제 변화의 실제 비용을 나타내는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87) DTF, *RCM Manual*, 2009, p.15.

(3) 제3단계 : 보고서 평가

규제변경 예측치가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초안을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에 제출하여 측정된 결과가 앞에서 제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받아야 한다. 반면에, 규제변경 예측치가 연간 1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초안을 규제개선과에 제출하여 그 적절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기업영향평가서나 규제영향보고서를 수행하는 도중에 규제변화측정 보고서가 준비되었다면 해당부처는 관련된 규제변화측정 보고서를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로부터 평가받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4) 제4단계 : 최종 보고서 제출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와 규제개선과는 해당부처로부터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초안을 받은지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부처가 규제변화측정 초기에 위원회나 규제개선과와 협의하면 평가절차가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평가가 완료되면,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는 관련 부처에 평가서를 송부한다. 이 때 빅토리아 주의 규제부담 변화와 규제부담경감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규제개선과에 사본 한 부를 보낸다. 규제개선과는 평가가 완료되면 해당 부처에 보고서의 적합성에 관하여 이메일로 통지한다.

규제변화측정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88]

88) DTF, *RCM Manual*, 2009, p.4. Figure 1 : Key steps of the process for a regulatory change measurement 참조.

< 규제변화측정 절차의 주요 단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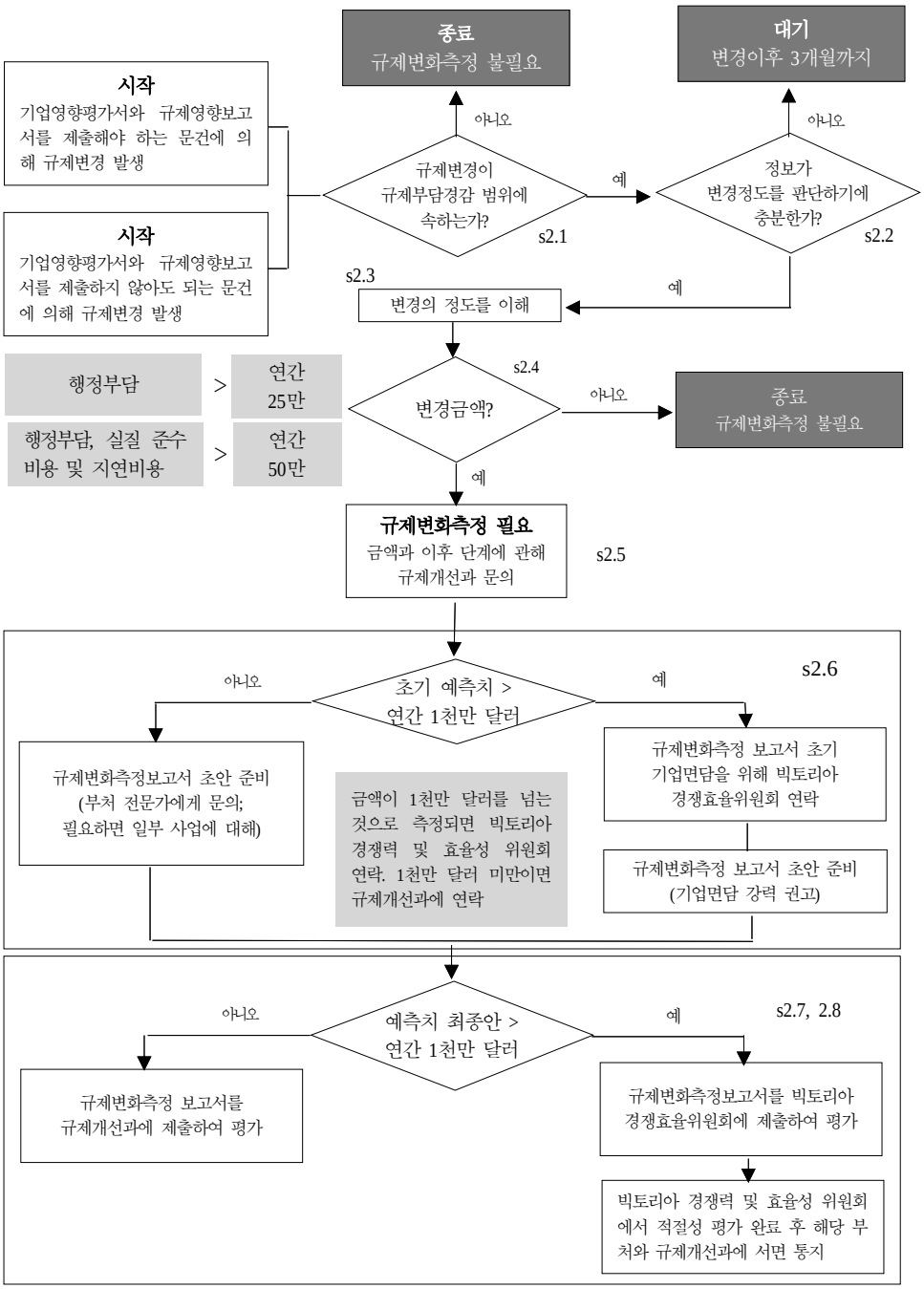

제 3 절 표준비용모델과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비교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빅토리아 주가 규제가 기업 등에 미치는 행정 부담을 측정함으로써 규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행정 부담을 측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빅토리아 주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규제 부담 경감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며, 부담의 측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이전에 빅토리아 주에서 규제의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되었던 표준비용모델도 규제 부담을 측정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규제 또는 입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표준비용모델이 측정한 것은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행정비용에 국한되므로 규제로 인해 기업 등이 체감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즉,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행정비용 외에도 실질적 준수비용 및 절차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전체를 측정하는 것이 규제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규제 부담을 측정하는 것 역시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규제로 인한 부담의 변경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측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표준비용모델의 이러한 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비용모델과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차이점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양자는 측정의 범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즉, 표준비용모델은 규제로 인한 행정비용만을 측정하는 반면에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규제를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인 행정비용과 실질준수비용

외에도 신청 또는 승인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비용까지 측정한다.

둘째,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표준비용모델과 달리 규제의 행정부담 측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표준비용모델보다 상세하게 매뉴얼을 작성함으로써 각 단계의 진행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측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변화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많은 수의 기업에게 적용이 된다거나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규제변경의 정도가 행정비용만 측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25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비용 외에도 실질준수비용, 지연비용까지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합 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표준비용모델은 기업 등의 규제에 대한 완전 준수를 가정하는 반면에,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완전 준수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실제 준수율을 비용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완전 준수란 표준비용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실현하기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량 요소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준수율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측정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기구를 이원화하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해 측정한 규제의 행정비용은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에 의해 그 타당성이 평가되지만,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규제변경 정도가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에, 1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총괄조정기구인 규제개선과에 의해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규제변경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만 위원회에게 평가를 맡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개선과에 직접 평가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를 경감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제 5 장 결 론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 1 절 우리나라 표준비용모델 운용 현황

정부는 2006년 하반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1년여 기간을 준비하였다.[89] 우선 정부는 2006년 11월에 행정부담 감소를 위해 정부·경제단체·연구기관 합동으로 TF 팀을 구성하였다. 2006년 10월에서 12월까지 기업들의 행정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기업 행정부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90], 2007년 4월에서 7월까지 한국행정연구원이 '행정부담 측정 매뉴얼'을 개발하였다.[91]

2007년의 표준비용모형 매뉴얼에 따르면, 표준비용모델 적용대상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개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에 입각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등록 규제'를 들고 있다.[92] 표준비용 측정의 기본 산식은 [행정비용=가격(시간당 인건비×

89) 정부는 그간 추진되었던 규제개혁도 규제준수에 따르는 시간, 비용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직접 비용을 측정·연계시키는 노력이 미흡하였으므로, 행정부담 감소정책의 도입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박영도, 「입법평가의 선진화를 위한 표준비용모델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139면.

90) 중소기업연구원, 「기업의 행정부담 기초조사」, 2006.

91) 한국행정연구원,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표준비용모형 매뉴얼」, 국무조정실 연구용역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2007.

92) 한국행정연구원, 앞의 글, 6면. 그러나, 이에 따르면 측정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바, 우리의 경우에는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대상으로서의 규제 내지 법령의 개념설정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법령상 규정된 정보제공의무'에 국한하여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 박영도, 앞의 글, 143면.

시간)×수량(모집단수×빈도수)] 공식으로서, 규제를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 행정활동으로 도식화하여 각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합을 통해 행정비용을 산정한다. 측정대상은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에 한정되며, 이들 기업은 '정상적 효율 기업'이어야 하고, 규제에 대한 완전 준수 가정이 적용된다.[93]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행정부담 측정 매뉴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대해 행정부담을 시범 측정하였다.[94] 그러나, 이후에는 동 매뉴얼을 활용하여 행정부담 측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

제 2 절 호주 표준비용모델의 특징 및 시사점

호주 정부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서 기존에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에 적용되었던 규제나 입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규제 지침서의 마련, 규제영향보고 제도의 도입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빅토리아 주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 및 입법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영 기업들이 일반 사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지 않도록 경쟁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경쟁력

93) 한국행정연구원,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표준비용모형 매뉴얼」, 국무조정실 연구용역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2007, 9-15면.

94) 국무조정실・중소기업연구원, 「기업의 행정부담비용 시범측정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7.
동 연구에서 법률별 부가가치 대비 행정부담 비율은 평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0.005%,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경우 약 0.0016%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등록된 규제 목록 중에서 정보의무와 관련 없는 것을 제외하고 측정 대상으로 삼은 결과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42개, 위험물안전관리법 20개의 정보의무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법률별 행정부담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약 675억 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약 139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및 효율성 위원회로서, 2004년 설립 이후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고, 기업영향평가 및 규제영향보고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고품질의 입법 및 정책의 수립에 기여해 왔다. 위원회가 각 부처가 작성한 규제영향보고서의 적절성을 평가함으로써 빅토리아 주는 규제에 대해 이중의 심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가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심사한다고 해서 부처의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자문기구로서 의견을 참고하도록 권고하고, 후속 조치는 다시 부처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빅토리아 주의 규제 개혁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행정부담의 측정을 위한 표준비용모델을 수정한 방법론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표준비용모델은 유럽 등지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방법론으로서 널리 채택되고 있으나, 표준비용모델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규제 관련 비용 중의 일부분인 행정비용에 한정되기 때문에 일응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규제로 인한 부담의 변화를 측정하여 규제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측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측치를 활용해서 보다 구체적인 비용 측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빅토리아 주는 규제변화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표준비용모델을 대체하였다. 이는 측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로 인한 부담의 변경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측정하도록 하여 비효율적인 측정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규제의 실제 준수율을 비용 측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종래 표준비용모델에 제기되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빅토리아 주의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부담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으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는 국가에게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호주 빅토리아 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 및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규제의 행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규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호주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와 같이 기존의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여 운용하는 경우, 해당 부처가 규제의 행정부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이러한 측정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여 측정의 정확성과 질의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는 규제영향보고서 및 기업영향평가서의 타당성 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규제변경에 대해서 측정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할 책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 심사 기능을 담당하면서 위원회는 빅토리아 주에서의 규제 개혁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측정 결과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국가들마다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의 감축을 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두고 있으므로[95] 우리나라

95) OECD 회원국들의 경우,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부 조직은 크게 네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 단일목적조직(single purpose entities)으로서 특정 부문이나 집단의 행정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과제 또는 중소기업 등 대상 분야를 특화한 추진기구이다. 미국의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호주 산업관광자원부 소속 소기업지원실(Office of Small Business)가 이에 속한다. 둘째, 행정간소화기관(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agencies)은 기업, 시민 및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행정 간소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이다. 벨기에의 행정간소화청(Agency for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네덜란드의 재무부 산하 IPAL이 이에 속한다. 셋째, 규제개혁기관(Regulatory Reform Agencies)은 광범위한 규제의 질적 관리 담당부서 또는 기관들의 행정간소화 정책 증진의 통합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규제영향평가 등을 관장하는 규제개혁 추진기관이다. 예컨대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산하의 규제개혁실(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영국의 규제개선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 미국 예산관리국 산하 규제개혁실(Office of Information & Regulatory Affairs)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외부위원회(External Committees)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비정부조직, 학계 및 기업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료적 형식주의 감소과제를 위임받아 2003년 OECD의 행정간소화 보고서 발간 후 여러 국가에서 영구 또는 임시위원회를 설치(영국 규제개선위원회(Better Regulation Commission), 네덜란드의 행

에 어떤 형태의 조직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부처로부터 독립하여 행정부담 측정을 평가해줄 수 있는 독자적 자문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부담 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7년에 작성된 표준비용모형 매뉴얼에 따르면, 행정부담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상 등록된 규제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밖에 다른 측정 수행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행정부담의 측정 자체가 측정 비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측정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빅토리아 주의 규제변화측정 방법론과 같이 규제가 있기 전후의 부담 변화를 사전 측정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변화에 대해서만 측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는 경우에 네덜란드,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채택한 '완전 준수' 가정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규제 대상인 기업 등이 해당 규제를 100% 준수할 것을 가정하고 규제의 행정비용을 측정하나, 실제로 완전 준수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준수 또는 순응의 현실을 반영하여 부담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행정부담 측정이 단순히 측정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부담의 감축을 통해 규제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빅토리아 주의 표준비용모델이나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을 살펴보면, 측정 과정에서도 기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해당 부처 전문가 또는 자문

정부담자문위원회(ACTAL), 프랑스의 행정간소화추진위원회(Conseil d'orientation de la simplification administrative), 캐나다의 행정부담감축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Paperwork Burden Reduction))하고 있다. - 안혁근・임동진,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 사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 네덜란드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1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118-119면. 각주 20번 참조.

기구로부터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고, 측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 해당 부처의 검토와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 또는 규제심사과의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의 행정부담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자문과 독립적 자문기구의 평가 등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국무조정실,「기업의 행정부담 측정 매뉴얼」, 2008.

국무조정실,「선진국의 행정부담 감축사례 연구」, 2007.

길홍근,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 및 감축방안 - 체계적인 행정부담 감축을 위하여, 2007.

김봉철,「영국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김 신,「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5.

김 신, “행정부담의 측정모형 및 적용 : 표준비용모형을 중심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제12권 제2호, 한국거버넌스학회, 2005.

김정해 · 임준형 · 박형준,「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김정해 · 이종한 외,「규제 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8.

박영도,「입법평가의 선진화를 위한 표준비용모델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_____,「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안혁근,「기업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행정간소화 전략」, 한국행정연구원, 2007.

안혁근 · 임동진,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사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 네덜란드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정책과학학회보」제13권 제1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이병기,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09-02, 2009.

이종한, 「표준비용모델 측정사례」, 한국법제연구원, 2009.

이종한 · 최종일 · 조주현, 「행정부담의 측정 및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6.

이준호, "영국의 규제개혁 동향-규제개혁 보고서를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09.

이진국,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전 훈,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중소기업연구원, 「기업의 행정부담 기초조사」, 중소기업연구원, 2006.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 2010년 입법평가연구센터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0.

한국행정연구원,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표준비용모형 매뉴얼」, 국무조정실 연구용역보고서, 2007.

< 국외 문헌 >

Better Regulation Executive (UK), Measuring Administrative Costs : UK Standard Cost Model Manual, Cabinet Office, London, April, 2005.

Better Regulation Executive, Measuring admin burdens, UK outcomes and next steps, 2007.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Impact Assessment Toolkit : A guide to undertaking an Impact Assessment and completing the IA Template, United Kingdom, April, 2010.

Better Regulation Executive, Better Regulation, Better Benefits : Getting the Balance Right, Main report,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London, October, 2009.

Better Regulation Office, Risk-based compliance, Sydney, September, 2008.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Avoiding regulatory creep, London, 2004.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Heads of Treasuries Competitive Neutrality Matrix Report, Canberra, January, 2008.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2008-09 Annual Report, 2009.

Department of Plann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2008 National Competition Policy and Local Government Statement : A Revised Statement of Victorian Government policy, Local Government Victoria, Melbourne, December, 2008.

Department of Premier and Cabinet, Subordinate Legislation Amendment Bill Discussion Paper, Melbourne, 2009.

_____, 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 Public consultation on amendments to the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2010. http://www.dpc.vic.gov.au/CA256D8000265E1A/page/Listing-Home+Page+News-Reducing+the+Regulatory+Burden%3a+Public+consultation+on+amendments+to+the+Subordinate+Legislation+Act+1994!OpenDocument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Estimate of Victoria's Administrative Burden : A DTF internal working paper, Melbourne, August, 2007. http://www.dtf.vic.gov.au/CA25713E0002EF43/pages/reducing-the-regulatory-burden-publications-and-media-releases

_____, Victorian Regulatory Change Measurement Manual, Melbourne, December, 2009.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Brussels, January, 2009.

_____, Victorian Government Response to VCEC's Final Report, Regulation and Regional Victoria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Melbourne, December, 2005.

_____, Victorian Government Response to VCEC's Final Report, Housing Regulation in Victoria : Building Better Outcomes, Melbourne, April, 2006.

Hampton, P.,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 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 HM Treasury, London, March, 2009.

International SCM Network, The Standard Cost Model : A framework for defining and quantifying administrative burdens for businesses, The Hague, August, 2004. http://www.compliancecosts.com/default.asp?CMS_TCP=tcpAsset&id=944E9502C666446EA6E3ACF69E5CD965

KPMG, Administrative Burdens : HMRC Measurement Project, March, 2006. http://www.hmrc.gov.uk/better-regulation/kpmg.htm

Lenders J., 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 2008-09 Progress Report, Melbourne, September, 2009.

Ministry of Finance (the Netherlands), The administrative burden declaration : A common approach open to everyone, July, 2004. http://www.administratievelasten.nl/default.asp?CMS_TCP=tcpAsset&id=5B09EDCA525141E2866D881AB2C43157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usiness' Views on Red Tape :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Burdens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ECD publishing, Paris, October, 2001.

_____, A Review of the Standard Cost Model, 2005.

_____, Administrative Burden Reduction Policies in OECD Countries : Preliminary Survey Results, 2005.

_____, The OECD Red Tape Scoreboard : Measuring and Comparing Administrative Burden across OECD Countries, 2005.

_____, Red Tape Scoreboard Annex on Academic Reports, 2007.

_____, Australia : towards a seamless national economy, Paris, February, 2010.

_____, Multi-level regulatory capacity in Australia, OECD publishing, Paris, 2010.

PricewaterhouseCoopers, Analysis of Administrative Burden of Victorian State Regulation : Review of the 2006 United Kingdom Measurement of Administrative Burden as Benchmark Data, 2007.

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 (Draft) Guidance Note : Suggested default methodology and values for staff time in BIA/RIS analysis, October, 2006.

부 록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2010년 1월 1일 발효

약어 및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와 규제개선과의 역할

약 어

BAU Business-as-Usual (정상영업)

BIA Business Impact Assessment (기업영향평가서)

BRU Better Regulation Unit (of DTF) (규제개선과)

DTF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재무재정부)

NFP Not-for-Profit (비영리)

RCM Regulatory Change Measurement (규제변화측정)

RIS Regulatory Impacts Statement (규제영향보고서)

RRB 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initiative) (규제부담경감)

SCM Standard Cost Model (표준비용모델)

VCEC 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

VGR Victorian Guide to Regulation (빅토리아 규제지침서)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와 규제개선과의 역할과 연락처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는 국영기업(주의 기관-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령(State Owned Enterprises Order 2004)에 의거하여 2004년 7월 1일 빅토리아 주정부가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의 두 가지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i. 정부에서 발의하는 지침에 관련된 기업영향평가서와 규제영향보고서의 질을 검토하고, 법안 주무장관에게 기업영향평가서와 규제 영향보고서에 관련하여 조언한다.

ii. 장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에 따라, 수상의 허락을 받아 규제의 행정부담 측정 타당성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조언을 한다.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 연락처 웹사이트 : www.vcec.vic.gov.au/ 이 메 일 : RegulationReview@vcec.vic.gov.au 전 화 : (03) 9092 5800 팩 스 : (03) 9092 5845
규제개선과는 재무재정부의 경제재정정책국(Economic and Financial Policy Division) 산하에 있으며, 빅토리아 주정부의 규제부담경감 계획을 관리한다. 규제개선과는 여러 부처에 규제변경 측정에 관하여 안내한다. 또한 본 매뉴얼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평가한다.
규제개선과 연락처 웹사이트 : www.dtf.vic.gov.au/betterregulation 이 메 일 : betterregulationunit@dtf.vic.gov.au 전 화 : (03) 9651 1720 팩 스 : (03) 9651 2592

1. 개 요

빅토리아 주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가 필수적이다. 규제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고 공동체에 상당한 순편익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 빅토리아 주정부의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빅토리아 주는 규제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을 더 줄이고 그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주정부의 규제부담경감 계획에는 2012년 7월 1일까지 연간 5억 달러에 달하는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1] 목표에는 기업, 비영리 부문, 정부 서비스의 운영에 부과되는 규제[2]의 행정, 실질준수 및 지연비용과 개인이 초래하는 비용의 경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목표에 접근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규제절차의 변경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규제변경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매뉴얼은 빅토리아 규제지침과 함께 읽어야 한다. 이 매뉴얼은 또한 빅토리아

1) 재무부의 규제부담경감 계획에 관한 2008-09년도 진척보고서는 5억 달러가 목표라고 공언하였다. 이 보고서는 www.dtf.vic.gov.au/betterregul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2) "규제"라는 용어는 이 매뉴얼에서 법안과 단속할 수 있는 모든 의무사항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2.1.1절 참고)

주의 각 부처와 공공 기관[3]에게 규제부담 변경의 측정(규제변화측정)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 매뉴얼에 소개된 절차를 사용한 각각의 규제 변경에 대해서 적절한 CM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 매뉴얼은 빅토리아 규제지침의 4.4절과 부록 F를 대체한다. 이 매뉴얼을 보조하는 두 개의 툴킷으로 T1과 T2가 있다. T1은 규제가 어떻게 도식화되는지를 설명하고 T2는 관련된 규제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한다. 이 매뉴얼과 툴킷은 재무재정부의 웹사이트 http://www.dtf.vic.gov.au/betterregulation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 규제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단계는 2장에 설명되어 있음

규제부담경감 계획과 이 매뉴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1 범 위

규제부담경감의 범위에 포함되는 규제, 공공 부문 및 규제비용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규제의 유형

- 주 규제
- 지방정부 법률
- 법원 규칙과 법원 소송절차에 부과되는 부담을 포함한 사법체계

공공 부문

- 기업
- 비영리 조직 및 자원봉사자

3) 공공기관은 공공행정법 (Public Administration Act 2004) 제5조에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법원은 규제변경관리의 준비가 면제되지만, 규제부담경감 계획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방정부 규제와 법원 규칙의 변경은 주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 통합되어 평가될 필요가 있다.

- 공립학교와 병원과 같은 정부 서비스
- 고용을 위한 면허와 교육 요구사항과 같이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의 의무가 발생되는 개인

규제비용의 유형

- 행정비용
- 실질준수비용
- 지연비용

범위는 2.1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1.2 원 칙

측정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 노력의 비례 : (도식화 정도와 같은) 분석의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규제비용의 변경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비용예측절차의 값어치에 합당한 가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각기 다른 비용분석에서의 일관성 : 기업영향평가서, 규제영향보고서, 그리고 규제변화측정의 비용 분석은, 특히 규제변화측정이 기업영향평가서와 규제영향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서로 비슷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 가정사항의 투명성 : 모든 관련된 가정사항은 적절한 참고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규제변화측정 보고서를 읽는 (2.6.4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독자가 비용이 예측된 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도식화 또는 비용 계산을 위한 대안 : 이 매뉴얼에 기술된 방법론을 이용한 도식화나 비용 계산이 적합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적절한 문서에 근거한 가정 사항이나 근거가 있는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빅토리아 표준비용모델(Victorian

Standard Cost Model)이나 학계 연구원이나 생산성위원회와 같은 조직에서 적용하는 규제비용 계산 방법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방법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방법론 적용의 적합성에 관해서는 재무재정부의 규제개선과에 문의하여야 하며, 해당 방법론을 이용하여 예측치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규제개선과로부터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동의를 함에 있어서, 규제개선과는 변경이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와 상의하게 되어 있다.[4)]

- 예측치의 지시적 특성 : 규제변화측정은 규제 변경 정도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예측치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5)] 지시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측치의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값을 선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측치의 중간값을 최적 예측치로 선택하여야 한다.[6)]
- 불확실성의 처리 : 비용 예측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가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정도는 자료에 위험과 확률로 표시되어야 한다. 보통은 예측치의 범위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3 절 차

이 매뉴얼에 기술된 방법론을 구성하는 핵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도식화 : 도식화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하고 편성함으로써 비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비용 예측시 규제변경의

4)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다면, 이 매뉴얼에서의 규제변경관리 정도는 규제부담경감의 범위 내에서 모든 규제비용의 합의 변경정도를 의미한다.
5) 통계적 측면에서 반드시 유효하거나 신뢰할 만할 필요는 없다.
6) 어떤 사례에서는 중간값이 최적의 예측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다른 방식은 적절한 근거가 있으면 사용될 수 있다.

기본요소와 추진요인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규제나 규제 절차의 도식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의무수준에 따른 도식화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의무 수준’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의 2.6.1절과 툴킷 1을 참고)

- 기준 : 규제부담에 있어서 적은 변화가 발생한 경우 규제변화측정을 수행할 필요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중요성 기준 이하에 속하는 규제 변경에 대해서는 규제변화측정이 요구되지 않는다.(자세한 내용은 본 매뉴얼의 2.4절 참고)
  - 사업과 비영리 분야의 행정부담 변경에는 연간 25만 달러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규제부담경감 계획(예 : 실질준수 및 지연 포함)의 규제비용 총합계에는 연간 50만 달러의 결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기업영향평가서 및 규제영향보고서와의 분리 : 어떤 경우에는 기업영향평가서와 규제영향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변화측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별도의 규제변화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변화측정 보고서(본 매뉴얼 2.6.4절 참고)를 기업영향평가서와 규제영향보고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 경영자문 : 규제변화측정 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 의무적으로 경영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측정치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규제변화측정을 수행하는 동안 적정 수준의 기업면담을 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연간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규모의 규제변화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평가 : 규제변화의 정도가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가 규제변화측정 보고서를 평가한다. 연간 1천만 달러 미만의 규제변화에 관련된 규제변화측정 보고서는 규제개선과에서 평가한다.

2. 단계별 규제변화측정 지침

규제변화측정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에는 본 매뉴얼에서 설명하는 각 단계들도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s.2.3(제목 : 변경의 정도 이해)은 본 매뉴얼의 2.3절을 나타낸다.

그림 1 : 규제변화측정 절차의 주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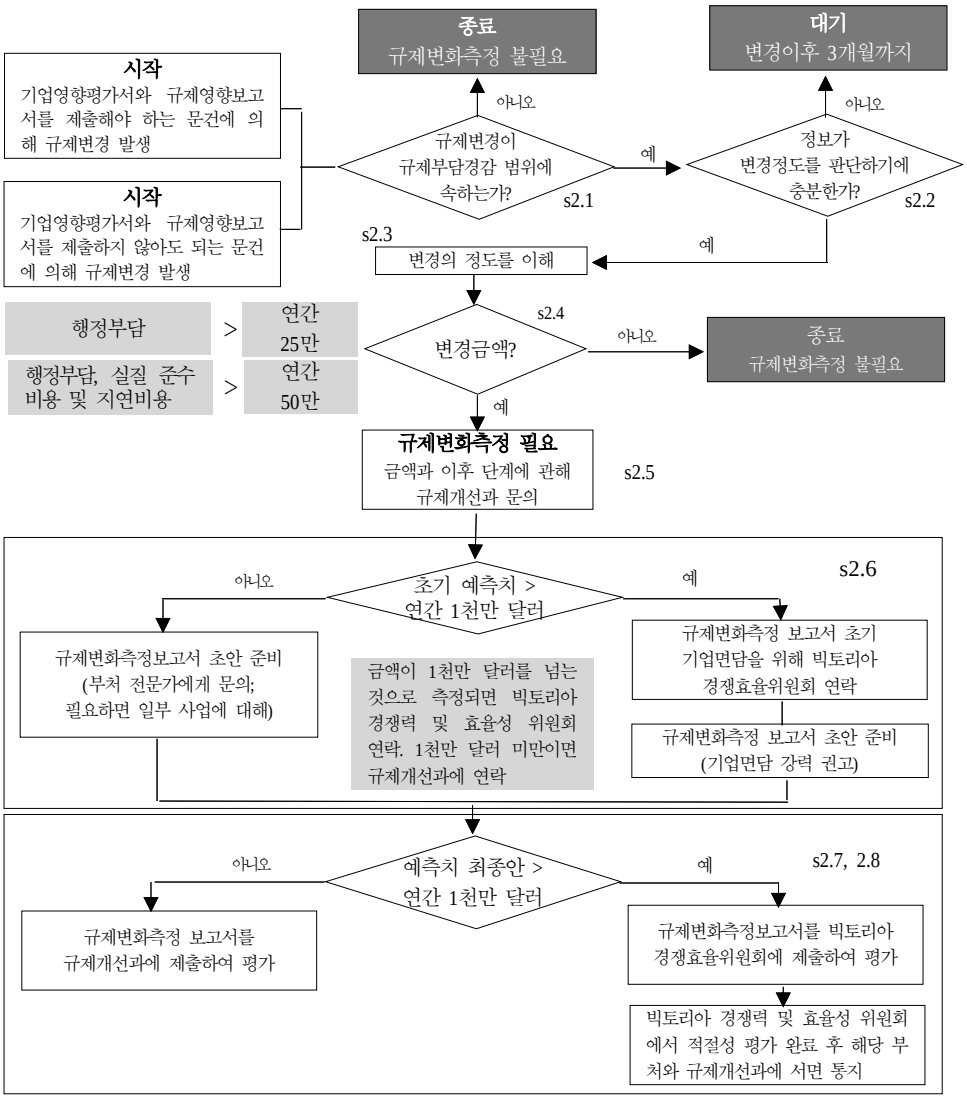

2.1 규제변화가 범위에 속하는가

각 규제변화에 대해서, 그 규제변화가 규제부담경감 계획의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ⅰ. 관련된 규제문건
ⅱ. 영향을 받는 공공분야
ⅲ. 발생된 규제비용의 유형

2.1.1 어떠한 규제문건이 포함되는가

빅토리아 주정부 장관, 법원, 부처, 규제기관 및 지방정부가 부과한 합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모든 의무사항들은 규제부담경감 계획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범위에 포함되는 주정부 규제 :

1. 의회 법률의 직접 적용 조항(예 : 모든 법안)
2. 하위 법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제영향보고서의 작성이 면제된 법원 규칙과 법규를 포함하여 동법에 의거한 모든 법규. 단, 다음사항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하위 법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제영향보고서의 준비가 제외된[7] 법규
   - 공공행정법이나 의회행정법의 효력 내에서 기본적으로 선언적 또는 기술적 특성을 갖는 법규, 또는 부처(또는 지정된 당국) 내 및 부처(또는 지정된 당국)간 행정이나 절차를 다루는 법규
3. 하위 법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규가 아닌 것으로 지정된 하위 문건

7) 제외와 면제의 차이는 하위 법안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를 참고

- 장관이나 기관의 법률적 권한에 의해 제정된 규칙, 명령, 제도 등
- 주정부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면허와 허가
- 법적 강제력에 의한 실행규약 또는 행동규약[8]*
- 정부와의 협약에 의한 실행규칙, 지침, 자체규정, 산업조약과 같은 공동규제(예 : 승인된 실행규약)[8] *
- 법적 강제력을 갖는 지침
- 법안에 의해 위임된 정부 구매조건
- 필수 규약 및 지침
-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주정부 규제
- 주무장관의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한 규제부담에서 금액의 증감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규제의 성격을 갖는 문건(예 : 면허 조건). 단, 다음의 문서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기본적으로 선언적 또는 기술적 특성을 갖는 하위 문서
  - 공공행정법이나 의회행정법의 효력내에서 부처(또는 지정된 당국)내 및 부처(또는 지정된 당국)간 행정이나 절차를 다루는 하위 문서

범위에 포함되는 지방정부 규제 :

1. 1989년 지방정부법 제5편의 효력내의 지방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규제 :

위에 확인된 것 외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규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8) * 자발적 실행규약은 자체적인 규제임. 따라서 범위를 벗어남. 정부의 승인을 받는 공동규제 실행규약은 범위에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요구사항은 정상영업 비용일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부록A.1 참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제정되어 법적 강제력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행규약만이 범위에 포함된다.

- 주 규제나 법원 규칙을 통해 특별히 규제되지 않고 관습법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사항(예 :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
- 법안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정부가 지정한 계약조건
- 연방 규제

규제가 범위에 포함되는지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아래 상자 1에 소개되어 있다.

상자 1 : 규제 범위에 관한 고려사항

A) 불확실한 의무
어떠한 예측불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의무를 불확실한 의무라 한다. 예를 들어, 과수를 재배하는 사람은 희귀한 해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일을 해야만 할 수 있다. 어떤 의무가 10년 동안 거의 부과되지 않고 동시에 평균 부과금이 금액기준보다 적다면 (금액산정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의 2.4절을 참고) 이러한 의무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B) 다양한 영향을 가진 규제
상황마다 상당히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있는 경우, 10년간 이 규제에 의해 부과되는 평균 부담이 중대하다면 이 규제는 범위에 포함된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매년 각기 다른 프로젝트마다 의무가 상당히 달라지는 예이다.

C) 조정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변경
두 개 이상의 관할당국에서 규제체계 또는 요구사항을 조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규제가 조정되었다고 말한다. 조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다.

- 주 권력의 위임
- (동일한) 주 규제의 반영
-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관할당국간 합의
-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이나 체계에 대한 관할당국간 합의
- 타 관할당국에서 빅토리아 규제방식을 채용

조정은 여러 관할당국에 걸쳐 규제되는 사업장(예 :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사용된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조정은 빅토리아에 소재하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나 여러 관할당국에 걸친 상이한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정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 여러 관할당국에 걸쳐 운영되는 조직이 빅토리아의 규제를 받음으로 인한 영향
- 빅토리아에서만 운영되는 조직에 대한 영향(일정한 경우에 이러한 조직은 변경된 요구사항을 통해 비용 증가를 겪기도 한다.)

표1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 변화의 중대성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 때 다른 유형의 조정 때문에 규제변화측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표 1 : 규제부담에 있어서의 중대한 변화의 측정

조정 유형	이행시 규제변화측정 필요한가?	차후 변경에 대한 규제변화측정이 필요한가?
빅토리아주가 그 권력을 연방에 위임	예	불필요
빅토리아주가 규제를 반영(예 : 동일규제)	예	예
빅토리아주가 여러 관할당국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를 도입	예	예
빅토리아주가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이나 체계에 대하여 관할당국간 합의를 근거로 규제를 도입	예 규제부담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없을 수도 있음	예
빅토리아의 규제방식을 다른 관할기관이 채용	아니오 빅토리아주가 규제나 규제의 시행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아니오

조정에 따른 규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규제변화측정은 빅토리아주 규제로 인한 변화와 다른 주에 의한 변화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연방, 타 주 또는 자치령[9] 관할당국이 규제영향보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규제부담경감 계획의 범위안에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변화측정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영향보고서의 자료가 규제변화측정 보고서에 사용되기도 한다.

조정된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제부담의 변경은 간단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확한 결정방법이 있지 않은 이상, 빅토리아주와 뉴사우

9) 역자 주 : 국가의 수도가 있는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를 의미

스웨일즈주간의 조정에 관해서 이 두 관할당국에 걸쳐 운영되는 기업이 절약한 비용의 절반은 빅토리아주의 변경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의한 것이다.

2.1.2 누가 영향을 받는가(예 : 공공 부문)

규제부담경감 계획은 예외로 명시된 곳을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된 모든 공공 부문에 부과된 규제부담의 변화 측정을 요구한다.

1. 사업(본 매뉴얼의 부록 A.4절에 정의됨)은 범위에 포함된다.
2. 비영리 조직(본 매뉴얼의 부록 A.4절에 정의됨)은 범위에 포함된다.
3. (수입을 발생시키는) 개인의 경제 활동 : 고용과 같은 경제적 결과를 달성하도록 돕는 개인의 활동을 (수입을 발생시키는) 개인의 경제 활동이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지게차, 트럭, 이사차 면허 또는 특수 고용인 면허와 같은) 면허와 인가 절차는 범위에 포함된다. (낚시 면허나 가정내 애완동물 면허와 같은) 국민의 여가활동에 관한 규제 영향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4. 정부 서비스 (정부의 하위부문).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에 의한 서비스에 비견되는 정부의 직접 서비스는 범위에 포함된다.

   예 :

   - 공립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훈련 서비스
   - 공립병원을 통해 제공되는 보건 서비스
   - 앰뷸런스 서비스
   - 공공 노인 돌봄 서비스
   - 공공 및 공동체 주거

2.1.3 어떠한 유형의 규제비용이 범위에 포함되는가

모든 준수비용(행정 및 실질준수비용 포함)과 지연비용은 규제부담경감 계획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들 비용에 대한 간략한 정의는 다음

과 같다. 자세한 정의와 예는 본 매뉴얼의 부록 A.2에 기술되어 있다.

- 실질준수비용은 규제효과를 내게 하는 직접비용이다.
- 행정비용은 종종 관료주의(red tape)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에 의해 발생하며 기업이 규제를 준수하거나 정부가 규제를 관리하는 비용이다.
- 지연비용은 (a) 신청지연 또는 (b) 승인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제 대상자의 지출과 수입손실이다.
  - 신청지연은 규제대상자가 (면허, 등록, 인증 또는 허가의 신청과 같은) 행정 신청 요건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이로 인해 기업이 의도한 대로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시간을 가리킨다.
  - 승인지연은 규제당국이 (고지, 합의 또는 면허와 같은) 행정신청에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으로 이로 인해 규제대상자가 의도한 대로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시간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규제대상자가 신청서에 관한 재작업을 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그림 2의 굵은 상자는 규제 범위내의 규제비용을 가리킨다.

그림 2 : 규제부담경감의 범위내의 규제비용 (굵은 선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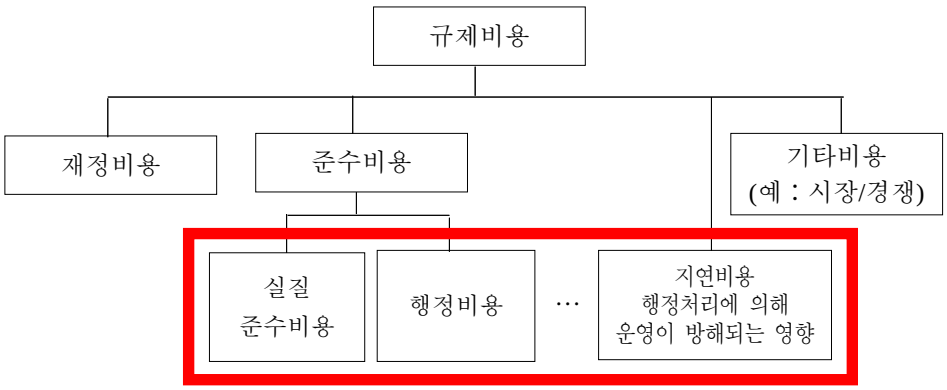

2.2 정보가 변화를 측정하기에 충분한가

규제변화측정 보고서는 변경의 정도를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 때, 즉 규제의 개발이나 시행 또는 규제절차의 변경 시점에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수집되기 이전에 규제변화가 완료될 필요는 없다. 정보는 규제의 영향을 받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것 같은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를 둘 수 있다. 규제변화측정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규제 변화가 일어난 지 3개월 이내에 작성·제출되어 평가받아야 한다.

이 기간에 변경의 정도나 규제변화측정의 수행을 측정하는데 필수적인[10] 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면, 규제변화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대안 일정을 규제개선과와 협의할 수 있다.

2.3 변화 정도의 이해

일단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면, 다음 단계는 영향을 받는 공공 부문에 대한 규제변화의 영향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다.[11] 본 매뉴얼에 설명된 측정 방식을 전반적으로 적용하면 적정한 초기 예측치(initial estimate)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상세히 측정할 필요는 없다. 예측치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 규제변화의 핵심 추진요인이 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규제가 정보나 준수의무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가? (예 : 면허를 얻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삭제)
- 보고주기나 준수의무에 중대한 증감이 있는가? (예 : 등록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변경)

---

10) 이러한 정보가 없을 경우 예측을 할 수 없다.

11) “공공부문(sector of the public)” 이란 표현은 하위 법안 법률 제6조와 제9조를 가리킨다.

- 규제가 새로운 영역의 규제를 창출하는가? (예 : 환경보고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요구사항)
- 규제가 많은 수의 기업이나 규제대상에 영향을 주는가? (영향을 받는 대상이 많을수록 변경이 중요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

초기 예측치의 주요 목적은 변경이 중대한 것인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2.4절 참고). 변화가 중대성 시험값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2.4절 참고) 초기 예측치에 대한 더 이상의 분석이 필요 없다. 하지만, 초기 예측치가 연간 2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 사이라면, 변화의 정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초기 예측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2.4 변경이 중대한가?

언뜻 보기에 규제부담의 변경이 중대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규제변화측정이 필요하다. 규제변화가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영향받는 분야에서 겪게되는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의 변경액이 연간 25만 달러 이상이거나
- 영향받는 분야에서 겪게되는 규제부담경감의 범위에 포함되는 규제부담의 합계(sum of regulatory burden)의 변경액이 연간 50만 달러 이상이다.

초기 예측치(2.3절 참고)를 중요성 평가에 사용해야 한다.

2.5 규제개선과에의 연락

규제변경이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해당부처는 초기 논의와 이후 단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제개선과에 연락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사항도 적용된다.

- 기업영향평가서나 규제영향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이라도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이 때 규제변화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 초기 측정치가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이라면, 해당 부처는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에 최대한 신속히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 초기 측정치는 1천만 달러 미만이었지만 추후 1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면, 해당부처는 이를 알게 되었을 때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에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초기 측정치가 1천만 달러 이상이었지만 추후 1천만 달러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면, 해당부처는 규제개선과에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동안,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와 규제개선과는 이관 절차를 협의할 것이다.
- 규제계획이 수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행되어 온 경우, 이 계획이 완전히 실행된 뒤에 변경사항을 통합하여 한 번의 규제변화측정을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규제변화측정 비용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시행단계 간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다면 규제변화측정이 각각 수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2.6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초안 준비,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에 연락

규제개선과와 해당부처가 규제변화측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게 되면, 다음에 기술된 단계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2.6.1절부터 2.6.4절까지 참고).

☞ 팁 : 규제변화측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에 설명된 준비 단계를 갖는 것이 좋다.
- 규제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고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부처내 전문가의 목록을 준비한다.

-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규제대상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주요 의무를 식별한다.
- 측정을 위한 잠재적 자료와 통계 출처, 그리고 관련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예견되는 애로사항을 식별한다. 특히, 불확실성과 미지수는 조기에 식별되어야 하며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나 규제개선과와 합의하여야 한다.
- (a) 도식화를 위해 필요한 상세 수준, (b) 기업면담, 그리고 (c) 최종결과의 평가를 포함한 적정수준의 분석 및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규제개선과와 상의한다.

2.6.1 규제 또는 규제절차의 변경 도식화

규제변화측정에서, 관련된 규제의무를 식별하고 비용의 구성요소와 추진요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규제의 변화[12]를 도식화하여야 한다. 도식화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ⅰ. 당사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구속하는 의무의 식별
ⅱ. 부과된 규제비용의 유형 식별

새로운 규제가 부과되었다면, 업계에서는 요구사항의 일부를 실무차원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상영업(Business-as-Usual)[13]에 비해 증가된 부분만 도식화시키도록 한다.

도식화는 (1) 의무, (2) 요구사항, (3) 행동(또는 활동)의 3개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다. 상자 2는 이들 세 가지 수준의 정의를 행정 요구사항과 연계시켜 설명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규제변화측정에는 의무 수준(또는 보다 높은 수준)까지의 도식화만으로도 충분하다.

- 필요한 정보가 해당 수준에서만 수집된다.
- 이와 같이 정보를 세분화하는 비용이 과도하지 않다.

12) 규제의 변경에는 관련된 규제문건의 본문 변경과 관련된 규제절차의 변경이 모두 포함된다.
13) 정상영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A.1을 참고하기 바란다.

규제변화측정을 위한 도식화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툴킷 1에서 다룬다.[14)]

상자 2 : 행정의무의 잠재적 도식화 수준

행정의무의 도식화 수준이 아래에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준수의무, 준수요구사항, 그리고 준수활동 또는 행동과 같은 실질준수의무를 위해 비슷한 수준의 도식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수준 1 : 정보의무
정보의무는 정보를 획득 또는 준비하고 공공당국에 제공하는 의무를 가리킨다. 감사, 방문 또는 조사를 허락하거나 협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이 정보를 수집 또는 준비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의무일 수도 있다.

수준 2 : 자료요구사항
정보의무는 기업체가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일정 범위의 각기 다른 정보나 자료로 구성된다. 이것을 자료요구사항이라 부른다. 이 정도 수준의 상세한 것은 규제변화측정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

수준 3 : 행정활동
자료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각 활동은 자료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특정 업무나 절차이다. 이 정도 수준의 상세한 것은 필요한 정보가 이 수준에서 수집될 수 있고 이러한 세분화 비용이 과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규제변화측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2.6.2 규제비용의 탁상분석 수행

규제변경의 도식화가 완료되면,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비용을 최하위 단위로 세분화한 뒤, “위로(upward)” 합산한다. 예를 들어, 준수 행동이나 활동이 확인되었다면, 이 활동의 비용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모두 계산되며, 비슷한 활동에 대해서 관련된 ‘의무’ 수준으로까지

14) 툴킷은 www.dtf.vic.gov.au/betterregulation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로 통합된다. 그 다음 모든 규제의무의 합계는 규제변화의 총 비용으로 합산된다.

사용된 비용은 정상적 효율 기업(a normally efficient business)이 체감하는 것을 반영하여야 한다(상자 3 참고). 물론, 이 비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영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호주통계청의 통계집과 같이 주로 이차적 출처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탁상 예측을 추천한다. 관련 부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탁상분석의 일부분이다.

규제변화측정 비용의 계산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P와 Q의 적절한 자료 출처는 툴킷 2에 있다.[15] 일반적으로, 비용 계산은 기본식인 P × Q(가격 × 수량)를 근간으로 한다. 여기서 P와 Q는 다음과 같다.

- P는 특정 사업장이 규제의무를 준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나타낸다.
- Q는 영향을 받은 공공 부문 그리고 거래의 회수나 빈도를 나타낸다.

비용 정보는 적절한 회계정산표에 삽입되어야 한다(툴킷 2에서 예를 제시한다). 규제변화측정 보고서의 독자가 비용 예측에 사용된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정산표를 동반하고 있는 문서에 비용의 가정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자 3 : 정상적 효율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비용은 기업체나 사업장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규제변화측정은 보통기업, 즉 규제업무를 기대치보다 더 잘하지도 더 못하지도 않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경험하는 비용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비용은 그 부문에서 비슷하게 규제를 받는 사업장들의 지출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5) 툴킷은 www.dtf.vic.gov.au/betterregulation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것을 보통기업이 규제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복잡한 신청서를 항상 처음에 완벽하게 작성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다. 규제당국의 피드백이나 충고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재작업이 발생하는지와, 복잡한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드는 평균 오류비율을 알아 낼 수 있다.

필요한 곳에 분할
복잡한 규제 요구사항을 다룰 전문가가 기업내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소기업이 지출하는 규제비용이 대기업에 비해 클 때가 있다. 영향을 받는 분야를 이러한 사례로 분할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영역에 대하여 세 개 이내로 분할하면 된다.

2.6.3 비용과 가정의 입증 (경영자문 포함)

초기(탁상) 산정 이후에, 다음에 설명된 방법을 따라 비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1. 해당부처의 전문가 자문

사용된 자료와 가정 사항, 그리고 예측된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된 규제당국과 해당부처의 전문가에게 필수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영향받는 부문 자문

예측치를 입증하기 위하여 영향받는 부문의 자문을 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하지만, 연관된 비용의 특성과 양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해당부처가 심층인터뷰나 영향받는 부문의 자문을 받기로 결심한다면, 계약 수준은 규제변화의 정도에 맞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초기 예측치나 추후 분석을 통해 규제변경이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또 다른 입증 방식을 통해 비슷한 품질의 예측치를 내지 않는 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경영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2.6.4 표준 양식을 이용한 규제변화측정 초안 준비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초안을 준비할 때, 각 부처들은 상자 4에서 제시된 표준 양식을 따를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이 양식에는 관련된 가정, 계산 및 참고자료를 기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정량적 결과가 상자 4의 표 2에 보인 확인서 양식에 들어가야 한다. 이 확인서를 규제개선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상자 4 :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표준 양식 권고안

요 약

이 안은 규제변화의 간략한 요약과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규제변화측정이 변화의 직접적인 측정치를 도출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1. 규제변화

상세한 규제변화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상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규제나 규제절차의 이름이나 설명(그리고 법안, 규칙, 장관지시 등과 같은 유형)
- 규제의 주요 조항번호 또는 측정되는 관련 절차의 상세 사항
- 규제변화가 발생한 날짜
- 규제기간(기본 기간은 10년임)

2. 규제변화의 도식화

보고서의 이 부분에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의무에 대한 핵심 변경사항을 도식화한다. 다이어그램의 준비가 어렵다면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3. 자료수집 전략 및 자료 출처

다음의 정보가 일부 또는 전부 타당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타당한 참고문헌을 포함, 탁상분석과 자료수집 전략 또는 최소한 핵심 자료출처
- 예측된 비용이 어떻게 보통기업에 적용되는지 평가한 방식
- 정상영업 비용을 결정한 방식
- 영향받는 부문에 대한 적절한 자문, 수행한 인터뷰의 수(인터뷰 수행시), 그리고 자문을 받은 전문가의 범위를 포함하여 자료 입증에 사용한 방식. 인터뷰한 사람들이 자신에 관한 상세한 내용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시업이나 전문가의 신원에 대한 것은 필요하지 않다.

4. 결 과

핵심적인 정량적 결과를 다음에 제시된 표를 이용하여 확인서 형태로 제시한다.

표 2 : 규제변화측정 확인서

부문/비용 범주	기업	비영리	정부서비스	개인의 경제활동	비용범주별 합계
행정비용	±$	±$	±$	±$	±$
실질준수비용	±$	±$	±$	±$	±$
지연비용	±$	±$	±$	±$	±$
부문별 합계	±$	±$	±$	±$	±$C

첨 부

보고서의 첨부에는 예측범위와 같은 주요 기본 표를 포함하여, 회계정산표와 계산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3은 자료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표의 예시이다. 관련된 가정 사항은 첨부에 명확하게 문서로 제시되어야 한다.

표 3 : 데이터 범위를 포함하는 표의 예시

부문/비용 범주	기업			비영리			정부서비스		
	낮음	중간	높음	낮음	중간	높음	낮음	중간	높음
행정비용	±$	±$	±$	±$	±$	±$	±$	±$	±$
실질준수비용	±$	±$	±$	±$	±$	±$	±$	±$	±$
지연비용	±$	±$	±$	±$	±$	±$	±$	±$	±$
부문별 합계	±$	±$	±$	±$	±$	±$	±$	±$	±$

2.7 규제변화측정 보고서의 적절성 검토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초안이 완성되면, 해당부처는 다음 기준에 따라 보고서의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규제변화측정이 본 매뉴얼에서 제시된 방법론(및 가능한 보고서 양식)을 따르는가. 다른 방법론을 사용한 경우에는 규제변화측정이 규제개선과와 합의된 평가 기준을 따르는가(1.2절 참고). 해당부처가 권고된 것 중 (대대적인 측정을 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통한 기업면담과 같은) 특정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적절하게 문서화하여야 한다.
- 규제변경관리 보고서는 평이한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가정 사항은 적합하게 문서화되어야 하고 자료의 출처는 (상자 4에서 기술된 개인정보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인용되어야 한다.
- 계산은 정확해야 한다.
- 예측치는 영향을 받는 공공부문(예 : 기업)에서 규제변화의 실제 비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2.8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평가

규제변화측정 보고서가 관련된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나 규제개선과의 공식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8.1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나 규제개선과에 의한 평가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의 규제변경 예측치에 대해서는,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초안을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에 제출하여 측정된

결과가 2.7절에서 제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받아야 한다.

연간 1천만 달러 미만의 규제변화 측정치에 대해서는 규제변화측정 보고서의 초안을 규제개선과에 제출하여 측정된 결과가 2.7절에서 제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받아야 한다.

사업영향 평가서나 규제영향 보고서를 수행하는 도중에 규제변화측정 보고서가 준비되었다면 해당부처는 관련된 규제변화측정 보고서를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로부터 평가받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2.8.2 최종 보고서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와 규제개선과는 해당부처로부터 규제변화측정 보고서 초안을 받은지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해당부처에서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나 규제개선과와 초기에 접촉하면 평가절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평가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다.

-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는 관련 부처에 평가서를 보낸다. 이 때 빅토리아주의 규제부담 변화와 규제부담경감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본 한 부를 규제개선과에도 보낸다.
- 규제개선과는 규제변화측정 보고서의 적합성에 관하여 해당부처에 이메일 통지문을 보낸다.

3. 참고문헌

본 매뉴얼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참고하였다.

- Bertelsmann Stiftung (London) 2009, International Methods for Measuring Regulatory Costs, Centre for Parliamentary Studies, Version 1.1, June [http://www.regulationforum.org/docs/International%20Methods_

RCM_090626_hr.pdf]

-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Business Cost Calculator -- Online help,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March [http://www.finance.gov.au/obpr/bcc/docs/BCC-Help-Manual.pdf]
- Department of Premier and Cabinet (New South Wales Government) 2008, Measuring the Costs of Regulation, Better Regulation Office, June [http://www.betterregulation.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3/23979/02_Measuring_the_Costs_of_Regulation.pdf]
- Direction générale de la modernisation de d''état (France) 2006, Administrative Burdens Measurement and Reduction -- Cost of Delays for Businesses, Department of Simplification Projects, November [http://www.regplus.eu/delays.doc]
- Government of Victoria, 2007, Victorian Guide to Regulation,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Melbourne, April [http://tinyurl.com/5588at]
- Ministry of Finance (Netherlands) 2008, Quick scan of legislation with high extraneous substantive compliance costs, Regulatory Reform Group, May
- Ministry of Finance (Netherlands) 2008, Standard Cost Model for Substantive Compliance Costs, Regulatory Reform Group, November
- Office of the Economic Development Board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2009, Guidelines for Quantifying Savings from Red Tape Reduction Initiatives, South Australia, April
- The Treasury (NZ) 2005, Cost Benefit Analysis Primer, Version 1.12, Business Analysis Team, December [http://www.treasury.govt.nz/publications/guidance/costbenefitanalysis/primer/cba-primerv12.pdf]

- The Treasury (NZ) 2008, Guidelines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quirements, Regulatory Impact Analysis Team, November [http://www.med.govt.nz/upload/45766/riaguidelines.pdf]
- 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 (Government of Victoria) 2009, A Sustainable Future for Victoria : Getting Environmental Regulation Right, draft report, March [http://tinyurl.com/depylc]

부록 : 일반 정의와 개념

다음의 정의와 개념은 규제비용 분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규제변화측정뿐 아니라 기업영향평가서와 규제영향보고서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규제변화측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에 설명된 정의와 개념 중 관련된 부분만 적용하여야 한다.

A.1 정상영업 비용

규제대상자는 특정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종종 다양한 범위의 비용(행정 및 지연비용 포함)을 지출한다(이것이 규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기준선(baseline case)이다). 이와 같이 규제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다른 규제(예를 들어 연방규제)에 의해 지출하는 비용을 정상영업비용이라 한다.

따라서 규제비용을 규제가 없을 경우 규제대상자(예 : 개인, 기업 또는 정부서비스 기관을 포함한 기관)가 지출하는 비용에 증가 또는 추가되는 비용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규제비용을 확인할 때 정상영업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A.1은 이러한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고 상자 A.1 예를 보여준다.

그림 A.1 : 규제부담(비용)은 정상영업비용을 초과하는 전체 비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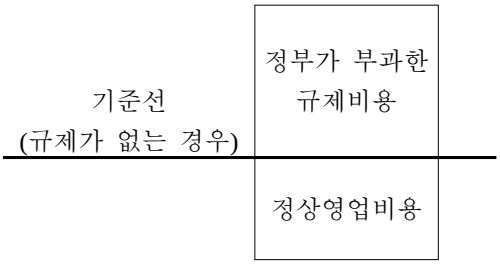

정상영업비용의 확인

정상영업비용에 관련된 가정사항은 비용 예측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변화측정을 하는 동안 적절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정상영업비용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정상영업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은 2.6.1절에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부처 전문가 또는 영향받는 부문의 자문을 받아 경험치를 활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산업계가 '규제가 없는' 환경을 모르고 있을 것이므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공동규제의 경우 정상영업비용의 확인

정부는 산업계가 스스로 작성한 자율 규제에 대해 입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동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산업계가 자율 규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규제는 정상영업비용이 된다. 자율규제 표준을 준수하는 비용이 클 경우에만 공동규제로 인한 증가(또는 규제) 비용이 발생한다.

상자 A.1 : 지급급여세 산정을 위한 총급여 계산

주정부에 지급급여세를 내는 기업은 총급여를 계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외에도 합계를 계산해야 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직원 비용 관리를 위한) 자체목적 - 직접적인 정상영업비용
- 근로연금 보험료의 결정
- 연방 재무보고 의무 충족

특정 규제(이 경우는 지급급여세 규제)가 없는 경우,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또는 빅토리아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다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정상영업비용이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한다.

A.2 비용 범주

규제비용은 근본적으로 재정(financial), 준수(compliance) 또는 기타(others)로 구분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준수 비용을 일정 수준의 통제를 가하는 절차(예 : 서류를 작성하거나, 누군가를 교육시키거나, 또는 무언가를 구매하는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여긴다. 정부의 행정적 승인(예 : 의무계획허가 신청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지연뿐 아니라 규제준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비용이 발생된다. 이와 같이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은 준수비용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지연비용으로 별도로 처리된다. 그림 A.1은 이러한 비용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A.1 : 규제에 의해 부과되는 비용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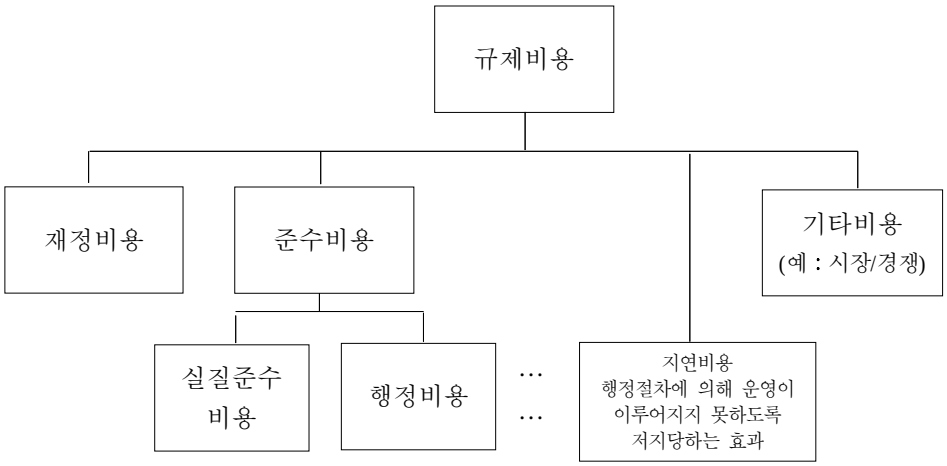

참고 : 빅토리아 경쟁효율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재무재정부에서 제작

본 절에 소개된 정의는 규제영향보고서와 기업영향평가서 절차의 4단계에 소개된 비용의 정의(빅토리아규제지침 5-10페이지 참고)를 상세하게 또는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다.

A.2.1 재정비용

재정비용은 합계 금액을 정부나 관할당국에 납부하는 의무이다.[16]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ⅰ. 행정 부과금
ⅱ. 허가 신청을 위한 수수료
ⅲ. 세금
ⅳ. 의무 보험 보험료
ⅴ. 추가부담금 (levies)

A.2.2 준수비용

준수비용은 규제를 준수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가리킨다. 단, 재정비용과 지연비용은 제외된다. 준수비용은 (ⅰ) 실질적 준수비용과 (ⅱ) 행정비용,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규제변화측정을 위한 준수비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툴킷 2에서 소개한다.

a) 실질준수비용. 규제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비용을 실질준수비용이라 한다. 실질준수비용의 예는 표 A.1에서 보인다.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실질준수비용은 새로운 장비의 구입, 장비의 유지보수, 또는 특정 훈련의 이수와 같은 자본 및 생산비용이다.
   - 규제에서 정보를 만들어 잠재적 고객과 같은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비용은 (행정비용이 아니라) 실질준수비용이 된다.
   - 정부가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보조금(예 : 상환금[17]이나 수당)은

16) 관할당국에는 정부를 대신하여 금액을 받는 민간기업도 포함된다.
17) 이와 같은 상환금, 수당 또는 보조금은 실질준수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관련된 실질준수비용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b) 행정 비용. 주로 관료주의(red tape)로도 불리는 행정비용은 주로 규제대상자가 규제를 준수하거나 정부가 규제를 관리하는 비용이다. 행정비용의 예는 표 A.1에 소개되어 있다.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어떠한 규제에 의거한 신청서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은 많은 전화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신청서의 준비와 처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지연비용이 아니라 행정비용으로 처리된다(A.2.3 참고).

표 A.1 : 행정 및 실질준수비용의 예[18)]

행정비용
기록의 작성, 유지 및 제공 • 훈련 이수 기록 유지 • 기록, 보고서 및 로그의 수집과 저장 • 제품이 라벨부착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는 증거 제공 • 연간 재정보고서 준비
계획 수립 • 위험관리 계획 수립 또는 매뉴얼과 비상계획 업데이트
시 험 • 환경시험 결과의 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날짜와 목적에 관련된 정보를 대조하고 저장 • 환경시험 수행, 시험결과 준비 및 시험결과 저장
신청서 작성 • 면허, 허가 또는 면제를 위하여 문서 준비 및 제출 (예 : 주류판매면허 신청) • 면허 신청 준비에 관한 전문가 조언 청취 • 석면제거자 공인을 위한 신청서 작성

야 한다.

18) 이러한 예는 몇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지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가 작성되어 있는 방식과 같은 어떤 요인은 비용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비용의 구분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규제개선과에 문의하기 바란다.

통 지 • 특정 활동에 대한 정부 통지 (예 : 위험상품 이송 통지)
내부 감사 및 점검 수행 • 내부 조사 수행 (예 : 보건 및 안전상 이유로 기계류와 장비에 대한 내부 조사 수행) • 규제 요구사항 준수여부를 직접 확인시켜주기 위한 외부활동 비용(예 : 감사 비용)
정부 조사에 협조 • 규제 단속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찾은 공식 조사관에게 정보제공 및 지원

실질준수비용
훈 련 • 직원이 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고 지키도록 하거나 규제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훈련 실시 (교육자 또는 기관에 지불한 수수료 포함)
제3자를 위한 정보 • 주류판매 구역에 필요한 표지판과 경고판 유지 • 제3자에게 보고서를 출력해주거나 재정 보고서를 제공 • 신청서의 공시 •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개 보고서, 라벨 및 표지판 준비
계획준수나 시험을 하기 위한 자본투입 • 위험관리계획에 지정된 행동 수행 • 권고사항을 따르고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환경시험에 따른 행동수행 또는 구매자본 투입
공장 및 장비의 구매와 유지보수 • 규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장이나 장비를 구매하고 유지보수 • 공장과 장비의 감가상각 • 건설부지 주변의 안전울타리 또는 적절한 표준에 따른 발판 설치 (이런 경우에 대한 정상영업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운 영 • 인건비 : 직원, 관리, 감독, 통제 비용 및 내부조사 협력비용 • 에너지 비용, 원자재 및 부자재 비용 •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건물 건축 • 청소

A.2.3 지연비용

☞ **팁 :** 규제변화측정이나 다른 측정에서 지연비용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는 규제개선과(재무재정부 내)에 연락하여 비용의 특성과 측정 방식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지연은 통상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규제대상자 또는 새로운 과제에 부과되는 정보 의무와 관련이 있다. 지연비용은 (a) 신청지연 또는 (b) 승인지연으로 인하여 규제대상자가 입는 지출과 수입손실이다.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청지연은 규제대상자가 (면허, 등록, 인증 또는 허가의 신청과 같은) 행정 신청 요건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이로 인해 기업이 의도한 대로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시간을 가리킨다.
- 승인지연은 규제당국이 (고지, 합의 또는 면허와 같은) 행정신청에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으로, 이로 인해 규제대상자가 의도한 대로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시간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규제대상자가 신청서에 관한 재작업을 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지연은 통상 규제대상자의 소비나 자원생산 패턴(예 : 자본, 인적자원)에 변화를 가져오고 사업기회 손실을 일으킨다.

지연비용의 예

a) 토지보유 비용

기업이 강제적으로 필요한 시기보다 토지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같이 보통의 경우보다 먼저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 그 자본의 이용(또는 자본 소비)는 간접적으로 규제 요건에 의해서 영향

을 받는 것이 된다. 토지를 보유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토지 자체가 아니며, 토지는 정상영업비용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높은 토지구매 차입금 이자 비용
- 비효율적 사용에 묶여버린 자본으로 자본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자본이 토지에 묶여있음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손실

b) 자본 대기비용

규제 절차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지연이나 승인지연으로 인하여 공장과 기계류와 같은 물리적 자본이 유휴상태가 되면 규제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겪게 된다.

- 유휴상태의 물리적 자본 구매에 들어간 높은 차입금 이자 비용 또는 높은 임대비용과 지연기간 동안 물리적 자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획득 비용 증가분
- 비효율적 사용에 묶여버린 자본으로, 자본이 이와 같은 자원에 묶여있음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손실

c) 근로 대기비용

규제절차의 일부분인 신청지연이나 승인지연으로 인하여 인적자원이 유휴상태가 되면, 규제대상자는 근로계약이나 자문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인적자원 고용 등으로 인하여 높은 운영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비용에는 추가적인 경상비와 간접비가 포함된다.

d) 사업기회 손실

규제대상자는 지연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기회 손실을 입게 된다.

-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해야 하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계약상 손실. 여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로 인식되

어 발행할 수 있는 미래의 사업 손실과, 경쟁자들이 호주 생산자는 제때에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협상에서의 명성에 손해를 입는 것이 포함된다.

- 시장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축소
- 융자 확보 애로 증가
- 자원 개발의 현재 가치 감소 및 이익 감소

특정 지연비용의 해소

여러 규제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중복된) 승인 절차로 인해 규제대상자가 치러야 하는 관련 지연비용의 영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연비용을 정상영업 지연 즉, 규제대상자 자체에서 걸리는 시간과 면밀히 구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연비용을 중복 계상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상자 A.2에서는 부동산 개발자가 계획을 신청할 때 지연비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규제변화측정을 위한 지연비용에 관한 자세한 지침은 툴킷 2에서 설명한다.

상자 A.2 : 계획 단계에서 부과되는 비용 일부

준수비용이 아닌 토지구매

계획에 관한 규제에서는 신청자(주로 부동산 개발자이지만 가끔은 개발자와 나중에 땅을 사기로 합의한 농부)가 집을 지을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자는 영리활동의 일환으로 어쨌든 땅을 사야하기 때문에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준수 요구사항은 정상영업 비용을 상쇄한다. 따라서 순수 준수비용은 0이다.

지연비용

하지만, 개발자에게는 지연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토지보유 비용

- 토지에 건축을 하기 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 때문에 토지를 오랫동안 (그리고 종종 일정기간동안)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 개발자에게 보유 비용이 발생한다.

개발사업에 묶인 자본 비용

- 게다가, 지연기간동안 자기자본이 개발사업에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자에게는 수입에 손실이 발생한다.

A.2.4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는 규제의 영향이나 규제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준수비용과는 달리, 이러한 비용은 규제의 직접적 효과가 나타나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부정적 외부요소
- 경쟁이나 시장구조에 대한 영향
- 혁신에 대한 영향
- 소비패턴이나 자원 할당에 대한 영향(지연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들)

A.3 도식화

도식화의 기본적인 원칙은 본 매뉴얼의 2.6.1절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림 A.5는 다양한 유형의 의무(와 편익)를 담고 있는 규제문건이 어떻게 도식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는 비용 예측 방식도 요약되어 있다. 규제변화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식화 방법에 관한 상세한 지침은 툴킷 1에 기술되어 있다.

그림 A.5 : 규제부담의 도식화(계산식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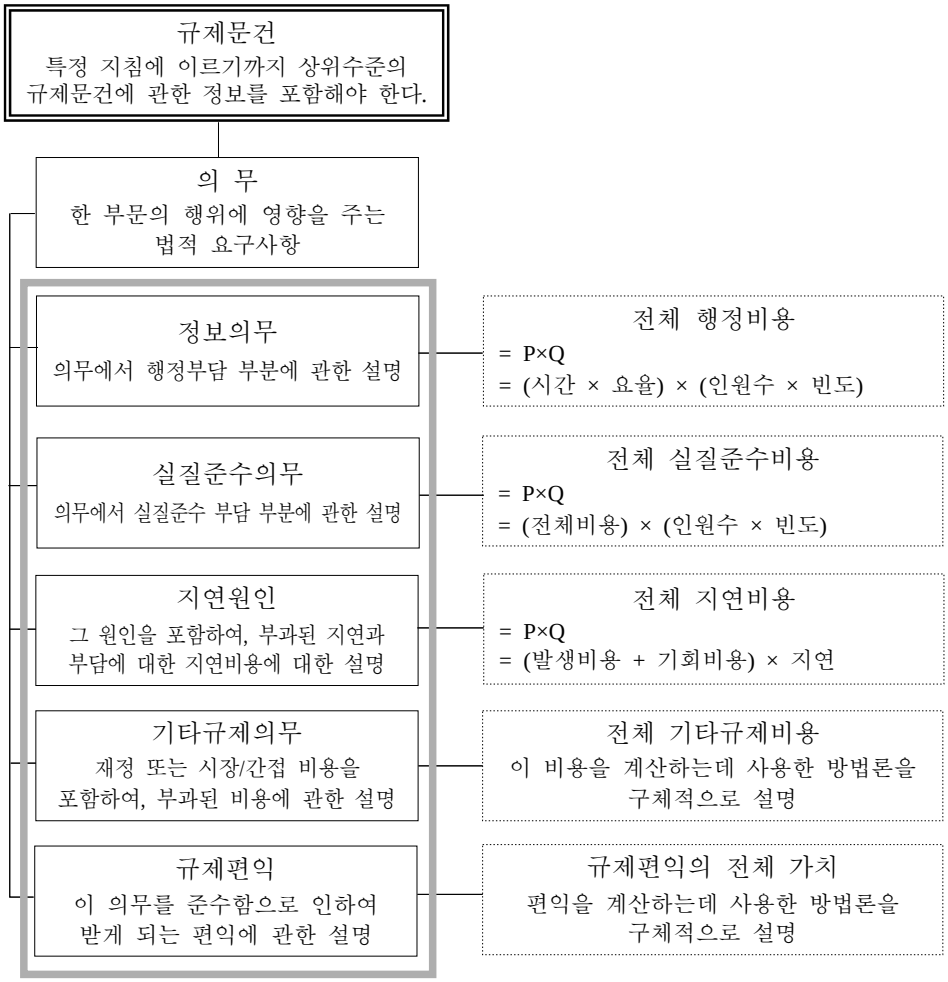

참고 : 위 그림에는 도식화의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규제변화측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비용과 편익이 설명되어 있다.

규제의무를 도식화 한 예는 상자 A.3에 설명되어 있다.

상자 A.3
고위험업무 면허 신청 처리 절차에 대한 변경 도식화

‘고위험업무에 대한 면허소지 요구사항’은 직업상 보건 및 안전 규제에 의거한 의무 중 하나이다. 이 의무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의무를 도식화해 낼 수 있다(그림 A.6 참고).

ⅰ. 정보의무 : 면허 신청서를 준비 및 제출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이다.
ⅱ. 실질준수의무 : 면허 신청의 일부분으로서 수행능력을 확보하는 비용이다.
ⅲ. 지연원인 : 신청자가 면허를 기다리는 동안 가치있는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회비용이다.
ⅳ. 재정의무 : 신청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면허 수수료이다.
ⅴ. 기타비용 : 여러 기타비용 중에서도, 면허는 시장진입의 장벽이 된다.

그림 A.6 : 의무를 다양한 비용범주로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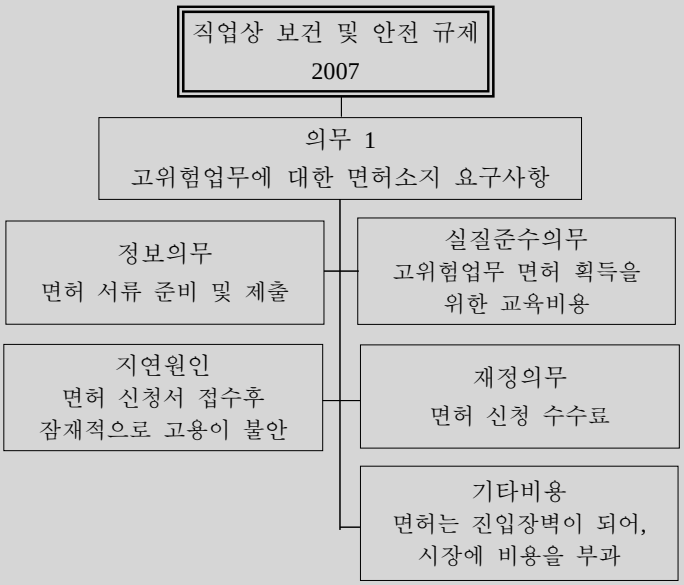

참고 : 도식화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하여 규제변화측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비용과 편익이 설명되어 있다.

A.4 공공부문

빅토리아 규제지침에 따르면 제안된 법규가 공공부문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현저한 부담을 준다면 규제영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다음에 제시된 정의를 이용하여 이러한 부문의 분류에 관련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이들 중 일부만이 규제변화측정과 관련이 있다.

1.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장이다. 기업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국영 기업은 이러한 정의에 맞는 기업이다.
   - 공립학교, 병원과 같이 서비스의 판매보다는 통합세입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조직의 서비스 활동은 기업이 아니다.

참고로, 기업영향평가서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부문을 더 작은 기업분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단, 규제변화측정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2. 비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은 사회 또는 공동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 사업장이다. 비영리 조직은 거래나 기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그 이익이 소유자나 이해당사자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대신 조직의 목적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된다.

참고로, 공공단체는 비영리 부문에서 제외된다. 이 단체는 아래의 정부 부문에서 다룬다.

3. 개인은 조직화된 사업장이 아니라, 경제적/비경제적 측면에서 개인적 능력에 따라 활동을 하는 빅토리아 거주자이다.

   하위부문 : 개인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경제 활동
   고용과 같은 경제적 결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개인의 활동을 개인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경제 활동이라 한다. 규제영향보고서

가 국민 개인에 대한 규제(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포함)의 모든 영향을 분석하는 반면, 규제변화측정은 규제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

4. 정부. 주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 부문은 재산의 소유와 시장의 운영규칙을 결정하기 위한 법체계를 포함하여 공공재의 제공에 상당히 관련이 깊다. 정부의 기능은 재산권의 행사, 권력남용 조사, 그리고 법 수호이다.

   이 부문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원, 경찰, 그리고 교정기관을 망라한다. 정부가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여기거나 사회에 이익을 가져오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능이 있다.

   하위부문 : 정부 서비스
   본 하위부문에는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에 의한 서비스에 비견되는 정부의 직접 서비스가 포함된다. 예로는 공립학교와 공립병원이 있다.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툴킷 1

도식화 소개

2010년 1월 1일 발효

T1.0 개 요

이 툴킷[1]은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의 2.6.1절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2] 도식화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ⅰ. 당사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구속하는 의무 확인
ⅱ. 부과된 규제비용의 유형 확인

따라서, 도식화의 목적은 비용의 구성요소와 발생요인을 보다 잘 이해하여 규제의무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도식화를 잘하게 되면 비용 계산을 위한 자료의 대조와 편성이 쉬워진다.[3]

☞ 도식화를 하면서 **정상영업 활동**을 제외하여야 한다.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A.1절 참고)

T1.0.1 일반 원칙

도식화에 다음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 변경만 도식화 : 규제변화측정을 위해서는 규제나 규제절차의 변경만을 도식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0개의 준수의무 중 2개만 변경되었다면, 규제변화측정에서는 이 두 의무에 대해서만 도식화한다.
- 적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툴킷을 사용 : 본 툴킷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규제의무를 도식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번거롭다면, 논리적으로 답변 가능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관련된 가정사항도 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빅토리아주 재무장관의 권한으로 재정재무부에서 작성하였다.
2) 이 매뉴얼은 재무재정부 웹사이트 <www.dtf.vig.gov/betterregulation>에도 게시되어 있다.
3) 비용계산에 대해서는 툴킷 2를 참고하기 바란다.

☞ 팁
해당부처에서 다른 도식화 방법을 고려하는 경우, 적용방식의 적합성과 이 방식에 의해 평가되는 기준의 적합성에 대하여 재무재정부 산하 규제개선과의 자문을 받고 기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기준에 동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과가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 대부분의 경우 도식화 비용 의무가 적절해야 함 : 2.6.1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도식화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수준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1) 의무 (예 : 정보의무나 준수의무)
  (2) 요구사항 (예 : 자료 요구사항이나 준수 요구사항)
  (3) 행동 (또는 활동) (예 : 행정활동 또는 준수활동)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규제변화측정에는 의무수준(또는 보다 높은 수준)까지의 도식화만으로도 충분하다.

- 필요한 정보가 해당 수준에서만 수집된다.
- 이와 같이 정보를 세분화하는 비용이 과도하지 않다.

- 의무범위 내에서 비용기준을 도식화 : 의무는 (a) 정보의무, (b) 실질준수의무, 그리고 (c) 지연원인의 세 가지 유형의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 중 두 개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의무를 적절한 요소로 도식화하여야 한다(그림 T1.1 참고). 만약 중요하지 않은 의무에 의해 어떠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비용 항목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림 T1.1 : 규제의무를 비용 범주로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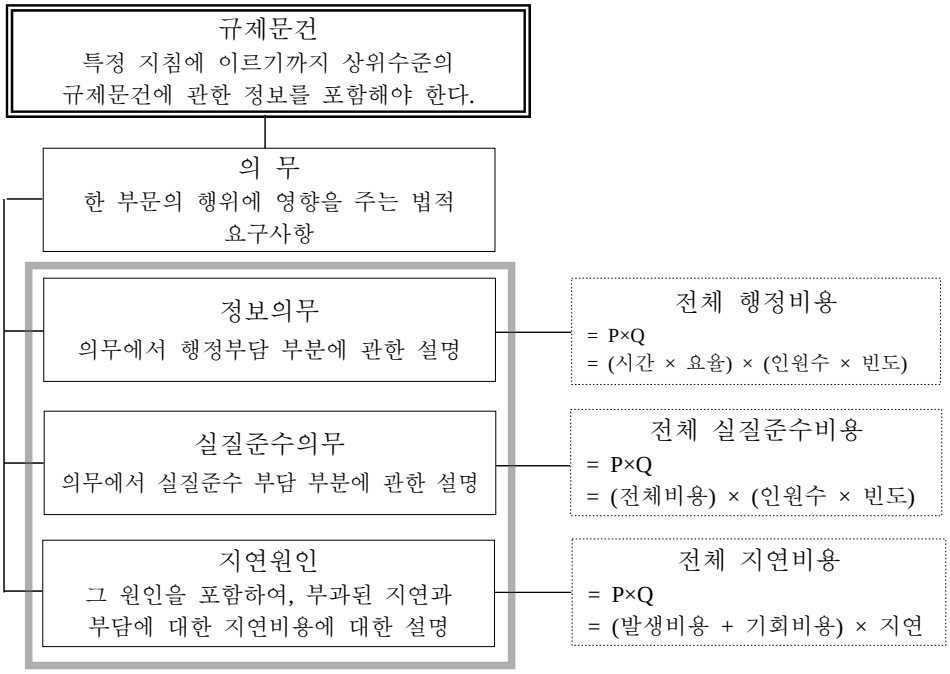

의무를 도식화한 예를 상자 T1.1에 나타내었다.

상자 T1.1 고위험업무 면허 도식화

'고위험업무에 대한 면허소지 요구사항'은 직업상 보건 및 안전 규제에 의거한 의무중 하나이다. 이 의무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무를 도식화해 낼 수 있다(그림 T1.2 참고).

i. 정보의무 : 면허 신청의 일부분으로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관계가 있다.
ii. 실질준수의무 : 면허 신청의 일부분으로 수행능력을 확보하는 비용이다.
iii. 지연원인은 면허를 기다리는 동안 적은 임금을 받는 신청자이다(신청자에게 기회비용이 된다.)

그림 T1.2 의무를 다양한 비용범주로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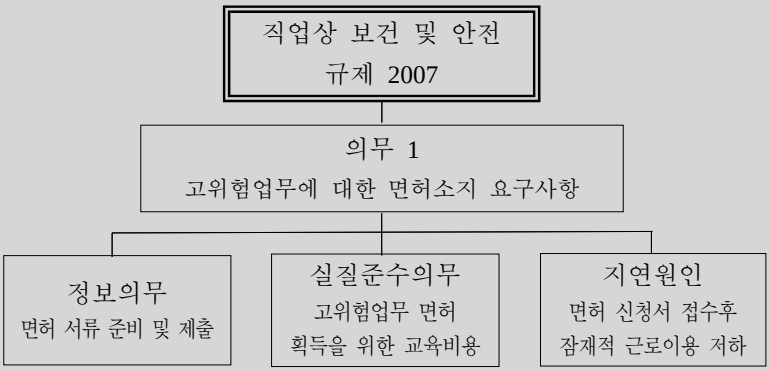

- 도식화를 상세히 문서화 : 도식화를 하는 동안 규제문건의 관련된 장절을 인용하여야 한다. 규제절차가 도식화되어야 한다면 규제절차를 일으키는 관련 규제문건이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작업 서류에) 반드시 도식화할 필요 없이, 의무에 의거하여 비용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활동이나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도식화의 결과 중 하나로 다이어그램이 나올 수도 있다(예 : 그림 T1.2의 다이어그램).

T1.1 준수의무의 도식화와 이해

준수의무는 (i) 정보(관리)의무와 (ii) 실질준수의무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의 그림 2 참고). 준수의무는 각각 행정준수비용과 실질준수비용을 발생시킨다.

T1.1.1 정보(예 : 행정관리)의무

행정비용은 규제대상자가 규제를 준수하거나 정부가 규제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를 정보의무라 한다.

따라서, 정보의무는 정보를 획득 또는 준비하고 공공당국에 제공하는 의무이다. 감사, 방문 또는 조사를 허락하거나 협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이 정보를 수집 또는 준비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의무일 수도 있다. 기업이 공공당국에 반드시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 보건 및 안전 측정과 같이 기업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하는 정보 역시 정보의무이다.

정보의무에 속하는 기본적인 활동

정보의무를 세분화하는 것이 의무적이진 않지만 (또는 권고되지도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T1.0.1절 참고).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활동을 도식화할 수 있다(표 T1.1의 예 참고). 하지만 자료 요구사항을 도식화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1. 요구사항 이해
훈련. 관련된 직원은 수시로 변경되는 정보의무의 최신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함 정보의무에의 적응. 기업이 정보의무에 관련된 규칙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한 자원소비
2. 정보 수집
정보검색.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된 숫자와 정보를 검색 평가. 공공당국이 보고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숫자와 정보가 필요한지 판단
3. 계산 및 준비
계산. 정부나 정부기관이 보고서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계산을 수행 검사. 계산된 숫자를 검산(예 : 다른 자료와의 일치) 수정. 기업의 자체 검사를 통해 찾아낸 오류를 수정 내부회의. 정보의무의 준수에 관련된 다양한 인사들과 내부회의 개최 외부회의. 정보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감사나 변호사 등과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개최
4. 완료 및 전달
작성. 요구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 (예 : 연례보고서) 표현. 계산된 숫자를 표 등으로 표현 정보보고/제출. 정보를 관계 당국에 전달

복사, 배포, 철하기 등. 경우에 따라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복사, 배포 또는 철함. 점검에 관련된 추후 산출물에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의무를 저장할 필요도 있음 양도/지불. 수표 인출을 위한 내부 승인준비 등 세금, 부과금의 납부에 관련된 활동
5. 합의도달
공공당국의 점검 : 조사관들이 기업을 조사할 때 외부 조사관을 지원

T1.1.2 실질준수의무

규제결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비용을 실질준수비용이라 한다. 실질준수비용을 일으키는 의무를 실질준수의무라 한다.

실질준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소음표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정비하는 것과 같은) 기술적 해결책 또는 다른 해결책을 찾거나 재정투자를 준비하면서 운영 절차를 적극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무는 새로운 장비의 구매, 장비의 유지보수, 또는 특정 교육이수와 같은 재정 및 제품 비용을 발생시킨다.

☞ 팁

실질준수의무를 도식화할 때 다음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관련된 요구사항이 기업의 핵심 활동 또는 지원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가
- 기업 운영의 어떠한 측면(예 : 기술, 재정, 또는 관리)이 포함되는가
- 포함된 대상의 유형(예 : 사람, 차량, 건물)

실질준수의무에 속하는 기본적인 활동

특정 실질준수의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준수의무를 여러 개의 활동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좋다(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기본적인 실질준수의무에 속하는 행동 또는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여타 의무 훈련을 제공
- 제조업자와 건설사에게 자문 구하기
- 원재료, 공장, 또는 기계류(예 : 발판, 또는 건축자재나 건설자재 등)의 구매를 요청하고 견적서를 평가
- 외부 자문가 목록작성
- 제3자용 설명서를 출력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예 : 라벨이나 표지판 출력)
- 환경・자원 효율화 계획(Environment and Resource Efficiency)이나 다른 계획에서 요구하는 단계에 착수
- 규제에서 요구하는 공장, 자본재, 장치나 구조물 맞춤장치의 구매 또는 추가적인 원자재, 보조 자재나 새로운 유지보수 요구사항
- 추가 인원 고용
- 에너지 소비 증가에 관한 영향

T1.2 지연 원인의 도식화와 이해

T1.2.1 지연 원인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부록의 A.2.3절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지연비용은 (a) 신청지연 또는 (b) 승인지연으로 인하여 규제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출과 수입손실이다. 따라서 지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도식화될 수 있다.

- 신청절차(예 : 계획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
- 승인절차(예 : 정부의 승인을 기다려야 할 요구사항)

승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화통화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 그리고 신청서를 준비하거나 재작업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행정비용으로 계상된다.

정상영업비용을 명확하게 식별하여야 하며 지연은 실제적으로 지연을 일으키는 절차만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지연은 규제대상 사업장의 핵심적인 활동 경로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제거하면 기업활동이 직접적으로 촉진된다. 그림 T1.3은 두 종류의 지연과 이에 관련된 정상영업비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T1.3 지연의 유형 (RP : 규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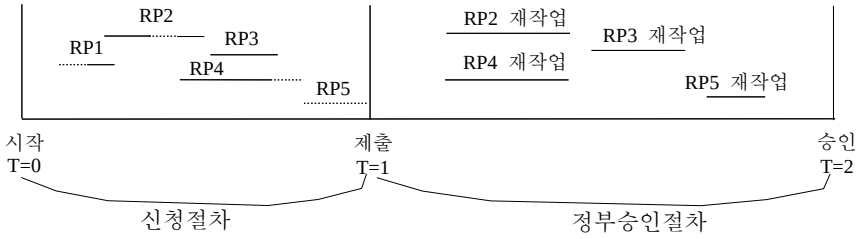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신청지연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이 지연으로 인해 모든 규제대상 사업장이 운영을 시작하지 못한다.
- 지연을 감소시키는 것은 주요 경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프로젝트 관리 서적에서는 주요경로관리라고 알려져 있다[4]). 주요 경로는 그림 T1.3에서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병렬로 처리하면 두 배가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신청서 준비기간 동안 병렬로 처리된 정상영업이 제외되었거나 이 활동에 투입된 시간이 차감된다.

그림 T1.4에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의 시간 T'=1은 이론적으로 기업이 정상 운영되기까지 걸리는 가장 빠른 시간이다(아래 그림). 하지

4) 주요 경로는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가장 짧은 시간을 결정하며 업무 네트워크에서 가장 긴 경로이다. 주요 엽무는 주요 경로상의 업무이다. 주요 업무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과 표준 프로젝트 관리 서적을 통해 접할 수 있다.

만,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은 보다 긴 시간동안 필요한 활동을 멈추게 된다(위 그림).

그림 T1.4 : 지연에 대한 정상영업의 영향 규제환경에서의 기업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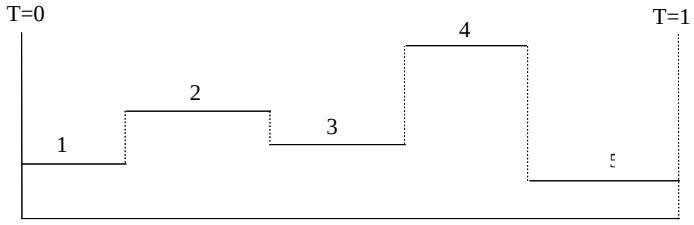

규제가 없는 기업활동(정상영업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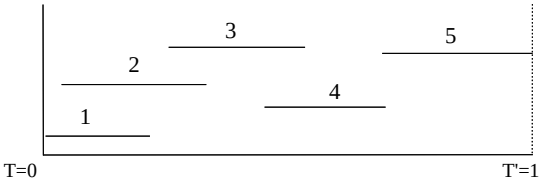

신청지연 비용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 및 규제 활동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도식화하여야 한다(되도록이면 MS Project나 Gantt 차트 이용).

승인지연 계산

전체 진행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하자. 신청서가 규제당국에 제출된 순간부터(그림 T1.3에서 T=1에서부터) 시간이 경과된다. 일반적으로 승인지연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에 제출된 신청서가 규제 요구사항(예 : 관련 증거 문서를 비치)을 따라야 한다. 완벽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 요구사항은 대부분의 전문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 복잡하거나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재작업은 승인지연의 일부분으로 계상되

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기업의 평균 재작업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승인지연으로 계상될 수 있다.

- 지연때문에 규제대상 사업장이 운영을 시작하지 못한다.
-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작업을 병렬로 처리하면 두 배가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 T1.3에서 처리절차 2와 4는 두 배가 걸리지 않는다.)
- 정상영업 절차
- 신청서 승인기간동안 병렬로 처리된 정상영업은 차감된다.

평균승인기간(그림 T1.3에서 T=2와 T=1의 차이)은 보통의 기업과(규제당국에 적용되었을 때 보통의 기업과 유사한 개념) 보통의 규제당국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 **팁**
주요 경로를 도식화하고 논하기 위하여 MS Project를 기반으로 한 Gantt Char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적인 지연원인

기본적인 비용에 관하여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연원인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 지연기간동안의 토지세 납부와 이자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
- 지연기간동안의 건축물(예 : 울타리) 유지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

T1.3 관련 비용의 예측

도식화가 완료되면 각 의무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비용 계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툴킷 2에서 소개한다.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툴킷 2

비용평가 및 계산

2010년 1월 1일 발효

T2.0 개 요

본 툴킷은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의 2.6.2절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1] 본 매뉴얼에서는 규제변경이나 규제절차의 도식화가 완료되어 비용발생요인들이 식별되었다고 가정한다.[2]

T2.0.1 일반 원칙

비용의 평가와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 적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툴킷을 사용 : 본 툴킷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비용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번거롭다면, 논리적으로 답변가능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관련된 가정사항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 팁
해당부처에서 다른 도식화 방법을 고려하는 경우, 적용방식의 적합성과 이 방식에 의해 평가되는 기준의 적합성에 대하여 재무재정부 산하 규제개선과의 자문을 받고 기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기준에 동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과가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 규제변경 기본 기간 : 10년 이내에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변화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나 규제변경 기간은 10년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비용예측을 연간화(annualise) : (당해년도 값이 아니라) 변경의 연단위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1) 이 매뉴얼은 재무재정부 웹사이트 <www.dtf.vig.gov/betterregulation>에도 게시되어 있다.
2) 도식화에 관한 정보는 툴킷 1을 참고하도록 한다.

- 시간이 흘러도 잘 변하지 않는 규제의 변경을 위해서는, 첫해의 변경 영향을 변화의 연단위 측정결과로 한다.
- 시간이 흐르면서 비용이 변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또는 규제절차 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하는 전체 변경을 기간으로 나누어야 한다(T2.5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

T2.0.2 전형적인 비용 변수

비용 계산 기본식은 가격 × 수량(P × Q)이다. 표 T2.1에서는 다른 유형의 규제의무에 대한 대표적인 가격 및 수량 변수를 보이고 있다.[3] 각 변수의 정의는 T2.1 절에서 설명한다.

표 T2.1 : 다른 규제비용 범주에 대한 대표적인 가격 및 수량변수

비용범주	가격(P)		수량(Q)	
행정비용	근로요율 또는 외부요율	시간	개체수 준수율(사용률)	연간빈도
실질준수비용	물리적자산의 일회비용 연간 감가상각	물리적 자산의 수	개체수 준수율(사용률)	연간빈도
지연비용	이자비용	보유기간	수량	

(도식화에 관련된) 툴킷 1에서 이미 다루었지만, 규제변화측정을 위해서는 가격이나 수량의 변경만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시간은 소요된 시간의 변경분만 가리킨다. 예전에는 어떠한 활동에 30분이 걸렸는데, 이제는 10분이 걸린다면, 위에서 계산되는 시간은 20분이 된다. 요율, 개체수, 또는 빈도는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다.

3) 이 표가 전체 목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른 변수는 본 툴킷 후반부에서 다룬다.

T2.0.3 대표적인 자료출처

대표적인 자료 출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비용 예측치를 독립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료출처를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ABS)은 대부분의 경우 좋은 출발점이 된다. 호주통계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실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호주통계청 2004, 직원 소득과 시간(Employee Earnings and Hours), Australia, Cat. No. 6306.0, www.abs.gov.au
  - 호주통계청 2001, 호주 소기업 최신정보(Small Business in Australia Update), 1999-2000, Cat. No. 1321.0.40.001, www.abs.gov.au
  - 호주통계청 2005, 호주통계청 기업등록부, 기업의 수(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Business Register, Counts of Businesses), June 2004, cat. no. 8161.0.55.001, www.abs.gov.au
- 부처 및 기업 전문가 : 주로 다른 관련된 출처를 식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용 예측치 :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예 : 유사한 의무나 활동의 과거 측정 결과 활용

T2.1 대표적인 비용 변수 자료의 정의와 출처

본 절에서는 대표적인 변수의 정의와 본 문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다른 변수의 정의를 설명한다.

T2.1.1 가격 변수

근로요율은 임금률에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에 드는 간접비와 경상비를 더한 것이다. 시간당 임금 기준률과 경상비와 간접비 기준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 시간당 임금 기준률은 직원이 근무 대가로 수령하는 총임금이다. 자원봉사자나 비고용자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도의 숙련도를 가진 직원과 동일한 기준률을 적용한다.
- 경상비와 간접비에는 건물 경비(월세나 빌딩 감가상각), 통화료, 난방비, 전기세, 전산장비 등의 고정 행정비용과 같은 비급여 비용뿐 아니라 퇴직연금보장급여, 지급급여세, 근로연금보험과 부가급세 등과 같은 간접비도 포함된다. 기본 경상비 및 간접비 비율은 임금의 75 퍼센트 수준이다.

자료출처 예 :
임금 기준률은 공개된 기준률(예 : 호주통계청 평균 주급)을 통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준율은 (필요하다면 심층인터뷰를 포함하여) 경영자문을 받는 동안 관련된 정보를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빅토리아규제지침의 부록 C.2.1은 직원의 근무시간 판단에 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경상비와 간접비**에는 시간당 임금 기준률의 75 퍼센트를 기본 비율로 사용하여야 한다(페이지 빅토리아규제지침의 C-4 참고).

외부요율은 규제대상 사업장이 규제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활동에 대하여 지불한 것이다.

자료출처 예 :
규제비용에 사용할 적정 외부요율은 정책·산업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분야에 대하여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문을 받아 결정되어야 한다.

물리적 자산의 일회 가격은 사다리의 시장가와 같은 구매 가격이다.

자료출처 예 :
시장자료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처의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는 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연간 감가상각률은 매년 물리적 자산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비율이다. 이 기준률은 보통 구매가격을 내구연한동안 분산시킨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산의 내구연한이 규제 기간동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규제에서 5년간 내구력이 있는 자산을 구매하도록 한다면 그 자산은 기간이 지난뒤에는 시장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감가상각률을 예측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예 :
감가상각률은 구매가격을 내구연한동안 배분하는 직선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정 공장의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그 가치는 매년 20 퍼센트씩 감가상각된다.

대부분의 자산의 **내구연한**은 호주세무국 웹사이트나 호주세무국에서 발간한 세무규칙(Australian Taxation Office 2005, Taxation Ruling TR 2000/18, Addendum Income Tax : effective life of depreciating assets, 21 December, http://law.ato.gov.au/pdf/tf0018a11.pdf)을 참고하기 바란다. 내구연한에 관한 다른 출처에 관해서는 재무분야 담당자와 상의하기 바란다.

이자는 차입 자본에 대한 이자로 지불된 금액이다.

자료출처 예 :
규제대상 사업장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그 사업장의 위험 범주에 따라 다르다 (예 : 규모가 큰 튼튼한 기업은 작은 기업에 비해 보통 적은 이자비용을 낸다).

기업이나 규제대상 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이자비용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 대리인이 필요하다.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안전한 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곳에는, 주 예산절차[4]의 일부분으로 재무장관이 설정한 연이율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은 기업이 규제행위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내부시간(분 또는 시간)을 가리킨다.

4) 이 기준률은 재무재정부의 웹사이트 www.dtf.vic.gov.au에서 찾을 수 있다.

자료출처 예 :
규제 행위를 완료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정책·산업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분야에 대하여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문을 받아 결정될 수 있다.

T2.1.2 수량 변수

개체수는 특정 규제의무의 영향을 받는 규제대상 사업장(예 : 기업 또는 비영리 조직)의 수를 가리킨다. 개체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할할 필요가 있다.

- 분할 : 영향을 받는 개체가 다양하다면, 개체(영역) 마다 가격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작은 기업에 비해 특정 규제업무를 완료하는데 시간이 덜 들 수 있다.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 영향을 받는 부문은 여러(보통 3개 미만) 그룹으로(예 :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5]) 분할될 수 있다.

자료출처 예 :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의 수(예 : 개체수)에 관한 자료는 통계자료(호주통계청)나 기업등록부에서 입수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처에서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기도 한다.

연간빈도는 영향받는 기업이나 다른 사업장이 규제의무를 매년 지키거나 준수하는 횟수이다. 따라서, 격년으로 의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빈도가 0.5가 된다.

자료출처 예 :
의무의 **연간빈도**는 규제로부터 직접 도출되어야 한다. 점검이나 감사의 횟수와 같이 부처나 기관의 정보가 유용한 경우도 있다.

5) 호주통계청에 따르면, 소기업은 종업원의 수가 20명 이내이며, 중기업은 20명에서 200명 사이이고, 대기업은 200명 이상이다.

준수율 : 일반적으로, 기본 준수율은 100퍼센트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식의 부족, 단속의 부족 또는 기술적 변화가 규제 요구사항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영향받는 부문이 규제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 요구사항을 적게(예 : 100 퍼센트 미만) 준수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실질 규제부담이 과장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 준수율이 사용되어야 한다.

자료출처 예 :
실제 준수율에 관한 자료는 부처 전문가와 조사관들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실제 준수율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면 준수율을 100 퍼센트로 가정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향후 규제변경이 예상된다면(예 : 정보기술 제품의 경우) 적절한 사용률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예 :
규제절차의 사용률에 관한 자료는 해당부처나 산업계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필요하다면 심층인터뷰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T2.2 준수비용 계산

본 절에서는 준수비용을 계산하는 공식을 설명한다.

T2.2.1 행정비용

행정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행정비용 = 가격 × 수량
= (요율×시간) × (개체수×연간빈도) 또는
= {내부가격 (즉, 요율×시간) + 외부요율 + 기타 주요비용} × (개체수×연간빈도)

가 격

행정의무 가격은 (a) 내부 임금률(행정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의 비용), (b) 외부요율(행정활동을 외부에 위탁하는 비용), 그리고 (c) 행정

활동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기타 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식은 다음과 같다.

가 격
= 내부가격(요율×시간) + 외부요율 + 기타 주요비용

여기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요율은 근로요율이다 (T2.1.1절 참고)

시간은 보통 기업이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내부시간(분 또는 시간)을 가리킨다.

외부요율은 규제대상 사업장이 정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한 행정활동에 대하여 지불한 것이다. 외부요율은 회계사, 법조인 등에게 지불한 비용으로 구성되며 총비용으로 표시된다.

기타 주요비용에는 특정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발생시킨 자본비용이 포함된다. 인터넷 연결과 같은 일부 비용은 경상비로 잡힌다. 정보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재정투자가 일어났다면(예 : 미터기의 구매) 수년간 내구연한을 갖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비용을 예상 내구연한으로 나눈 고정 연간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6)]

자료출처 예 :
기타 주요비용은 정책·산업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분야에 대하여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문을 받아 결정되어야 한다.

수 량

행정비용 계산을 위한 수량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수 량
= 개체수 × 준수율 × 연간빈도

6) 직선 감가상각법과 유사하다.

여기서 변수는 다음과 같다.

개체수 즉 *정보의무*가 영향을 주는 규제대상 사업장의 수는 T2.1.2에 정의되어 있다.

준수율은 T2.1.2절에 정의되어 있다. *정보의무*의 준수율이 전체 규제의 준수율과 항상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정보의무의 연간빈도는 T2.1.2절에 정의되어 있다.

T2.2.2 실질준수비용

실질준수비용의 경우, 다음에 기술된 것과 같이 전이비용과 구조비용으로 구분하면 유용하다.

- 이전비용은 새로운 규제 체계나 절차로 이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회성 조정비용 또는 투자이다. 비용 계산에 있어서, 이러한 비용은 규제 기간에 걸쳐 분배된다.
- 구조비용은 매년 재발하는 지속적 비용이며, 따라서 매년 측정된다.

실질준수비용을 계산하는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실질준수비용
= 가격 × 수량
= (요율 × 시간) × (개체수 × 연간빈도) 또는
= (물리적 자산의 일회성 가격 × 자산의 수) × (개체수 × 연간빈도) 또는
= (연간 감가상각 × 자산의 수) × (개체수 × 연간빈도)

가 격

실질준수비용에는 근로비용이나 자본비용 또는 이 두 비용의 조합이 포함된다.

- 근로비용은 행정비용 부분(T2.2.1)에 계산식이 설명되어 있으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자본비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a) 구매비용으로, 물리적 자산의 일회성 구매비용이다.
  b) 투자비용으로, 지속적 비용(예 : 관련 자산의 연간 감가상각)이다.

수 량

수량의 계산식은 행정비용 계산에 사용된 것과 같다.

수량
= 개체수 × 준수율 × 연간빈도

T2.3 지연비용 계산

지연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미래 비용과 수익의 종합적 시간가치
- 관련 변수에 대한 획득하기 어려운 자료

지연비용 계산에 있어서 고유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할 때, 타당한 곳에는 단순가정이 사용되어야 한다.

☞ 팁
규제변화측정에서 지연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해당부처는 규제개선과에 연락하여 비용의 정확한 성격과 비용 측정을 위한 적합한 방식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지연은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을 모두 발생시킨다.[7] 지연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7) 기회비용은 지연기간동안 사라져 버린 기회를 통해 발생된 비용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선택한 비용 (즉, 교육비, 교재비, 등)은 직접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 (예 : 수입손실)이다. 따라서, 발생된 총 비용은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의 합 즉 교육비 더하기 급여손실이 된다.

지연비용 = 가격 × 수량
= (요율 × 시간) × (개체수) 또는
= {(발생비용 + 기회비용) × 지연기간} × (영향받은 단위)

기업은 가끔씩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 예를 들어, 신청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자산을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행동을 통해 얻은 수입은 반드시 계산되어야 하며 규제지연에 의해 발생된 비용을 상쇄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소 행동이 고려된 지연비용 계산의 예가 상자 T2.1에 설명되어 있다.

상자 T2.1 지연비용 계산 예

계획 신청 절차

시나리오

상자 A.2(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A.2.3절)에서 계획 승인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지연비용(승인지연)의 예를 설명하였다. 이 상자에서는 승인시간이 단축된 경우 개발자에게 돌아가게 될 절약분을 계산하고 있다. 신속히 승인이 나면 부동산 개발자는 time = t만큼 시간을 절약하게 된다. 이렇게 절약된 시간은 여러 정상영업 절차에 덧붙여진다. (이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툴킷 1의 T1.2.1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가정사항

- 일부 부동산 개발자는 승인기간동안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본의 유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개발자가 자본을 가장 잘 사용하기 위한 대안은 다른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대안을 사용함으로 인한 연간 가치는 전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기간동안에 걸친 수입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계 산

승인시간을 t까지로 줄임으로써 다음 두 가지 형태의 절약이 발생한다.

- t 기간동안의 직접 절약(토지의 소유비용 감소)
- t 기간동안 (자본이 비생산적 사용에 묶여있음으로 인한) 기회비용 절약

토지의 소유비용 감소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발생한보유비용} = \frac{\{C\times(i+\tau+\gamma)\}-(\theta\times R)}{12}$$

여기서 변수는 다음과 같다.

C = 전체 토지 비용 (헥타르당)
i = 이자율 (연 퍼센트로 표기되며 임대인이 부과)
τ = 토지세 (헥타르당 연 퍼센트로 표기)
ϒ =지자체 부담금 (헥타르당 연 퍼센트로 표기)
θ = 신청 절차동인 임대한 부문의 비율 (연간)
R = 임대수익 (헥타르당 달러로 표기, 연 수익)

감소된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text{기회비용} = \frac{\frac{TC-IT}{D}\times ROI}{12}$$

여기서 변수는 다음과 같다.

TC = 헥타르당 총 투자 비용으로, 토지, 원자재, 임금 등이 포함됨
IT = 투자 프로젝트 기간동안 헥타르당 지불하는 총 이자 및 세금 (별도로 계산되는 토지에 대한 이자지불은 제외)
D = 당초 계획되었던 프로젝트 기간 (연 단위)
ROI =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수익 (연 퍼센트)

위 두 사항을 결합한 뒤, 효과적인 승인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체 토지(헥타르 단위)를 곱하면 지연비용 감소분을 예측할 수 있다.

$$\text{감소된지연비용} = \frac{[\{C\times(i+\tau+\gamma)\}-(\theta\times R)]+[\frac{TC-IT}{D}\times ROI]}{12}\times t\times L$$

여기서 변수는 다음과 같다.

t = 승인절차가 줄어든 시간 (개월, 자산 획득에 소요되는 정상영업시간이 덧붙여짐)
L = 영향받는 총 토지 (헥타르당)

자료출처
지연의 경우 항상 많은 산업계 전문가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심층 인터뷰를 하고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 단순가정과 경험치가 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다.

T2.4 기본적인 스프레드시트, 적합한 계산 및 가정사항

각 비용의무(가능하다면 '행동'이나 '활동' 수준에서)에 대한 가격과 수량의 자세한 계산결과를 보여주는 스프레드시트가 준비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시트를 출력해서 규제변화측정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적절한 계산 및 가정사항을 서술식으로 자세히 작성하여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트의 예가 표 T2.2에 있다. 이 정산표는 보다 많은 부문과 다른 규제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확장될 수 있다.

표 T2.2 : 비용 계산을 위한 스프레드시트 예시

변경된 의무	상세사항	가격	수량	연간변경	가정 및 자료출처
정보의무 1 : 면허신청서 제출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50	1,000	-$50,000	요율(임금수준=시간당 $100), 감소시간=0.5시간, 매년 1,000개의 새로운 기업 대상
준수의무 1 : 사업장의 전직원 참석	새로운 요구사항 발생 (하단의 요구사항을 여기에 요약)			+$800,000	
활동 1 :	규제변경시 현직원 일회 참석	+$200	20,000	+$400,000	위와 동일 요율, 증가시간=2시간. 전체 2만명 직원이 첫해에 참석(일회비용, 10년간 분할계상)
활동 2 :	신입직원은 참석시간 증가	+$200	2,000	+$400,000	10퍼센트의 이직 가정
계				+$850,000	

T2.5 불균등한 규제변경에 대한 수치 연간화

T2.0.1절에서 (감소된 현재가치가 아니라) 변경의 연간화된 값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시간이 지나도 변경되지 않는 규제의 변경에 대해서는 첫해의 변경이 연간화된 값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시키는 비용이 변하는 규제(불균등한 규제변경)에 대해서는, 규제기간 또는 규제변경 기간동안의 전체 변경을 기간으로 나누어야 한다. 아래에서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T2.5.1 10년간 불균등하게 분포된 변경

규제부담의 변화가 10년간 불균등하게 분포되는 경우, 10년간 변경의 평균은 규제변화측정에서 사용하는 연간화된 값이 된다. 예를 들어, 그림 T2.1에서 규제변화측정 보고서에서 보고된 부담의 연간 변경은 4백만 달러가 된다.

그림 T2.1 : 10년간 불균등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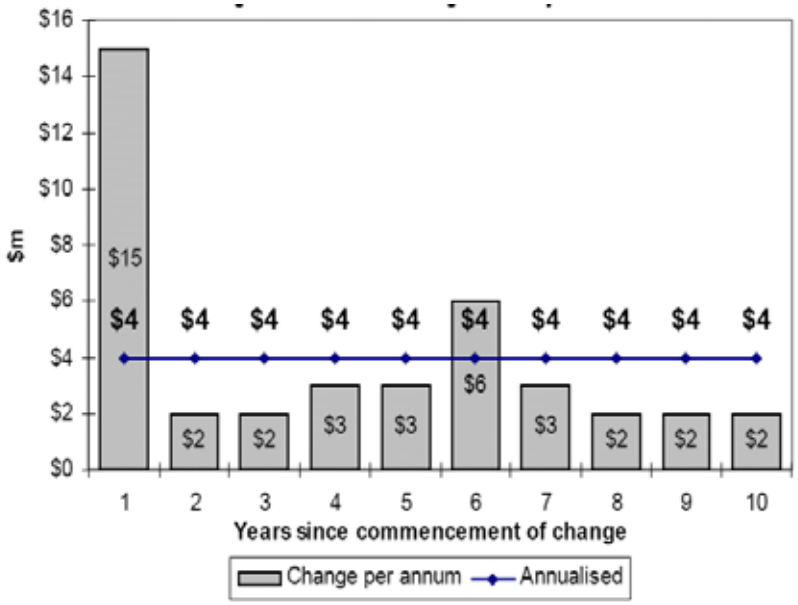

T2.5.2 10년 미만동안 불균등하게 분포된 변경

규제부담이 10년미만의 기간동안 불균등하게 분포된다면, 관련된 기간동안 변경된 평균 수치를 규제변화측정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림 T2.2에서는 규제변화측정 보고서에 보고되는 부담의 변화가 4백만 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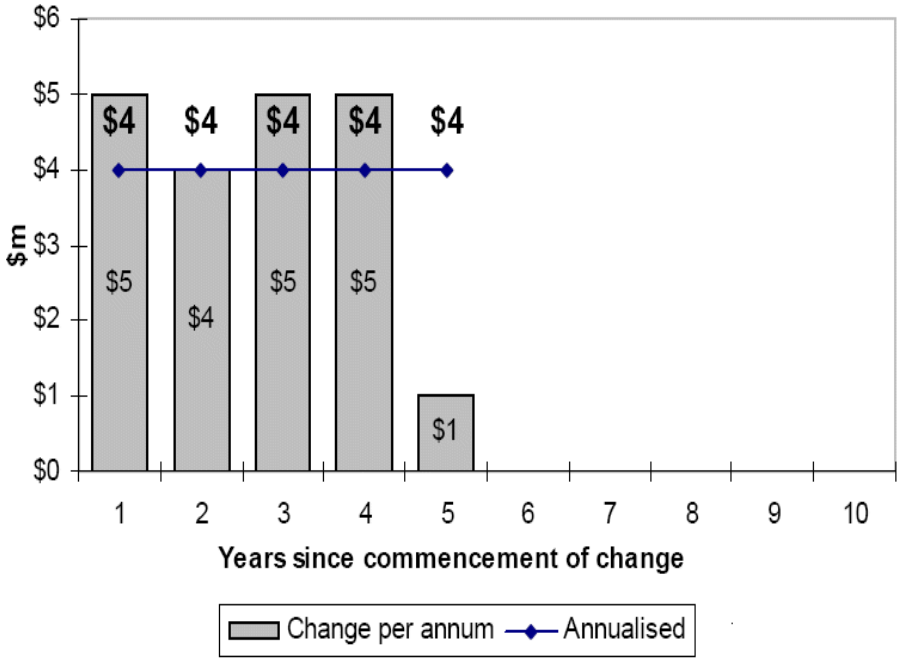
그림 T2.2 : 10년 미만동안 불균등한 변경